

연구총서 14-AA-07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A Stud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Possibility of  
Informal Criminal Agreement in Criminal Justice

안성훈 | 윤현석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발 간 사

현재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비교적 많고,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裁定申請)이 확대됨에 따라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사법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소외되어 왔다는 점 등이 당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또한 소송의 폭증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속, 저렴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며 경미하거나 특수한 분쟁의 효과적인 처리절차로서 화해조정이나 중재 등 형사사건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의 흐름 속에서 최근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 실제 형사조정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속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사조정제도와 유사한 당사자간의 형사합의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형사합의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화해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법관의 양형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실무상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제도는 실제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상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공식적인 제도이고, 검사 또는 판사는 형사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는 없지만 관행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형사합의제도는 법률의 규율영역 밖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뒷받침해 줄 형사정책적 요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합의의 여부 및 그 내용이 순수하게 당사자 간의 자율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적인 분쟁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회유와 협박 또는 다른 형태의 기망 등에 의해 형사합의제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법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넘어서서 현재에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회복적 사법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형사사법과정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형사합의는 이러한 형사법의 최근 발전방향과 형식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논한바와 같이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형사합의는 이처럼 더 높아진 형사법의 지향과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형사법의 지향을 사회일반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것은 이루어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되어온 비공식적 형사합의제도를 형사법 규범의 틀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공식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러한 제도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들은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내실 있는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이 연구가 국내의 여러 회복적 사법을 비롯한 형사사건에서의 대체분쟁해결방안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원광대학교 윤현석 박사님과 설문조사를 담당해 주신 코리아리서치 박지빈 부장님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연구책임자로서 이 모든 연구를 도맡아 수행한 안성훈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목 차

국문요약 .....	13
<b>제1장 서 론(안성훈) .....</b>	<b>27</b>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8
1. 연구내용 .....	28
2. 연구방법 .....	31
<b>제2장 이론적 배경(안성훈) .....</b>	<b>35</b>
제1절 형사합의의 의의 .....	35
1. 형사합의의 개념 .....	35
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36
나. 형사합의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 .....	36
1) 기소 전 화해(형사조정) .....	37
2) 형사재판상 화해 .....	38
2. 형사합의의 연혁 .....	39
3.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 .....	41
가. 형사합의의 법적 근거 .....	41
나.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 .....	41
4. 형사합의의 효과 .....	43
5. 실무에서의 형사절차단계별 형사합의 과정 .....	45
가. 수사단계에서의 형사합의 과정 .....	45
나. 재판단계에서의 형사합의 과정 .....	46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	48
1. 개념 .....	48
2. 발전배경 .....	51
가.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의 한계 .....	51
나. 회복적 사법이론의 발전 .....	51

---

3. 유형	54
가. 문제해결형 모델	54
나. 화해형 모형	55
4.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56
가. 도입경위	56
나. 운용	57
1) 개요	57
2)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및 형사조정 대상사건	58
3)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무	59
4)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61
다. 운영 현황과 전망	65
제3절 외국의 형사조정제도 입법례	66
1. 미국	66
가. 시행배경	66
나. 근거법률	67
다. 운영기관 및 방식	69
라. 대상범죄	70
마. 형사조정의 효과	71
2. 독일	72
가. 시행배경	72
나. 근거법률	72
다. 운영기관 및 방식	75
라. 대상범죄	77
마. 형사조정 효과	77
3. 프랑스	78
가. 시행 배경	78
나. 근거 법률	78
다. 운영기관 및 방식	83
라. 대상범죄	84
마. 형사조정 효과	85
4. 소결	86

---

---

### 제3장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안성훈·윤현석)

.....	91
제1절 설문조사 결과 .....	91
1. 조사방법 .....	91
2. 형사합의의 실태 .....	93
3.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	104
4.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	120
5.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	124
제2절 심층면접 결과 .....	131
1. 조사방법 .....	131
2.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 실태 .....	133
가. 형사합의의 권유 .....	133
1)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권유 .....	135
2)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권유 .....	136
나.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범죄 .....	137
다. 범죄유형별 형사합의 성립정도 .....	138
3.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	140
가. 형사합의 성립 조건 .....	140
나. 형사합의를 통한 도움정도 .....	141
1) 피해자에 대한 도움정도 .....	141
2) 가해자에 대한 도움정도 .....	142
다. 성공적인 형사합의를 위한 요소 .....	143
라. 형사합의에 대한 만족수준 .....	144
마. 형사합의사항 이행정도 .....	145
4.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	146
가. 형사합의의 효과 .....	146
나. 형사합의 과정상 문제점 .....	148
5.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	150
가. 형사합의의 제도화 .....	150
나.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확대 .....	151
다.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의 실시방안 .....	152
라.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대상범죄 .....	153

---

---

마. 제도화된 형사합의의 운용 .....	154
1) 형사합의 관할기관 .....	154
2)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한 제도 도입시 법적 개선 및 변경 사항 .....	156
바. 형사합의 제도화시 지향해야 할 사항 .....	157

#### **제4장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윤현석) .....**

제1절 조사방법 .....	161
제2절 형사합의의 실태 .....	161
제3절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	163
제4절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	165
제5절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	166

#### **제5장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안성훈) .....**

제1절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	172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활용 .....	174
1.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	175
2. 기소 후 판결 선고 이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	179
3. 형선고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	181
4. 형사조정전치주의의 도입 및 조정적격성의 판단 기준의 마련 .....	183
5. 형사사법기관 실무가 교육의 강화 .....	185
제3절 기존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 .....	186
제4절 형사조정센터 설립 .....	188
제5절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 .....	191
1. 조정절차의 개시 .....	191
2. 조정기관 .....	192
3.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	192
가. 형사조정 의뢰 .....	192
나. 실질적 형사화해 절차 진행 .....	193
다. 형사조정절차의 종결 .....	193

---

---

참고문헌 .....	195
Abstract .....	207
부 록 .....	209

---

---

## 표 차례

〈표 2-1〉 문제해결형 모형과 화해형 모형 비교 .....	56
〈표 2-2〉 최근 5년간 형사조정 운용 실적 .....	66
〈표 2-3〉 형사조정 및 화해제도 비교 .....	82
〈표 2-4〉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조정 .....	85
〈표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	93
〈표 3-2〉 형사합의 권유 경험 .....	94
〈표 3-3〉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	95
〈표 3-4〉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 직업·연령별 비교 .....	96
〈표 3-5〉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	97
〈표 3-6〉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 직업·연령별 비교 .....	98
〈표 3-7〉 형사합의 권유 빈도 .....	100
〈표 3-8〉 형사합의 성사 빈도 .....	102
〈표 3-9〉 형사합의 성사시 합의 조건 .....	103
〈표 3-10〉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	104
〈표 3-11〉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 직업·연령·권유 경험별 비교 .....	106
〈표 3-12〉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	107
〈표 3-13〉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 직업·연령·권유경험별 비교 .....	108
〈표 3-14〉 형사합의 성공 요인의 중요도 .....	109
〈표 3-15〉 형사합의 성공 요인의 중요도 : 직업·연령·권유경험별 비교 .....	110
〈표 3-16〉 형사합의 성공요소 : 1순위 및 1순위+2순위 기준 .....	111
〈표 3-17〉 형사합의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족수준 비교 .....	113
〈표 3-18〉 형사합의 후 합의사항 이행 정도 .....	115
〈표 3-19〉 형사합의를 통한 사건해결의 적절성 .....	117
〈표 3-20〉 형사합의를 통한 사건해결의 적절성 : 직업·연령·권유경험별 비교 .....	119
〈표 3-21〉 형사합의의 효과 .....	120
〈표 3-22〉 형사합의의 효과 : 직업·연령·권유경험별 비교 .....	121
〈표 3-23〉 형사합의의 문제점 .....	122
〈표 3-24〉 형사합의의 문제점 : 직업·연령·권유경험별 비교 .....	123
〈표 3-25〉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한 의견 .....	124

---

---

<표 3-26>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한 의견 : 직업·연령·권유경험별 비교 ..	125
<표 3-27>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시행시 관할 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 .....	126
<표 3-28>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시행시 민간기구 관할에 대한 의견 .....	128
<표 3-29> 형사합의 제도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 .....	129
<표 3-30> 형사합의 제도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 : 직업·연령·권유경험별 비교 .....	130
<표 3-31>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	132

---



# 국문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최근 범죄피해자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형사합의가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사조정제도와 유사한 형사합의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형사합의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화해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법관의 양형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실무상 인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제도는 실체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상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공식적인 제도이고, 검사 또는 판사는 형사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는 없지만 관행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형사합의제도는 법률의 규율영역 밖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뒷받침해 줄 형사정책적 요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합의의 여부 및 그 내용이 순수하게 당사자 간의 자율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적인 분쟁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도 있고,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회유와 협박 또는 다른 형태의 기망 등에 의한 위협성에 의해 형사합의제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법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넘어서서 현재에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회복적 사법이다.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형사사법과정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형사합의는 이러한 형사법의 최근 발전방향과 형식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논한바와 같이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갖는 형사합의는 이처럼 더 높아진 형사법의 지향과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법의 지향을 사회일반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제도

## 14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것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따라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되어온 비공식적 형사합의제도를 형사법 규범의 틀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러한 제도화를 제언하는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형사합의를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수단 내지 형사절차 내의 화해·조정제도의 마련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비제도화된 범실무 관행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형사합의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기존의 형사합의 관행을 제도화하는 데에 있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 2.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

본연구에서는 형사사법기관 실무 전무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행 형사사법절차 단계별(경찰, 검찰, 법원)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와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합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첫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의 실태, 둘째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셋째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넷째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 조사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금전적 피해배상’과 ‘신속한 피해회복’ 및 ‘신속한 사건해결’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형사합의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회복이나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받는 데에는 상대적으

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이 형사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에 대한 견해도 있었지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금전적 배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었다.

셋째, 형사합의 적용대상 사건으로는 18개 사건 유형 중 살인, 강도, 약취·유인, 강간·강제추행, 체포·감금 이외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높았다.

넷째, 형사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문항에 따라서 응답자의 약 40% 정도가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특히 형사합의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강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확대 방안과 형사조정제도를 경찰수사 단계나 법원재판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 또한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약 65% 이상이 찬성하였다.

여섯째, 확대된 형사조정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마다 해당기관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검찰에 설치’, ‘법원에 설치’,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17.8%) 등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형사합의를 제도화할 경우에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는 ‘금전배상’, ‘관계 회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등 네 개 항목 모두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해 보았다.

### 3. 형사합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가.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형사합의의 결과는 형사절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범죄피해자의 보호

## 16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의한 형사조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전까지, 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규정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형사합의는 사인인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합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①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이 개입되는 등의 사인 간 권력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형사합의가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범죄의 해결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법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의 방식과 내용은 사건당사자들의 완전한 자유로운 의지에만 맡겨두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형사합의를 법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서 제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나. 형사조정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활용 및 교육의 강화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등, 수사기관 내지 형사사법기관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이버전(Diversion)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의 중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어도 법원의 양형결정시 중요한 참작사유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수사단계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의하에 실시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에서 시행중인 형사조정제도는 도입 초기에 UN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세계적 사법체계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의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분쟁해결과 피해자보호의 새로운 틀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중심적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수사기관의 고소사건 해결책을 위한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형사조정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균형사법을 추구하면서 갈등의 뿌리를 의사소통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지향하는 회복적 사법의 철학이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 들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과 특성 및 당사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조정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제도가 조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들을 다중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다면 이 제도가 운영상 수사기관의 고소사건 해결책을 위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정제도가 형사사법의 주변부에 붙어 있는 장식물로 전락하게 될 우려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형사합의를 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추구될 수 있는 목표는 비형벌화, 다이버전, 형벌대체, 피해자의 원상회복, 범죄자의 재사회화, 비공식적 절차의 활용 등 매우 다양할 것인데, 이와 같은 다양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기소 전 단계, ② 기소 후 판결선고 이전 단계, ③ 형선고 단계 등과 같이 각 형사절차의 단계에서 다양한 조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모든 형사절차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제도가 모든 형사절차단계에서 적용된다면 각 형사절차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는 제도 속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기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조정이 성립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여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무에 있어서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은 경찰단계와 검찰단계

## 18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에서의 형사조정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은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기소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찰단계는 형사실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제로 가장 빈번히 충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은 형사절차의 초기단계일수록 목표달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일정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절차를 거쳐 화해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소 전 단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예컨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또는 조정적격성이 인정된 일정한 경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에 이르러 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의 처리 및 조정결과를 검찰에게 보고하고, 이로써 수사는 종결되며 검찰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그러나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사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절차는 통상의 형사절차를 밟는 등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 2) 기소 후 판결 선고 이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이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을 거부하여 기소가 된 경우라도 법원단계에서 다시 형사조정을 실시하여 가해자의 조정 노력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조정이 형사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가능하고 공판절차의 중간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양형단계 이전에서도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는 방안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검찰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고려한 공소취소를, 법원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고려한 공소기각을 하는 등의 법적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3) 형선고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상 재판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를 양형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손해배상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형법 제51조 제4호(범행후의 정황)와 형법 제53조(정상참작에 따른 작량 감경)에 의해 형벌감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감경되는 범위는 법정형의 1/2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사항인 작량감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형사조정제도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로서 법률상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4) 형사조정전치주의의 도입 및 조정적격성의 판단 기준의 마련

이상과 같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일정한 조정목표를 가진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조정단계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형사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 형사조정 실행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모든 형사소송절차 진행 중에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피해자 간의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적합할 경우 검찰과 법원은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명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절차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형사소송법 제155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은 형사조정이 명백하게 적합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 선고 전 단계에서 유죄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조정절차 참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5) 형사사법기관 실무가 교육의 강화

지금까지의 비공식적 형사합의는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실무가의 직간접적인 관여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추후 비공식적 형사합의가 형사조정제도에 편입되어 모든 형사절차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형사조정 의뢰사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곧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실무가들이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형사조정제도의 활용에 소극적이게 된다면 이는 곧 형사조정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각 형사사법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조정제도 관련한 전문 교육과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형사합의의 성격을 그대로 고착시킨 상태에서 안정화시키는 제도화는 단순히 형사사건의 민사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기본 이념은 당사자 간의 합의·조정이 단지 금전배상 및 사건의 신속한 종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조정과정을 통한 가해자의 변화와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 등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다. 기존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

현행의 형사사법절차상에 있어서의 비공식적 형사합의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 보다는 이미 검찰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비록 수사단계인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제도로서 2006년 시범 실시된 이후 2010년 4월 21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진

제도로 자리매김하였고, 조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많은 운영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조정제도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정기관의 자격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형사사법기관과의 협조가 보다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며,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형사조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조정제도로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비공식적 형사합의를 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민간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형사조정을 오직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시민은 대부분 이들 기관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조정제도의 경우 조정자의 역할이 기대되고, 또한 주로 취급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조정기관을 특성화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기관의 경우 혁신에 대한 잠재력이 공공기관에 비해 많고, 민간기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조정자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의 형사조정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라. 형사조정센터 설립

형사조정이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활용될 경우 조정기관과 조정자의 역할모델도 단계별로 달라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형사조정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조정자의 역할이나 자격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형사조정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형사조정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조정제도의 운용현황과 실효성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형사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동일한 조

## 22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각 형사사법기관별로 설치할 경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통일된 조정기준 마련과 조정자의 교육 및 훈련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을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목적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등 현 조직의 업무와 역할을 격상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형사조정국(가칭) 등을 설치하여 형사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게 하고 현재와 같이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로 형사조정센터(가칭)를 설치하여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사조정센터와 같이 형사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형사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조정위원은 검찰과 친분이 있는 자라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조정개시시마다 잦은 위원선정, 그리고 이들의 활동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처리 능력을 가진 자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 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형사조정 상임위원에게 사건의 특성에 따른 조정사건 배당과 이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선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형사조정 상임위원에게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4.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

이상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를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조정절차의 개시

형사조정은 형사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법적 효과도 각각

다양하게 나타난다.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게 적합한 사안이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와 판사는 공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형사조정절차의 진행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시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소제기 전까지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면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기관의 형사절차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나. 조정기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형사조정국(가칭) 등을 설치하여 형사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게 하고 현재와 같이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확대/발전시켜 형사조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조정 관련하여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자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성에 따라서는 공인된 외부의 독립된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각 형사절차단계에서 조정적격성이 인정된 사안을 형사조정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재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법무부 정부예산에 의하고 독립된 민간기관의 경우 공공 및 사적 기금의 혼합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다.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 1) 형사조정 의뢰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완료한 후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및 검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형사조정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형사조정 결과는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 직접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 24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등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 당해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을 권유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송부한다.

검사는 사건처리 절차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행할 양형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형사조정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나 판사는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의 조정적격성 및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조정 성립의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실질적 형사화해 절차 진행

형사조정의 과정 및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형사조정국에서 형사조정제도 활용과 조정위원의 선정 및 교육 등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형사조정센터는 자체적으로 형사조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3) 형사조정절차의 종결

조정기관의 조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에 의한 피해의 회복이나, 사과 등을 함으로써 화해(조정)가 성립될 수 있다.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면 수사단계의 경우 사건 의뢰 기관은 조정기관으로부터 형사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형사절차를 중지(불기소결정 등)하고, 공소제기 이후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공판개시 이전의 경우에는 검찰은 공소취소, 법원은 공소기각 등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중지하며, 공판이 개시된 이후에는 법원은 이를 형의 감면 또는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한다.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1장

---

## 서론

---

안성훈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최근 범죄피해자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형사합의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사조정제도와 유사한 형사합의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형사합의제도는 손해의 전보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화해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법관의 양형판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실무상 인정해 오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제도는 실제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상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공식적인 제도이고, 검사 또는 판사는 형사절차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는 없지만 관행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형사합의제도는 법률의 규율영역 밖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뒷받침해 줄 형사정책적 요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합의의 여부 및 그 내용이 순수하게 당사자 간의 자율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sup>2)</sup> 사적인 분쟁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론으로 귀착

1) 강석구/박광민/김재희(2009),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8쪽.

2) 법실무가들이 어느 정도 비공식적으로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합의의 주요과정은 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에서 앞서 기술한 부정적인 영역들이 존재한다. 형사실무과정에서 중개와 일정한 형식 등을 제공하고, 합의의 결과를 고려·반영하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역할은 없다.

될 수도 있고, 또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회유와 협박 또는 다른 형태의 기망 등에 의한 위협성에 의해 형사합의제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sup>3)</sup>

형사법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던 것을 넘어서서 현재에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회복적 사법이다.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형사사법과정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형사합의는 이러한 형사법의 최근 발전방향과 형식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논한바와 같이 부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갖는 형사합의는 이처럼 더 높아진 형사법의 지향과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법의 지향을 사회일반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것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따라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되어온 비공식적 형사합의제도를 형사법 규범의 틀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러한 제도화를 제언하는 것이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형사합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형사합의가 예전부터 있어왔다고 논하고 있으나 이 연구들의 핵심 초점은 형사합의에 있지 않았다. 즉 이 연구들은 형사합의의 양상에 대해서 연구초점을 세우고 접근하기보다는 피해자학이나 양형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영역인 형사합의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초기연구로서 이영란(1988)은 상해, 폭력행위에 관한 양형을 중심으로 어떤 변수가 형의 경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변수로 포함시켰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형사합의와 양형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형사합의는 합의를 하였음/않았음으

3) 김성돈(2001),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183쪽.

로만 파악되고 있으며 형사합의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후술될 다른 여러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참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후 박일환(1993)은 81년의 폭력범죄 및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1심 양형결과를 자료로 하여 합의여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형사합의가 양형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박일환의 연구 역시 형사합의의 여부를 하였음/아니함으로 단순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른 빈도수를 분석하고 있을 뿐 ‘형사합의’라는 하나의 형식 또는 현상에 대한 관심과 자세한 기술은 수행하지 않았다. 김성돈(1997)은 1997년 당시를 세계적으로도-한국에서도 피해자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증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형사법 및 형사정책 일반의 체계적 변화 양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위 향상은 기존의 전통적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따라서 이는 원상회복을 개념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요청하였다. 김성돈은 피해자의 지위 향상이라는 세계적 경향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부터 한국에 원상회복의 원시양상이 있었음을 밝히며 이것을 형사‘합의’로 포착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합의라는 현상이 기존의 형사절차와는 다르게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를 포섭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밝힌다. 이는 김용세/박광섭/도중진(2001)의 연구에서도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 세 연구자는 외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해 왔으며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합의’라는 표현이 정착되어 있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방향들은 오늘날 형사합의 및 관련분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피해자학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혁신적 접근들을 배제한 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윤동호(2006)는 특정 범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해당 범죄가 침해하는 법익의 공적·사적 성격을 판별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형사합의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형사합의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금전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거나 합의강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실제로 당사자 간의 화해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함을 논하였다. 이현정(2011)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양형인자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이 때 양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관련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형사합의를 다룬다. 이현정 역시 윤동호와 마찬가지로, 특히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하여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에 의한 합의강요 및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현정은 처벌불원과 합의마저도 양형에서 매우 치밀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현정은 형사합의를 유효한 양형인자로서 받아들여, 형사합의가 어떠한 절차를 거쳤으며 실질적인 화해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였는가의 여부가 함께 확인된 상태여야 함을 주장한다. 장다혜(2012)는 형사합의 현상을 연구의 핵심 초점으로 하고 있는 최초의 연구이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젠더 연구적 관점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형사합의의 문제점을 발견·분석하고 성인지적 제도화 방안까지 모색하였다. 형사합의를 핵심주제로 하는 거의 유일한 연구이며, 다양한 접근방식 및 방법론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의 진행과정을 포착하여 자세하게 기술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법여성학이라는 연구관심에 기반하고 있어 형사합의 과정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어 있고 제도화 방안 역시 성인지적으로 2차 피해·성폭력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일반론이라기보다는 그 특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형사합의를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수단 내지 형사절차 내의 화해·조정제도의 마련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비제도화된 법실무 관행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형사합의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기존의 형사합의 관행을 제도화하는 데에 있어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제2장에서는 기초적인 검토로서 형사합의와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을 검토 정리하여 형사합의의 의의 및 내용 등을 파악하고 또한 형사사법절차 단계별(경찰, 검찰, 법원) 형사합의 관행과 관련한 실태와 특징을 검토·분석하는 등의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또한 공식화된 형사합의로서의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

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를 포함하여 외국의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본 보고서가 목적으로 하는 형사합의의 공식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로서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를 자리매김하고 확대·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유용한 준거가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형사사법기관 실무 전무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현행 형사사법절차 단계별(경찰, 검찰, 법원)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와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형사사법기관 실무 전무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나타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고, 또한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근거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하여 형사실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형사합의를 형사사법절차상 제도화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그 방안으로서 비공식적 형사합의를 기존의 형사조정제도에 편입시킴으로서 조정제도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위해 형사합의와 형사조정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문헌자료 검토를 하였고, 또한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 시사점을 얻고자 외국의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문헌 등을 통해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형사실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합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경험해본 법실무자(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 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를 위한 주요 참고자료를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합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첫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의 실태, 둘째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셋째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넷째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또한 경찰단계에서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첫째,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의 실태, 둘째, 경찰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셋째,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의 효과 및 문제점, 넷째, 경찰단계 또는 형사절차에서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심층면접은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에 관한 일선 경찰공무원의 의견이나 느낌, 태도와 감정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심층면접 방법은 자유응답 방식으로 실시하여 평소의 생각을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풀어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면접기간은 2014년 8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으로, 소속기관, 지역 및 부서가 다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조사에서는 형사합의에 대한 실무자들의 견해, 형사합의에서의 실무자들의 참여유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함으로써 연구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형사합의의 ‘현황’을 재확인하고, 이에 덧붙여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제도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2장

# 이론적 배경

---

안 성 훈



## 제2장

# 이론적 배경

## 제1절 형사합의의 의의

### 1. 형사합의의 개념

형사합의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sup>4)</sup>, 따라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찾아 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는 손해의 전보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자발적인 화해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법관의 양형판단에서 형벌의 감경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sup>5)</sup>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감경 받고자 하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비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의 표시로서 “합의서”, “형사합의서”, 또는 “처벌 불원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액을 변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작성되는 서류를 형사합의서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네지는 돈을 형사합의금이라 한다. 이때에 형사합의의 내용<sup>6)</sup>이나 절차, 법적 효과에 대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형사합의를 한 가해자에게는

4)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느냐 아니냐 만을 묻게 된다.

5) 김성돈(2008), 형사사법체계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1쪽.

6) 이 때 합의의 내용 중에서 형사절차와 관련된 부분만 고려한다면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법기관에 표시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송성룡(1999),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손해전보 수단과 원상회복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제43권, 29쪽; 장다혜(2012),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81쪽 재인용.]

형벌의 감경효과가 인정된다.

#### 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형사합의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하나인 ‘계약’으로,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 간에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한다.<sup>7)</sup> 민사영역에서 보통 ‘합의’는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 당사자 간의 약속 내지 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정한 보상 내지 책임이행을 약정하고 그 반대급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sup>8)</sup>

이러한 형사합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바 민사합의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민사합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sup>9)</sup>,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바 ‘민사합의’가 단순히 민사적인 손해배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형사합의는 형사소송절차상 법률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합의와는 차이가 있다.<sup>10)</sup>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인 범죄에서 공소를 기각시키거나 여타의 범죄에서 검사의 사건처리와 법원의 양형심사시 기소유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또는 보석심사나 가석방 심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상참작사유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형사상의 법률효과를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는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 혹은 무상의 계약이다.”<sup>11)</sup>

#### 나. 형사합의와 형사상 화해 · 조정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합의는 형사사건의 민사적 해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7) 장다혜, 위의 논문, 82쪽.

8) 위의 논문, 82쪽

9) 송성룡, 앞의 논문, 29쪽.

10) 위의 논문, 82쪽.

11) 송성룡, 앞의 논문, 28-29쪽; 위의 논문, 82쪽 재인용.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정의나 법률에 의한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를 토대로 운영되고 규범적 효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에 의한 갈등 해결이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 있지 않다.<sup>12)</sup>

이에 반해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현행법 하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 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기소전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소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조정 제도는 형사조정위원이 주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6조),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제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민사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민사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회복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sup>13)</sup> 한편 소년법에 한정되지만, 소년법에서는 소년사건에 대해 별도의 화해권고제도를 두고 있다. 즉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의 차원에서 소년에게 피해자와 피해변상 등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이 그러한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 1) 기소 전 화해(형사조정)

기소 전 화해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고소 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침해범죄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원만한 합의 또는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당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장 제2절 4 참조).<sup>14)</sup>

12) 신양균(2009),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동아법학 제44호, 448쪽.

13) 위의 논문, 452쪽; 안성훈(2013),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6~57쪽.

14) 안성훈, 위의 보고서, 58쪽.

## 2) 형사재판상 화해

재판 단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와 소년법 제2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 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하여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36조 제1항), 이를 받아들이면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종래에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것이 양형사유로 고려되어 왔다.<sup>15)</sup> 그러나 이 합의서에는 집행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피해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어내어 강제집행을 해야만 하고, 이로 인해 비용이나 시간 등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자의 합의를 형사절차에서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그 기재를 민사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sup>16)</sup>

다음으로 소년사건에 한정되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법 제25조의3이 정한 취지에 따라 보호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을 하기에 앞서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하여 법원이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화해권고를 하도록 하고(동조 제1항), 이러한 화해권고에 따라 보호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15) 신양균, 위의 논문, 456쪽.

16) 앞의 논문, 455쪽.

## 2. 형사합의의 연혁<sup>17)</sup>

사실 형사합의와 같은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식은 재판제도가 출현하기 오래 전부터 늘 이용되어 왔다. 예컨대, 동해보복과 잔혹한 형벌규정으로 유명한 함무라비법전(Code of Hammurabi)<sup>18)</sup>을 살펴보면 배상형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배상형 제도는 공법과 사법이 분리되고 국가권력이 확립되기 이전의 고대사회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통용되던 범죄대응방식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전이나 국왕 소유의 가축을 절도한 자는 각각 일정한 속죄금을 지불하고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제8조). 타인의 눈을 뺨 자는 그 눈을 빼내고(제196조) 타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제197조). 그러나 자유민(free-born man)이 해방자유민(freed man)<sup>19)</sup>의 눈을 빼거나 뼈를 부러뜨린 때에는 1 미나(mina)의 금(金)을(제198조), 타인 소유 노예의 눈을 빼거나 뼈를 부러뜨린 때에는 1/2 미나의 금을(제199조) 지불하고 형벌을 면할 수 있었다. 대등한 신분에 속한 타인의 이를 부러뜨린 자는 그 이를 부러뜨리지만(제200조), 자유민이 해방자유민의 이를 부러뜨린 때에는 1/3 미나의 금을 속죄금으로 지불하게 하였다(제201조). 해방자유민이 상위의 신분에 속한 자를 폭행한 때에는 가죽채찍(ox-whip)을 사용한 60대의 공개태형에 처하고(제202조) 노예가 해방자유민을 폭행한 때에는 그 귀를 자르지만(제205조), 자유민이 같은 신분에 속한 타인을 폭행한 때에는 1 미나의 금을(제203조), 해방자유민이 같은 신분의 타인을 폭행한 때에는 10 세켈(shckel)의 돈을(제204조) 속죄금으로 지불하게 하였다. 그밖에 폭행치상(제206조 내지 제208조), 폭행에 의한 낙태(제209조),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제215조 내지 제223조)에 대해서도 배상형을 규정하고 있다.<sup>19)</sup>

우리사회에서도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식은 재판제도가 출현하기 오래 전부터 늘 이용되어 왔다. 예컨대, 농경사회에서 마을 원로의 관여로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든가,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에게 가사분쟁을 의논하여 해결한다든

17) 형사합의의 연혁과 관련한 이하의 내용은 저자의 拙稿 [안성훈(2013),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9쪽] 이하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8) 바빌론 제1왕조의 함무라비왕(재위 BC1792~1750)이 종전의 법원칙들을 집성하여 제정하였다.

19) 함무라비 법전의 번역서로는 (飯島紀(2002), *함무라비법典*, 國際語學社) 를 참조.

가, 상인들 간의 분쟁을 가장 세력 있는 우두머리 상인에게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등은 제도화된 것들은 아니었으나 우리들에게 익숙한 분쟁해결수단들로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인 분쟁을 법에 호소해 해결하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풍습을 존중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제재에 따라 자치적으로 규율하는 사회현실로서의 중재 또는 조정을 우선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조정을 우선시 하는 사상이나 전통의 뿌리는 8조법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와 형사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았던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八條禁法)을 통해 배상과 속죄가 혼재되어 있었다. 즉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에는 “타인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게 하며, 절도범은 노비로 삼되 50만전을 지불하여 속죄하게 할 수 있다(相傷 以穀償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五十萬錢).”는 배상형 규정이 있었다.<sup>20)</sup> 또한 향약을 통해서도 조정, 중재제도가 마을 생활의 규범으로 존재해 왔으며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서도 정부에 의해 육성, 장려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향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네 가지 강목을 주된 정신으로 삼아왔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법에서는 형사·민사 등 서민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법률의 대부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생활의 규율도 예속과 관습과 같은 불문율적 기준에 따라 유지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화(私和)라는 관습이 있어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하는 대신에 당사자 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장려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문헌 등을 살펴보면 제3자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 중재나 소송은 아주 기피되고 당사자 간의 타협에 의하거나 제3자가 개입하여도 조정자의 기능을 하는 분쟁해결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법적으로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금전이나 물품의 납입을 조건으로 형을 감경 또는 변제하는 속형(贖刑)제도가 채용되었는데, 주로 반역죄, 강도죄 등 중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부녀자나 양반 또는 유년과 노년의 범죄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sup>21)</sup>

20)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와 형사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았던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八條禁法)을 통해 배상과 속죄가 혼재되어 있었다. 즉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에는 “타인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게 하며, 절도범은 노비로 삼되 50만전을 지불하여 속죄하게 할 수 있다(相傷 以穀償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五十萬錢).”는 배상형 규정이 있었다.

21) 신양균, 앞의 논문, 447쪽 참조.

1910년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계수한 일본의 법제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국가독점의 형사제재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배상합의는 범죄사건 처리의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극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拂下)과정에서 재산분쟁이 빈발하면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고소를 택하게 되고 검찰이 이러한 고소사건을 통해 민사 분쟁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검찰은 재산분쟁의 효율적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여 왔고, 그러한 검찰관행에 보조를 맞추어 시민사회는 형사합의의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sup>22)</sup>

### 3.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

#### 가. 형사합의의 법적 근거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적 합의인 형사합의라고 하는 용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규정은 없으나 법실무상 형사합의는 범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의 철회 내지 처벌불원의사로서 형사절차에서 표출되므로, 범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인 고소(告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사실상 형사합의의 법적 근거가 된다.<sup>23)</sup>

#### 나.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

형사합의는 범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고소취소)를 포함하며 범죄행위자에 대한 형벌 면제 또는 감경을 위한 참작요소로서 형사소송법상 근거를 통해 형사소송절차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진다.<sup>24)</sup>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범죄에 있어 합의여부는 양형심사에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는데,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

22) 신동운 (2006),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호, 147쪽; 신양균, 앞의 논문, 447~448쪽.

23) 장다혜, 앞의 논문, 81쪽.

24) 위의 논문, 90쪽.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철회나 처벌불원의사는 소송의 전제조건으로서 결정적인 작용, 즉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그 외의 범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수사기관 및 법관이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예컨대,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는 법원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결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 있어서 구속수사의 여부나 기소유예의 결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경미한 범죄 외에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심사에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며, 심지어는 살인죄에 있어서도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sup>25)</sup>

형사합의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합의를 사적인 분쟁해결을 통한 ‘화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화해란 민법상 개념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약정하는 것이다(민법 제731조). “형사합의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형벌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은 바로 형사합의가 당사자 간의 화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형법의 기본적인 원리인 ‘보충성 원칙’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합의는 일종의 사적 분쟁해결로서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제한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지게 된다.”<sup>26)</sup>

둘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한 사적 분쟁해결의 방식과 내용이 ‘피해회복’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피해회복이란 범죄행위로 부과되는 민사상 원상회복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다. 형사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법실무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피해회복이나 피해감소를 위한 범죄행위자의 노력, 범죄행위자의 사죄와 반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범행 후 정황으로서 고려하고 있다.<sup>27)</sup>

25) 송성룡, 앞의 논문, 29~30쪽.

26) 장다혜, 앞의 논문, 91쪽.

27) 위의 논문, 91쪽.

#### 4. 형사합의의 효과

통상적으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sup>28)</sup>

……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

(출처: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도4283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1심 국선번호인을 통하여 2007. 10. 11.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출처 :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상기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의 일부로서 형사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폭행죄나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명시적인 형사법적 효과는 없지만 사실상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불구속 재판을 하거나 또는 재판에서 형을 감경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28) 대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http://www.spo.go.kr/minwon/info/procedure/criminal/minwon0515.jsp>

#### 44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와 같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직간접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대인범죄나 교통사고 또는 의료사고에 따른 상해나 사망과 같은 과실범죄의 경우나 사기나 횡령범죄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특히 민사상 분쟁해결을 전제로 형사절차의 진행을 종결시키거나 양형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사실상 일반화되어 있다.<sup>29)</sup>

실제로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 측과 이른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구속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구속을 하는 것은 실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형집행을 위한 인신확보를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속수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실상은 형집행의 용이를 위해서 실무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형법 51조<sup>30)</sup>에 기인한다. 즉 동법 제51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원은 반드시 양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참작치 않으면 위법으로 상고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의 형사합의는 형사책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9) 신양균, 앞의 논문, 446쪽. 안성훈, 위의 보고서, 38쪽, 주21 재인용.

30) 제51조(양형의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 5. 실무에서의 형사절차단계별 형사합의 과정

### 가. 수사단계에서의 형사합의 과정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수사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조서의 양식에는 친고죄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대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sup>31)</sup> 예컨대, 경찰수사단계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신문조서 작성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합의의사 유무를 물어보고, 피해자에게는 진술조서 작성시 마지막에 피의자 처벌의사 유무에 대해 확인한다. 고소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곧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sup>32)</sup> 고소장 접수 후에 진행되는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이러한 처벌희망의 의사는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수사단계의 실무에서는 단지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의과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합의의 방식이나 양식 등을 정형화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합의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합의조서<sup>33)</sup>가 작성되기도 한다.<sup>34)</sup> 합의조서는 개인 간의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 시기나 합의 내용 등을 명문화하여 작성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합의에 필요한 법적 절차 기준을 안내하는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피해자나 피의자의 합의 내용에 대한 조사나 합의 과정에 협박이나 강요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합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며, 중국적으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입증하는 증인의 역할도 하게 된다.<sup>35)</sup> 이러한 상황은 검찰수사단계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다.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형사합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

31) 장다혜, 앞의 논문, 99쪽.

32)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은모(2011), 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173쪽]

33) 실무에서는 피해자 2회 진술 양식을 합의조서의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34) 장다혜, 앞의 논문, 100쪽.

35) 위의 논문, 101쪽.

해자 간의 사적인 형사합의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형사합의는 제도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컨대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양 당사자 간에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합의 의사를 가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종의 형사합의 중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sup>36)</sup>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2. 10. 25 일부개정 대검찰청 예규 제615호) 제11조 제1항은 형사합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형사합의에 관여하게 된다.

#### 나. 재판단계에서의 형사합의 과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형사합의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 정황으로서 형사합의 여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인자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합의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면 이는 곧 피고인의 반성과 자신의 범죄책임을 인식하고 이행하는 모습과 연결되어 형의 집행유예 또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판단계에서 형사합의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주로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형사합의 과정이 전개된다.

이러한 형사합의 과정에서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와 같은 관여는 하지 않지만, 앞서 살펴보본바와 같이 형사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요소이자 고려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합의의사를 확인

36) 위의 논문, 101쪽.

하는 과정 등에서 재판부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sup>37)</sup>

예컨대, 피고인이 형사합의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합의성립 여부나 합의의사 유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질문하게 되고, 이러한 질문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과정 중에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특히 판결 전에는 형사합의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며, 피고인이 형사합의를 위해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판실무에 있어서 선고기일이 될 때까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피고인의 경우, 형사합의를 이유로 선고연기를 요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약 2주에서 3주가량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러한 합의 유예기간은 일종의 정착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sup>38)</sup> 또한 이와 같이 선고공판 전 2~3주의 선고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재판상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부가 유예기간을 주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합의서만으로는 합의의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가 합의 성립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라고 한다.<sup>39)</sup>

특히 형사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간과할 수 없어, 피고인 등에게 방어권 보장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40)</sup> 즉, 형사합의가 성립되면 그 결과가 양형에 참작되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합의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양형상 참작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제공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해 보장되는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에 근거하여 이루지고 있다. 실제로

37) 위의 논문, 105~113쪽. 참조.

38) 위의 논문, 113쪽.

39) 위의 논문, 115쪽.

40) 위의 논문, 115~118쪽. 참조.

형사소송실무상 피고인이 합의시도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이나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sup>41)</sup>

##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의의<sup>42)</sup>

### 1. 개념

형사조정제도는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관여 하에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 및 장래의 행동계획에 대해 자발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sup>43)</sup> 광의의 의미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sup>44)</sup>

형사조정제도를 ‘형사화해제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화해’는 가해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제3자의 개입 없이 합의에 이르는 것임에 반하여, ‘형사조정’은 제3자인 조정위원회의 알선으로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 형사실체법적 성격이 아닌 형사절차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민사조정과도 대응된다는 점에서 ‘형사화해’와는 그 개념을 달리한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45)</sup>

형사조정(Criminal Mediation)의 의의는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갈등을 해소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형사조정은 대체 형사사법절차로서의 형사조정뿐만 아니라, 독립된 사회복지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

41) 위의 논문, 117쪽.

42) 형사조정제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저자의 拙稿 [안성훈, 위의 보고서, 58~67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3) 김성돈(2005),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성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261쪽.

44) 형사화해·조정제도는 1969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전통적 사법절차 외의 방법으로 경미한 폭력범죄, 기망수단에 의한 금융거래 등 재산범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청과 법원, 미국중재협회가 공동으로 중재법정을 설립·운영하면서부터 처음 도입되었고, 이것이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피해자-가해자 조정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으로 발전되었다. [조광훈(2008),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제57권 제5호, 355쪽.]

45) 앞의 논문, 362쪽.

에 의한 자활프로그램 형태의 회복적 사법조정(Restorative Justice Mediation)이나 사회적 조정(Social Mediation)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협의의 형사조정은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제도화된 조정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조정기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sup>46)</sup> 즉, 형사상 문제와 관련된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조정자가 행하는 일정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상호 대화하고 논의함으로써 일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체적 절차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사조정에 대하여는 일정한 형사법적 평가를 거쳐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sup>47)</sup>

이러한 형사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형사조정제도는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재산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sup>48)</sup> 보통 형사사건은 사기 등 재산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 폭행 등 모든 형사사건을 통칭한다. 이에 비해 형사조정제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관련 범죄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관련 형사사건은 대부분 당사자 간의 재산상 분쟁에 의해서 유발된 고소사건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범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보다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순수한 형사사건이기 보다는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해결절차가 될 수 있다.

둘째, 형사조정제도는 경찰, 검사 등 공권력에 의하여 해결되는 법적 분쟁이 아니라 민간 자율에 의하여 해결되는 분쟁조정절차이다. 형사절차는 국가의 공권력이 발휘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문이다. 형사절차에서는 국가가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강제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는 국가의 강제력 행사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

46) 안성훈, 앞의 보고서, 58쪽.

47) 위의 보고서, 59쪽.

48) 형사조정은 어떠한 성질의 범죄에도 적용가능하다. 재산범죄는 물론, 폭력범죄에도 적용가능하다. 吉田敏雄(2005), 法的平和の恢復, 成文堂, p. 82. 현행 형사조정 대상범죄에 대하여서는 대검찰청의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 참조.

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의 주요 인사이다.<sup>49)</sup> 해당 지역의 교수 및 법조관련자, 의사 등의 지역 유지들로 하여금 사건을 조정하게 되지만 조정에 강제력은 없다. 사건 당사자들은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조정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의 강제력의 일환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문제해결절차에 비해 형사조정제도의 문제해결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즉, 형사조정제도는 사적 자치를 중시하며 시민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줌과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로 하여금 사 인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피해 회복적 형사사법제도이며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절차를 의미한다.<sup>50)</sup>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징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범죄가해자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범죄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범죄피해자이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 등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생긴 제도가 형사조정제도이다.<sup>51)</sup>

또한, 형사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로서 분쟁해결에 있어서 사법 외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형사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며 경직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대하여 형사조정제도는 경제성, 신속성, 유연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전통적인 형사사법체제를 대체하고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49) 吉田敏雄, 앞의 책, 82쪽

50) 대체적 분쟁해결(ADR) 절차의 의의에 관해서는 [안성훈, 위의 보고서, 33쪽] 이하 참조.

51) 김성돈(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I): 형사사법체제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쪽 이하.

## 2. 발전배경

### 가.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의 한계

형사조정제도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조정제도의 출현배경이 된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형사사법은 국가질서의 파괴로 인한 손해라는 입장에서 질서 수호자인 국가는 일종의 추상적 피해자인데, 구체적 피해자인 사건의 피해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문제해결과정은 구체적 피해자가 아닌 추상적 피해자인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형사사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로서 가해자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재통합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응보적 사법’의 관점에서는 범죄자가 잘못에 대해서 처벌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서 범죄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가해자는 처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이나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가해자의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셋째, 피해자의 피해보상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배제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는 사건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경우에 따라서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며,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 나. 회복적 사법이론의 발전

이러한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새로운 사법이념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회복적 사법의 출현은 특히 형사사법시스템을 피해자를 향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학문적 견해에 그 주된 뿌리를 두고 있다.<sup>52)</sup> 회복적 사법에 관한 통일된 개념정의는 없지만, 마아샬(Tony Marshall)의 정의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은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당사자가 그 범죄가 미친 영향 및 그 범죄가 장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합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절차”라고 하고,<sup>53)</sup> 웰그레이브(Lode Walgrave)의 정의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사법의 주된 방향으로 잡고 있는 모든 행위”라고 한다.<sup>54)</sup>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사건을 국가가 정한 보호법익의 침해로 정의하지 않는다. 관계 당사자에게 개별 구체적인 해악적 영향(경제적·신체적·정신적 영향의 총체)과 인간적 회복을 지향하는 당사자 자신의 내면적 요구나 타자에의 요청이라고 하는 요구에 근거하여 범죄를 정의하여야 한다. 즉, 해악적 영향과 요구에 근거하는 정의로, 여기에서는 근대법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열등한 위치에 있었던 감정이나 특수한 상황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 ② 국가가 형사책임을 근거로 형벌로써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에 의한 회합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사태에 직면하여 자각한 책무(책임)에 의한 배상으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태는 건전화된다고 하는 견해로서, 배상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등의 상징적인(정신적인) 배상까지도 중시해야 한다.
- ③ 사태의 해결은 국가(사법의 관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지역을 포함하는 전

52) 김성돈(2009), 앞의 논문 265쪽; 高橋剛夫(2003), 修復的司法の探求, 成文堂, p. 4. 이하 참조.

53) Marshall(1996), “Criminal Mediation in Great Britain 1980-1996”,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4(4), p. 37.; 김성돈(2005),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 407쪽 재인용.

54) Bazemore, Gordon and Walgrave, Lode.(1999),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In search of fundamentals and an outline for systemic reform." *In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Repairing the harm of youth crime*, ed. Gordon Bazemore and Lode Walgrave, With an introduction by Gordon Bazemore and Lode Walgrav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pp. 45-74.

관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자발적·주체적 관계당사자주의).

- ④ 개인 간의 비공식적인 회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생활세계 근저에 있는 구조적 격차, 힘의 불평등, 피해자의 궁핍, 일상의 경제적 부정의를 간과한 채 이루어 저서는 안 된다. 이것은 회합에 있어서 국가의 구조적 문제 전반을 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도 아니다. 범죄를 조장하는 지역 사회적·심리적 조건에 대한 통찰을 참가자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 공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sup>55)</sup>

- ① 피해자의 요구를 절차에 반영
- ② 가해자를 지역사회 속으로 재통합시킴으로써 재범을 예방
- ③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
- ④ 피해자를 후원하고 가해자의 사회복귀를 도우며 장차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재건
- ⑤ 사법메커니즘의 과잉 및 그와 연관된 비용과 지연을 회피

형사조정제도는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바탕을 둔 형사사건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형사조정제도의 대부분은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서 의의를 가진다.<sup>56)</sup>

55) Shari Tickell and Kate Akester(2004), *Restorative Justice: The Way Ahead*, p. 20.; 김성돈(2005), 앞의 논문, 410쪽 재인용.

56) 김성돈(2009), 앞의 논문, 269-270쪽.

### 3. 유형

형사조정제도의 유형은 조정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화해형 모델과 문제해결지향형 모델로 대별할 수 있다.<sup>57)</sup>

#### 가. 문제해결형 모델

문제해결형 모델은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needs)를 상호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sup>58)</sup> 문제해결적 사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자의 주된 관심은 갈등과 분쟁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으므로, 문제 상황의 전체적 인식과 평가가 중시된다. 사건 당사자는 분쟁의 경위를 말하고 요구사항, 불만, 분노를 표현할 기회를 부여받기는 하나, 이는 문제의 전체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시되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조정위원이 분쟁 처리 및 해결에 필요한 문제를 확인하고 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둘째, 화해를 추구함에 있어서 당사자 자신의 선택이나 의사보다는 조정위원이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 조정위원은 문제해결의 틀 내에서 다루는 문제만을 취급하고 그 이외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즉, 조정위원은 문제점을 선택하고 선택된 문제의 해결에만 치중하게 된다.

문제해결형 모델은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어서 신속히 처리되며, 비용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sup>59)</sup> 문제해결형 모델에 있어서 조정절차의 초점은 주로 지급할 배상액 등을 결정하는데 있고, 범죄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충격 등에 관한 분쟁 당사자 간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기 때문에 조정자는 조정에 앞서 굳이 당사자와 개별면담을 행하지 않아도 되며, 조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지 않는다. 또한, 분쟁 당사자에게는 조정의 목적, 절차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출석통지를 할 뿐이다.

57) 형사조정제도의 유형에 관한 이하의 기술은 [대검찰청(2014), 형사조정 이론과 실무, 박영사, 102~105쪽]을 인용·편집하여 작성하였다.

58) 위의 책, 104쪽.

59) M. Price(1995), "Comparing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Models", *VOMA Quarterly* 6(1), M. S. Umbreit, Humanistic Mediation, p. 8.; 위의 책, 104쪽, 주6 재인용.

조정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조정자가 당사자 간의 화해절차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조정자는 주도적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분쟁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화해형에 비해서 기대하기 어렵고 굳이 강조되지도 않는다. 때로는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회피 또는 축소되기도 한다. 또한 조정의 목적은 사건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와 조정자 간의 관계의 촉진을 강조하지 않는다.

#### 나. 화해형 모형

화해형 모형은 당사자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화를 통한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조정절차에서 배상 등 합의결과 도출에 치중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실된 대화를 강조하는 보다 인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sup>60)</sup>

화해형 모형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자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태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둘째, 조정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의 자발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조정자의 역할은 당사자들에게 판단의 전제가 되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셋째, 조정자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도록 조정한다.

화해형 모형에서 조정은 ① 범죄행위의 확인, ② 회복방안 협의, ③ 합의 성립의 순서로 진행된다. 범죄행위의 확인단계에서는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의 사실행위, 피해자의 피해경험에 관한 사실내용과 감정, 범죄 후의 사정 등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감정을 편안하고 솔직하게 표출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가능하게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사건이 ‘인간화’되고, 범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회복방안 협의단계에서 당사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합의단계에서는 범죄자의 장래 이행사항에 관한 일정한 합의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60) <http://www.voma.org/docs/ethics.pdf>, at 2~3.: accessed June 12, 2009.; Guidelines for Victims-Sensitive Victim-Offender Mediation: Restorative Justice through Dialogu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위의 책, 102쪽, 주4 재인용.

## 56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화해형 모형과 문제해결형 모형의 특징을 비교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2-1> 문제해결형 모형과 화해형 모형 비교

	문제해결형 모형	화해형 모형
목표	분쟁사항에 대한 합의	당사자 간 대화와 관계회복
조정 준비	조정 전 조정자와 접촉하지 않음. 담당 직원이 내부적으로 정보 수집	조정절차 개시 전 조정자와 당사자가 최소한 한번 이상의 대면접촉, 사건에 대한 주장을 경청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쟁점을 정리
조정자의 역할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	조정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 당사자 간 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조력, 상호간 직접적 대화가 용이하도록 배려
조정관련 대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발언과 질문	조정절차 중 직접적 발언은 삼가, 당사자 간 충분한 발언과 대화 이후 조정자는 당사자 사이의 발언에 개입
분쟁에 대한 대화	분쟁에 관련된 감정 표현 자제	분쟁에 대한 솔직한 논의와 감정 표현, 내면의 이야기를 통한 치유를 강조
합의 결과	분명하고 가시적인 성과 강조	단순한 합의보다는 당사자 간 새로운 관계 설정 강조

\* 대검찰청, 위의 책, 105쪽 재인용.

## 4.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 가. 도입경위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내부지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인천 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같은 해 5월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 한 후,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시행되었다. 형사조정은 처음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안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형사조정을 하면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2009년 11월 10일부터는 형사조정위원회의 소속을 해당 검찰청으로 변경되었다.<sup>61)</sup> 이후 2010년 4월 21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형사조정제도는 비로소 법적인 근거를 가진 제도로

61) 법무부(201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2, 법무부 인권구조과 용역과제, 101쪽.

자리매김하였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에 규정).

## 나. 운용<sup>62)</sup>

### 1) 개요

검사는 범죄피해자 또는 피의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예 회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조정회부서(대검지침 별지 제3호 서식)를 사건과(사건계)를 통하여 형사조정 담당 기구인 형사조정위원회에 송부하는 형식으로 회부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대학교수, 법조인, 의료인, 교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사조정은 이들 중에서 다시 3명 이내의 개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다. 형사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검사는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업무 외에는 형사조정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가 있으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데, 이와 같이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조정 절차를 개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동의권자가 최초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당해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결과통보서(예 : 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형사조정결정문(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형사조정조서(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9호 서식) 등 형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서류 일체를 사건과(사건계)를 통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형사조정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하의 기술은 [대검찰청, 위의 책, 80~89쪽]을 인용·편집하여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은 각하 처분하고,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

조정성립 후 별도의 수사 없이 각하 또는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 또는 항고제기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동법시행령, 대검지침, 각 검찰청 자체 운영지침 등이 있다.

## 2)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및 형사조정 대상사건

### (가)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1항, 대검지침 제2조).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의사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대검지침)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하면 담당 직원이 당사자로부터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대검지침)에 의한 형사조정신청확인서에 첨부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고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대검지침 제11조).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에 앞서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고소장 기재와 다를 경우 실제 주소와 연락처 등을 별지 제3호 서식(대검지침)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에 기재한 후 당해 사건기록과 함께 사건과(사건계)에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형사조정회부서에는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과 형사조정신청서(대검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형사조정신청확인서(대검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부분을 각 첨부한다(대검지침 제12조, 제13조).

### (나) 형사조정 대상사건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사건으로는 ①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②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의료분쟁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③ 위의 예시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상의 예시에 준하는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형사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대검지침 제3조 제1항).

다만, 위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①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②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처분을 제외한 각하 또는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부적당하므로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대검지침 제3조 제2항).

## 3)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무

### (나)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형사조정위원회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설치되며,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능력 및 법적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할 지검장(지청장)이 지역의 법조계·교육계·의료계·종교계·문화계 및 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에 응한 사람들을 상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위촉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공모절차를 밟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2조, 대검지침 제4조).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고, 형사조정위원장은 관할 지검장(지청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역시 2년으로서 연임 가능하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2조, 대검지침 제4조).

형사조정위원 위촉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비

리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대검지침 제4조 제6항), 해촉사유로서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금품 수수,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심신상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때,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중립성과 공정성 위배, 형사조정 업무실적 극히 저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49조, 대검지침 제4조 제7항).

그 외에도 형사조정위원회가 당해 사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립성 및 공정성, 업무청렴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규정하고 있고(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50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나) 형사조정위원회의 임무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담당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형사조정이 회부되어 오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2조, 제43조).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형사조정조서(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9호 서식)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형사조정결정문(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결과통보서(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등 형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서류 일체를 사건과(사건계)를 통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5조 제1, 3항, 대검지침 제20조 제4항).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검사에게 당해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5조 제2항, 대검지침 제20조 제1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당해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54조, 대검지침 제20조 제2항).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형사조정위원 중 형사조정 회부된 각 사건별로 형사조정을 담당할 개별 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2 내지 3인을 지정하고, 개별 조정위원회의 장(이하, ‘조정장’이라 함)은 해당 형사사건의 조정절차를 주재하되 담당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48조, 대검지침 제5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과의 업무협의, 형사조정위원 구성에 대한 자문 등 형사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사조정 담당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의 직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형사조정위원회의 지원업무 또는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조정 대상사건의 법률적 쟁점정리, 형사조정조서(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48조, 대검지침 제7조, 제8조).

개별사건의 형사조정기간은 회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대검지침 제9조 제1항),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때에는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대검지침 제2조 제2항).

#### 4)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 (가) 형사조정절차의 준비 및 개시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당해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52조, 대검지침 제6조 제2항).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일통지는 당사자에 대한 소환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어 출석통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데, 여기에는 형사조정기일 뿐만 아니라 형사조정 회부사실과 그 취지 등을 설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통지 방법은 우편이나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51조, 대검지침 제19조 제2항).

당사자 대신 그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위임관계서류를 지참하여 참석할 수 있고,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친권자나 보호자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조정기일 이전에 형사조정회부서(대검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고소장 또는 의견서 사본 등을 담당위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사전에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형사조정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조정 장소는 통상 형사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의 형사조정실에서 실시되고, 형사조정기간은 형사조정에 회부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3조 제3항, 대검지침 제6조).

#### (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송부, 열람 동의, 진술청취 등

당사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주장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회부 검사에게 고소장 등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 및 증거서류, 증거물 및 주장사실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송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타인의 명예나 비밀, 수사상 보안 필요사항 외에는 이에 응하게 된다.

또한,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이상의 관련 자료나 의견 등에 대하여 그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대검지침 제15조).

위원장은 당해 형사조정 회부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담당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기록(형사조정 과정에서 접수되거나 작성된 형사조정회부서<대검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관련자료, 기타 각종 서면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형사조정기일의 수행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조서(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조정결정문(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조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보호자 등이 형사조정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취지, 참석한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과 참여한 취지, 형사조정의 과정 및 당해 절차에 참여한 형사조정위원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형사조정결정문에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기재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하서 등의 서면을 편철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5조 제1항, 대검지침 제20조 제5, 6항).

형사조정결정문(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은 원본을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부본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형사조정위원회에 보관하고, 1부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형사조정결과통보서(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형사조정회부관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와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형사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고, 기피신청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대검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위원기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조정위원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50조 제1, 2, 5항, 대검지침 제4조 제9항).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대검지침)에 의한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이의신청인, 당해

## 64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형사조정위원, 조정장(당해 형사조정위원과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함)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의신청서의 당부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50조 제3, 4항, 대검지침 제4조 제10, 11항).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결과통보서(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형사조정결정문(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형사조정조서(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9호 서식) 등 형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서류 일체를 사건과(사건계)를 통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 제45조 제3항, 대검지침 제20조 제4항), 위원장은 형사조정결과통보서(서울중앙지검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부분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형사조정회부관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당사자가 소환을 받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1회 불출석의 취지를 형사조정회부관리대장에 기입하되, 다시 소환하여도 불출석한 경우 ‘기일불출석’으로 처리한다. 위원장은 당사자가 형사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경우 조정기일을 열지 아니할 수 있고, ‘형사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되, 형사조정 거부에 의한 ‘형사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되, 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검사에게 당해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5조 제2항, 대검지침 제20조 제1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당해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54조, 대검지침 제20조 제2항).

형사조정위원이거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자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형사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형사조정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형사조정을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사례비,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 등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sup>63)</sup>과 동시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해촉된다.

#### 다. 운영 현황과 전망

형사조정제도는 2006년 4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시행을 하여 오다가, 2007년에 들어서는 전국 검찰청으로 점차 확대 시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동안의 운용 실적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짧은 시행 기간에 비하면 그 성과는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정회부나 조정성립 건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조정성립률도 대체로 조정회부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통계수치를 보이고 있어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체 고소사건 또는 전체 접수사건 대비 조정회부율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조정에 회부하는 건수가 사건 중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4)</sup>

〈표 2-2〉 최근 5년간 형사조정 운용 실적

구 분	조정의뢰 (건)	조정성립 (건)	조정불성립 (건)	성립률 (%)
2009년	16,201	8,006	6,273	52.2
2010년	16,671	7,713	6,608	50.1
2011년	17,517	8,398	6,999	49.7
2012년	21,413	10,280	6,189	57.0
2013년	33,064	14,772	10,787	51.9

\* 법무연수원(2014), 범죄백서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63)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8조).

64) 조정회부율과 조정성립률은 다소 반비례 관계에 있고 성립률을 중시하다보니 일선청의 회부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통계방식을 개선하여 2012년 8월부터 회부율 30%, 성립률 70%를 반영한 ‘조정실적(100점 만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 해당청 조정실적(점) = 회부율×(평균성립률/평균회부율)×(30/100) + 성립률×(70/100)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58개 검찰청 소속 58개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형사조정위원은 2,310명으로, 직업별로는 변호사, 법학교수, 사업가, 법무사, 교육자, 의료인, 건축사, 세무사, 종교인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형사조정제도 관련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은 18억 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그 유용성이 국민들에게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형사조정제도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실무에서 점점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3절 외국의 형사조정제도 입법례

#### 1. 미국

##### 가. 시행배경

미국의 형사화해·조정제도는 1969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전통적 사법절차 외의 방법으로 경미한 폭력범죄, 기망수단에 의한 금융거래 등 재산범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청과 법원, 미국중재협회가 공동으로 중재법정을 설립·운영하면서부터 처음 도입되었다.<sup>65)</sup> 이후 1970년대에 등장한 회복적 사법제도의 확산과 엄격한 징벌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따른 구금대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형사조정제도가 미국 전역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미국 연방 법무부의 강력한 지원을 얻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해자 조정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등으로 발전되었다.<sup>66)</sup>

특히 미국에서 형사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이념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메노나이트 교단의 적극적인 회복적 사법 관련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메노나이트 교단 중앙위원회는 피해자-가해 조정이 확산

65) 조광훈, 앞의 논문, 355쪽.

66) 구체적인 내용은 [탁희성·강우예(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 주요 외국의 형사화해조정 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9쪽 이하] 참조.

단계에 이르자 조정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개발해서 유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메노나이트 교단의 선도적인 역할은 미국의 소규모 공동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민간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sup>67)</sup> 이와 같은 형사조정제도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주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고 현재 대부분의 주가 형사조정 또는 형사조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법률조항을 가지고 있다.<sup>68)</sup>

#### 나. 근거법률

미국의 형사조정제도와 관련된 입법체계는 조정제도의 여러 부분 내지 작동방식을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규정만을 법률에 포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상 조정제도의 입법체계상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sup>69)</sup>

##### 1) 포괄적 입법체계

피해자-가해자 조정에 관하여 포괄적인 입법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주들은 조정제도에 관하여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지니고 있다. 그 내용은 조정제도의 감독, 책임, 자금지원, 조정자 연수요건, 비밀유지, 권리, 비용 등 운용방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입법례를 갖춘 주로는 델라웨어, 인디애나, 캔자스,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리건, 테네시 주가 있다.<sup>70)</sup>

67) US. Dept of Justice(2000),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Survey of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in the US* (NCJ 176350) 1.; 법원행정처(2013), *외국사법제도연구(13)-각국의 회복적 사법제도*, 법원행정처, 10쪽. 주24 재인용.

68) 법원행정처, 위의 보고서, 10쪽.

69) 미국 형사조정제도 관련법 규정에 대한 이하 내용은 [김숙희(2012),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7~79쪽]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70) Del. Code Ann. tit. 11, §§ 9501-9505 (2001); Ind. Code Ann. §§ 11-12-1-2.5, 11-12-8-1 (2003); Kan. Stat. Ann. §§ 38-1633, -1635 (2000); Mont. Code Ann. §§ 2-15-2013 to -2014, 41-5-1304, 46-18-101 (2005); Neb. Rev. Stat. §§ 43-245, -274, 286 (2004); Or. Rev. Stat. §§ 36. 105, 115, 135, 951-955. 980 (2003); Tenn Code Ann. §§ 16-20-101 to -105 (2001).

## 2) 세부적 기준 입법체계

피해자-가해자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법률을 가진 입법체계를 채택한 주로는 아칸사스,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버지니아 주이다. 이들 주에서는 포괄적인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관한 입법은 없지만 몇 가지 세부적인 기준들을 포함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sup>71)</sup>

## 3) 기본적 입법체계

피해자-가해자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주로는 알라바마,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이오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위스콘신 주이다. 이 주들은 피해자-가해자 조정과 관련된 입법을 했다가보다 법원이 다른 선택사항과 함께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 중 하나로 허용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해자 조정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다만 피해자-가해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에 대한 요건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기관, 기타 법률 또는 법관에게 위임하고 있다.<sup>72)</sup>

이 외에도 법률이 아닌 위원회의 지침으로 규율하고 있는 주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메릴랜드 주는 법원, 검찰, 주정부, 변호사, 변호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체적 분쟁해결위원회(ADR Commission)가 마련한 청소년 범죄를 포함한 형사사법 분야에 관한 조정지침(The Maryland ADR Commission's Practical Action Plan)으로 규율하고 있다.<sup>73)</sup>

71) Ark. Code Ann. §§ 9-31-401 (2002) La. Child Code Ann. art. 435, 439, 441, 444 (2004); Minn. Stat. § 611A.77, 775 (2003); Ohio Rev. Code Ann. §§ 307. 62, 321.44 (2003); Ohio Rev. Code Ann § 2929.17 (2003); Okla. Stat. Ann. tit. 10, § 7302-8.1 (1998); Okla. Stat. Ann. tit. 22, § 991a (2005-2006); Tex. Code Crim. Proc. Ann. art. 26.13, 42.12, 56.02, 56.13 (2005); Va. Code An. § 19.2-11.4 (2004).

72) Ala. Code § 15-18-180 (2004); Ariz. Rev. Stat. Ann. § 8-419 (1999); Cal. Penal Code § 8052 (2000); Cal. Welf. & Inst. Code § 202 (2005); Colo. Rev. Stat. Ann. § 19-2-309.5 (2005); Iowa Code Ann. § 901B.1 (2005); Mo. Ann. Stat. § 217.777 (2004); N.C. Gen. Stat. § 7B-2506 (2003); Wash Rev. Code § 13.40.070 (2004); Wis. Stat. Ann. § 938.34 (2005).

73) 이해미(2012),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 제159호, 국회입법조사처, 29쪽.

#### 다. 운영기관 및 방식

형사조정 운영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독립된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와 검찰, 법무부 주도로 위원회 또는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설치한 지역사회 갈등해결기관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와 계약을 맺은 민간단체에서 형사조정을 실행하고 있고, 델라웨어 주는 검찰총장, 국선변호인 등이 지칭하는 자로 구성된 피해자-가해자 조정위원회에서, 미네소타 주의 경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비영리단체에서, 그리고 버지니아 주는 비장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형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sup>74)</sup>

미국의 형사조정제도는 조정제도의 형사사법절차상 활용시점에 따라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sup>75)</sup> 첫째, 가해자가 체포되고 법원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가 운영되어 기소재량 하에서 대안적 선택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sup>76)</sup> 둘째, 법원절차가 개시되고 판결을 했지만 구체적인 형의 집행 전이나 후에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셋째, 조정제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에서 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넷째, 극소수의 조정제도는 법원절차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기관은 보호관찰관, 법원, 검찰, 경찰이 총 의뢰사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법기관에 의한 회부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변호인, 지역주민, 피해자지원자 등이 회부를 하고 있다.<sup>77)</sup>

74) 위의 보고서, 30쪽.

75) 탁희성·강우예(2008), 앞의 보고서, 73쪽.

76) 기소재량의 대안적 선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미국의 조정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소년법에 대하여 주로 기소재량의 대안적 선택으로서의 조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의 보고서 73쪽.]

77) 조현지(2008), “형사상 화해·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5쪽 주145.

라. 대상범죄

1) 소년범죄에서 성인범죄로 확대

미국의 형사조정제도는 전통적으로 소년범죄에서부터 형사조정제도가 발전하여 왔으나 점점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넓혀 성인범죄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델라웨어, 인디애나, 몬타나, 테네시 주는 성인범과 소년범 모두에 관하여 형사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sup>78)</sup>

2)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확대

형사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및 그러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될 사건을 선정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각 주별로 편차가 있으나, 형사조정절차는 주로 소년사건이나 경미한 폭행, 절도, 손괴 등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현재는 강간이나 살인 등의 중죄 사건에도 적용하는 주가 많이 있다. 예컨대, 텍사스, 오하이오, 위스콘신, 테네시 주 등에서는 중죄에 대해서도 형사조정을 시행하고 있다.<sup>79)</sup>

이와 같이 형사조정의 대상범죄는 각 주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형사조정 대상 범죄를 특정하지 않고 판사 또는 각 기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조정사건의 일차적인 선정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 사법기관이 판단하여 조정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기관은 회부된 사건이 가해자의 연령, 범죄경력, 죄중 등 일정한 조정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만일 조정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송치기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미국변호사협회에서는 특히 당사자

78) 법원행정처, 앞의 보고서, 17쪽.

79) 텍사스 주의 경우 살인죄까지 형사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플로리다 주와 캔자스 주는 초범과 비폭력 범죄에 한하여 대상 범죄로 하고 몬태나 주의 경우는 폭력적 위험성이 낮은 경우로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있다. [이혜미, 앞의 보고서, 30쪽; 위의 보고서, 17쪽]

간의 적개심이 강한 경우와 가정폭력이 개입된 사건의 경우 조정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회부에 적합한 사건의 선정기준으로 재산 범죄, 경범죄,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 가해자의 유죄인정, 2~3번 이하의 전과, 가해자의 양호한 정신상태, 낮은 약물중독위험 등이 고려되고 있다.<sup>80)</sup>

#### 마. 형사조정 효과

형사조정 절차가 다양한 만큼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과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sup>81)</sup>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형사소추 이전에 사건이 ADR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면, 담당기관은 검찰에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형사소추 후 판결 선고 이전에 해결되었다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뉴욕 주의 경우 경한 범죄를 각하처분하기 위해서 소송절차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법원은 사건 관계인이나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에 의해서 또는 법원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건 관계인이나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재판 중단을 결정한다.<sup>82)</sup>

## 2. 독일

### 가. 시행배경

독일에서는 형벌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형사법상 피해자의 지위의 향상, 형벌의 축소와 형벌목적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형벌, 특히 자유형을 대신할 형사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과 동시에 피해자의 지위 향상과 피해회복의 관점에 중심을 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초기에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과 결합된 갈등조정과 원상회복

80) 김숙희, 앞의 논문, 89쪽; 법원행정처, 앞의 보고서, 74쪽 재인용.

81) 이해미, 앞의 보고서, 30~31쪽.

82) 탁희성/이원상/이동원/최창욱(2009),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9~90쪽.

의 통합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한 가해자-피해자 조정 프로그램(Täter-Opfer-Ausgleich: 이하 TOA라고 함.)이 개발되었다. 이후 1985년 소년 및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었고, 1990년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의 개정으로 소년 및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특별 형법의 한 부분으로 형사조정이 시행되게 되었다.<sup>83)</sup>

1994년 “형법/형사소송법 등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법률(범죄대책법)”에 의하여 TOA와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으로 형법 제46조a가 신설됨으로써 소년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형사조정이 성인에게도 확장되었다. 1999년에는 이러한 “형법” 규정을 형사절차에 정착시키기 위한 “가해자-피해자 조정의 형사소송법상 근거에 관한 법률(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en Verankerung des Täter-Opfer-Ausgleich)을 제정하여 형사소송법상 관련규정(제153조a, 제155조a, 155조b)이 함께 개정되었다.<sup>84)</sup> 이로써 형사절차 전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검토되도록 함과 동시에 조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었다.<sup>85)</sup>

#### 나. 근거법률<sup>86)</sup>

독일 형사조정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형법”, “소년법원법”, “형사소송법”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근거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형법”은 제46조, 제46조a, 제49조<sup>87)</sup>, 제56조, 제56조b 등에서 형사조정제

83) 김숙희, 앞의 논문, 101쪽.

84) 위의 논문, 101쪽.

85) 위의 논문, 101-102쪽.

86) 법무부(2008), 독일 형법, 형사소송법 한글번역본, 법무부 참조.

87) 제49조 【특별한 법률상의 감경사유】 ① 이 조항에 의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그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자유형은 3년 이상의 자유형
2. 유기자유형의 경우는 법률에 정한 상한의 최고 4분의 3까지 선고해야만 된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벌금일수의 상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가중된 자유형의 하한은 다음과 같이 감경된다.
  - 하한이 10년 또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 하한이 3년 또는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
  - 하한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월,
  - 기타의 경우에는 법정 하한

도를 반영하고 있다. “형법” 제46조 제2항은 양형참작사유로서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특히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 범죄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행위자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sup>88)</sup>, 동법 제46조a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손해의 원상회복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sup>89)</sup> 또한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56조 제2항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규정되어 있고<sup>90)</sup>, 형법 제56b조 제2항에는 법원이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담사항으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의 능력에 따른 회복’이 규정되어 있다.<sup>91)</sup> 또한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규정인

- ② 이 조항을 원용하는 법률에 의해 법원이 작량하여 감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법원은 법정 형의 법정 하한 이하로 감경하거나 또는 자유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88) 제46조 【양형의 원칙】 ① 형의 양정은 행위자의 책임에 기초한다. 형을 통해 행위자의 장래 사회생활에 관해 예상될 수 있는 효과는 고려되어야 한다.
- ② 형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상호 비교교량한다. 이 경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행위자의 범행동기 및 목적
  - 범행을 통하여 표출된 성향과 범행의지의무위반의 정도
  - 실행행위의 유형과 범죄의 유책한 결과
  - 행위자의 전력, 개인적·경제적 사정,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특히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 범죄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행위자의 노력
- ③ 이미 법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상황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 89) 제46조a 【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손해의 원상회복】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형은 면제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으로 그 범행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원상회복했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손해의 원상회복이 행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 또는 개인적 권리포기를 요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
- 90) 제56조 【집행유예】 ① 1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함에 있어 형의 선고 자체로 행위자에게 이미 위하의 목적을 달성하고 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장래 행위자가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경우 특히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 전력, 범죄 상황, 범행 후 태도, 생활태도 및 집행유예를 통해서 행위자에게 기대될 수 있는 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② 법원은 범죄행위 및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여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조건하에서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집행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 결정에 있어 특히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 ③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함에 있어 법집서의 방위를 위하여 형의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 ④ 집행유예는 그 형의 일부로 제한될 수 없다. 집행유예는 미결구금 또는 기타 자유박탈기간의 산입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59a조 제2항에는 법원이 가해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해자와 화해를 이루기 위한 노력 또는 그 밖에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규정되어 있다.<sup>92)</sup>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153조a와 제155조a 등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53조a는 ‘부담부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부담사항으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후 부담사항이 이행된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sup>93)</sup> 또한 동법 제155조a는 법관과 검

91) 제56조b【의무사항6】 ①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불법행위의 배상을 위한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기대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 최선을 다하여 범죄행위로 야기된 손해를 원상회복할 것
2. 범죄행위와 행위자의 인격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공익시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
3. 기타 공익을 위한 급부를 제공할 것
4. 국고에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

법원은 의무사항의 이행이 손해의 원상회복과 배치되지 않는 한,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불법행위의 배상을 위하여 적절한 급부를 스스로 제안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안의 이행이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사항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

92) 제59조a【보호관찰기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① 법원은 보호관찰기간을 정한다. 보호관찰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해야만 한다.

②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와의 화해 또는 범죄로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2. 부양의무의 이행
3. 공익시설 또는 국고에 일정 금액의 납부
4. 외래 치료 또는 외래 금단치료의 수용
5. 교통강의 수강

이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기대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은 행위자가 범한 범죄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제56조c 제3항 및 제4항, 제56조c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93) 제153조a(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때의 절차중지) ① 경죄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판개시를 관할하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잠정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형사소추에 대한 공적 이익을 배제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책임의 중대성에 반하지 않는 한 피의자에게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으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고려 대상이 된다.

1. 범죄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보상을 위한 일정 급부 제공
2. 공익시설 또는 국고에 대한 일정액 지불
3. 기타 공익을 위한 급부 제공
4. 일정한 액수의 부양의무 이행
5. 피해자와의 화해(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노력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6. 도로교통법 제2조b, 제2항 또는 제4조 제8항 제4문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세미나 참여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는 피의자에게 제2문 1호 내지 3호 및 6호의 경우 최고 6개월, 제2문 4호의 경우 최고 1년의 기간을 부여한다. 검사는 이들 준수사항과 지시사항 부과를

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에 관하여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화해가 성립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4)</sup>

#### 다. 운영기관 및 방식

독일에서 형사조정 담당기관은 조직성격의 측면에서 크게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기관과 비영리 목적의 공익단체인 임의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밖에 영리 목적의 단체나 개인이 형사조정을 담당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주로 사법보조기관으로서 법원, 보호관찰국, 사회적 사법직무기관, 소년법원, 소년청 등에 보조기관이 있고, 임의기관은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목적의 공익단체로 통상 주 정부로부터 재정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독자적으로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고, 임의기관은 주로 대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sup>95)</sup>

형사조정 담당기관은 인력투입방식과 관련한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전문화된 기관’, ‘부분적으로 전문화된 기관’, ‘통합적인 기관’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문화된 기관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형사조정 업무담당자가 다른 직업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형사조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된 기관은 형사조정 업무담당자가 다른 분야의 업무도 담당하지만 동일한 사건에서는 다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기관을 말하며, 통합적인 기관은 동일한 사건에서

---

사후에 취소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또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의자가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를 더 이상 경죄로서 소추할 수 없다. 피의자가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급부는 상환되지 않는다. 제2문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3조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② 공소가 이미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사실관계 확정이 최종적으로 심사될 수 있는 공판이 종료할 때까지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 열거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 제3문 내지 제6문을 준용한다. 제1문에 대한 판단은 결정으로 행한다. 당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문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도 제4문을 적용한다.

③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94) 제155조a(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검사와 법원은 형사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화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와 법원은 화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서 화해가 적절한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95) 법원행정처, 앞의 보고서, 441쪽.

형사조정 업무와 후견업무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동일인이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sup>96)</sup> 또한 형사조정 담당기관의 조직성격은 크게 공공기관과 비영리 목적의 임의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형사조정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더 높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임의기관의 비중이 더 높아졌고, 이후로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조직형태의 측면에서 통상 공공기관은 부분적으로 전문화된 기관에 속하고, 임의기관은 전문화된 기관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문화 정도의 차이도 임의기관의 비중이 높아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sup>97)</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 형사소송법 제155a조는 검사와 판사에게 소송의 각 단계마다 TOA 여부를 검토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주체는 검찰, 경찰, 법원 또는 당사자 등이 제안할 수 있으며, 형사실무상 대부분의 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많이 의뢰되고 있다. 여기서 검사는 사건처리절차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 법원에서 가해자가 받게 될 형량 등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형사조정에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sup>98)</sup>

#### 라. 대상범죄

독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조정의 범죄유형이나 적용의 한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대 범죄뿐만 아니라 가벼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조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미수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행위의 경중은 조정의 범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재량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sup>99)</sup> 즉 형법 제 46조a에 의하면 형사조정을 통해 형이 면제될 수 있는 범죄에 중죄는 제외되고,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6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인 범죄에만 해당되므로 주로 경범죄와 중범죄 사이의 범행에 적용되기 때

96) 2010년 통계에서는 전문화된 기관이 81.8%, 부분적으로 전문화된 기관이 18.2%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통합적인 기관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조정 담당기관은 점점 전문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의 보고서, 458-459쪽 참조.

97) 위의 보고서, 458-459쪽.

98) 이원상(2009),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5~117쪽 참조.

99) 탁희성/강우예,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주요 외국의 형사화해조정 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7쪽.

문이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법무부장관 훈령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주거침입죄, 모욕죄, 상해죄, 강요죄, 절도죄, 횡령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사기죄, 손괴죄 등이다.<sup>100)</sup>

또한 독일 판례에 의하면, 형사조정의 활용기준으로 첫째, 피해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 둘째,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사안이 분명하거나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것, 셋째,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모두 형사조정에 동의할 것, 넷째, 형사조정에 의하지 않고도 검사가 형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단순 경미사건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01)</sup>

#### 마. 형사조정 효과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범죄가 경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화해조정 및 범행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조건 하에 피의자와 관할 법원의 동의를 얻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가 이미 제기된 때에는 그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53조a).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조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독일 형법 제46조a, 제56조b, 제59조a).

### 3. 프랑스

#### 가. 시행 배경

프랑스에서는 1980년부터 범죄피해자단체에 의하여 비공식적으로 형사조정이 실시되었고, 1992년 형사조정의 정의 및 요건을 정한 법무성 지침에 의하여 형사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993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조정절차가 법제화되었다.

100) 김숙희(2012), 앞의 논문, 106쪽.

101) BGH 4 StR 435/99-Urteil v. 18. Nov 1999 (LG Schwerin); 이헤미, 앞의 보고서, 21쪽 재인용.

나. 근거 법률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형사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고 범죄행위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해결하며, 범죄행위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제기 전 결정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02)</sup>

제41-1조 ① 피해자의 손해배상이나, 범죄 관련 분쟁 해결,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장은 공소제기 결정에 앞서 직접 또는 소속 검사를 통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급의무 있는 채무를 지급하게 하는 것
2. 행위자를 보건시설·사회시설·직업시설 등에 위탁하는 것;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약물남용치료과정, 부모로서의 역할 훈련 과정, 시민의식 연수 과정, 기타 보건시설·사회시설·직업훈련시설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 있고, 자동차 운전 중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자비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3. 행위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자격 혹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것
4. 행위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
5.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절차(la médiation pénale)에 회부하는 것; 화해가 성공한 경우 검사 또는 검찰 측 대리인은 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자신도 서명하여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화해 내용에 피해자의 손해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조서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게 할 수 있다.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민법 제515-9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형사화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6.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기타 내연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거주지 혹은 주소에서 퇴거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 및 그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보건시설·사회복지시설·정신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호에 정한 조치는 가족법 상 계약에 따라 관계를 맺은

102) 법무부(2011), 프랑스 형사소송법 한글 번역본, 법무부

바 있는 전 배우자·전 동거인·전 내연관계인에게도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정한 조치의 실시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③ 본조에 정한 의무를 범죄행위자가 책임질 사유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달리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한 형사소추하거나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한다.

또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2조는 형사화해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사는 직접 또는 권한 있는 자를 통하여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성인에게 형사화해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종류의 화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4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1-2조 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직접 또는 권한 있는 자를 통하여, 벌금형에 처할 경죄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범죄 또는 수개의 위 경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고청에 벌금을 납부할 것. 이 경우 형법에 규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죄질과 범죄자의 책임 및 자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벌금은 검찰청이 문서로 정한 이율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
3. 최장 6개월 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
4. 지방법원서기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운전면허증을 맡기는 것
5. 지방법원서기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수렵면허증을 맡기는 것
6.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법 상 법인 및 단체에 배속되어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최장 60시간 이내의 무보수노동을 제공하는 것
7. 18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최장 3개월 이내로 보건단체·사회단체 또는 직업 훈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8. 최장 6개월 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개인수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9. 범죄행위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범죄와 관련된 장소 혹은 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최장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것
10. 검사가 지정한 범죄피해자와 최장 6개월 동안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것

11. 검사가 지정한 공범 혹은 중범 등과 최장 6개월 동안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것
  12. 최장 6개월 동안 여권을 맡기고 프랑스 영토를 떠나지 않는 것
  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비로 시민소양교육을 이수하는 것
  14.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기타 내연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거주지 혹은 주소에서 퇴거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주소 및 그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시설·사회복지시설·정신병원 등에 가해자를 위탁하는 것. 본호에 정한 조치는 가족법 상 계약에 따라 관계를 맺은 바 있는 전 배우자·전 동거인·전 내연관계인에게도 적용된다.
  1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비로 금지약물의 남용위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
  16.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법 상 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직업교육을 받거나 기타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것
  17. 주류를 일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금지약물을 사용한 범죄혐의자의 경우에 보건법 제3413-1조 내지 제341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
- ②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때에는, 행위자가 범죄 피해를 배상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는 6개월 내에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고, 그 취지를 즉시 피해자에게 통지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에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물건의 원상회복도 포함한다.
- ③ 검사의 형사조정안은 사법경찰관을 경유하여 범죄행위자에게 통지된다. 조정안은 검사가 서명한 결정문으로 성립되며, 형사조정의 대상이 된 혐의 사실과 제안 사항을 기재한다.
- ④ 형사조정은 지역사법센터(maison de justice et du droit)에서 할 수 있다.
- ⑤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된 자는 검사의 제안에 동의하기에 앞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는다. 동의는 조서로 작성되며, 조서의 부분은 형사조정 참가자에게 교부한다.
- ⑥ 형사조정 참가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조정안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는 청구서를 법원장에게 접수시킨다. 검사는 접수사실을 참가자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법원장은 참가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변론을 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범죄행위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법원장이 조정안이 유효임을 선언하면 조정 내용대로 집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안은 무효가 되고, 법원장의 결정은 행위자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며, 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⑦ 참가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후 결정된 사항을 완전하게 실행하지 않는 경우, 전항에 따라 조정안이 무효로 된 경우에 검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노역이나 지불 금액 등을 참작할 수 있다.
- ⑧ 형사조정절차가 시작된 때부터 조정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⑨ 형사조정안의 집행으로 공소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경죄법원에 가해자를 직접 소환하여 기소하는 사소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형사법원의 재판장 역할을 하는 판사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사소청구인의 민사상 청구에 대해서만 재판한다. 피해자의 손해 혹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판결 내용에 포함된 경우, 피해자는 조서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집행된 형사조정 결과는 전과기록부 제1편에 기재된다.
- ⑪ 본조에 정한 형사조정절차는 정치 관련 범죄, 과실치사죄, 언론 관련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범죄에 관한 1945년 2월 2일 명령 제45-174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13세 이상 소년에게도 본조가 적용된다.
- ⑫ 법원장은 형사조정안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소속 판사 혹은 관할 내 근린법원 판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 ⑬ 본조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형사조정과 형사화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형사조정은 주로 소년범에 대한 비범죄화나 다이버전을 의도하여 시작된데 반하여 형사화해는 성인범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이다. 형사화해제도는 조정과 달리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형사화해에 관한 검사의 결정은 법원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검사와 피의자가 협의하고 조정하는 형사조정제도는 형사화해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sup>103)</sup>

103) 탁희성/강우예, 앞의 보고서, 115쪽.; 법원행정처, 앞의 보고서, 502쪽.

〈표 2-3〉 형사조정 및 화해제도 비교

	형사조정	형사화해
정식명칭	médiation pénale	composition pénale
도입년도 및 규정형식	1993년 법률	1999년 법률
현재 법률규정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2조
제도의 성격	기소대체수단	
담당자	조정자	검사 내지 검사대리(délégué du procureur)
담당자 출신	전직 경찰관 등 일반시민	별도 교육 이수자
대상범죄	제한 규정 없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경죄 및 위경죄
대상범죄의 성격	친지 사이에 일어난 범죄 재발의 우려가 있는 범죄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 공공질서유지에 해가 되는 범죄	형사조정 대상범죄보다는 불법내용이 중한 범죄
대상범죄 예시	가족 간 유기 아동 은닉 이웃 간 범죄 직장 내 범죄 악의적인 전화	폭력 손괴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불법무기소지 등
제외 범죄	중손괴 및 중공무집행방해 가족 내 정도가 심한 상습폭행	없음
형벌의 종류	주로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법원의 승인 여부	필요 없음	필요
공소시효	정지	

\* 탁희성/강우예, 위의 보고서, 124쪽 표 재인용.

#### 다. 운영기관 및 방식

프랑스 형사조정제도는 주로 검찰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검사 중심의 제도로서,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특정 기관이나 요원들에 의해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sup>104)</sup> 구체적인 형사조정 실행은 피해자보호 단체나 ‘Maison de Justice’ 또는 ‘Antennes de Justice’가 조정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Maison de Justice’

104) 탁희성/강우예, 앞의 보고서, 112쪽; 이해미, 앞의 보고서, 24쪽.

의 경우 포괄적인 분쟁조절을 하는 지역단체로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위 조직은 검찰공무원 1인, 당해 지역의 조정 사건을 다룰 수 있는 1~2인의 사회사업가, 경미한 위경죄에 대한 조정관 1인, 피해자 보호 단체의 대표자로서 규칙적인 상담 시간을 운영하는 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05)</sup>

형사조정 회부권자는 성인범죄자의 경우 검사이며, 18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검사, 소년법원 판사 등이 조정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sup>106)</sup>

운영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에 입건되어 가벼운 위경죄<sup>107)</sup>로 처리되지 못한 죄는 검사가 처리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검사는 신속처리절차로 갈지, 아니면 형사조정 및 형사화해로 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는 기소대체수단으로서 공소 제기 이전에 41-1조의 6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형사조정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명할 수 있는데, 이 형사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검사나 조정자는 공식서류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사인을 받는다. 이로 인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지게 되면, 피해자는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공식서류에 검사의 명령에 따른 손해비용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이 피의자의 행위 때문에 수행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검사는 사정에 따라서 기소를 하거나 형사화해절차에 회부함으로써 다시 한 번 다이버전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sup>108)</sup>

105) 이혜미, 위의 보고서, 24쪽.

106) 위의 보고서, 24쪽.

107) 프랑스는 범죄를 그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중죄(crime), 경죄(délit), 위경죄(contravention)로 삼분하여 각 죄마다 관할법원 등 형사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를 말하고, 경죄는 10년 미만의 자유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 공익봉사노동, 일정한도의 권리박탈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위경죄는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과 일정한 권리의 박탈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각 죄는 관할법원을 달리하는데, 중죄는 법관과 배심원으로 이루어진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는 중죄법원에서, 경죄는 경죄법원에서, 위경죄는 경찰법원에서 각 관할한다. 여기서 중죄법원은 항소법원의 중죄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고, 경죄법원과 경찰법원은 별도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경죄사건을 재판할 때와 소법원이 위경죄 사건을 재판할 때 각각 불리는 이름이다. [법원행정처, 앞의 보고서, 500쪽]

108) 위의 보고서, 506~507쪽.

## 라. 대상범죄

프랑스는 법률상 명문으로 형사조정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형사조정은 원칙적으로 중범죄도 그 적용의 대상이 된다.<sup>109)</sup> 그러나 형사조정과 관련된 핵심조문인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사항(또는 부담사항)을 담고 있는 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예컨대 피의자에 대한 경고(rappel a la loi), 피의자의 재사회화 지원시설에의 입소,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그리고 조정프로그램에의 참가(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의 형사조정제도는 공판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선택사항 중의 하나로 이해되며, 따라서 형사조정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이해된다.<sup>110)</sup>

실제 프랑스에서 형사조정 및 화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는 주로 위경죄 1급부터 중죄 이전까지이며, 프랑스 법무부는 형사조정 및 화해제도는 가급적 위경죄 5급부터 경죄까지를 다루어 주기를 권고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sup>111)</sup>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실질적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형사조정에 회부하기에 적절한 범죄는 주로 “가족 유기·아동은닉·이웃 간 경범죄·노동 관련 경범죄·전화를 통한 괴롭힘” 등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사인 간에 해결 가능한 범죄가 대부분이다.<sup>112)</sup>

109) 이해미, 앞의 보고서, 24쪽.

110) 탁희성/강우예, 앞의 보고서, 134쪽.

111) 프랑스 법무부 지침 “Fiche Techniques Relatives aux Contentieux Traités dans le Cadre d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Circulaire du 16 mars 2004 de la Ministère de la Justice. 참조; 위의 보고서, 134쪽 재인용.

112) 위의 보고서, 134-135쪽.

〈표 2-4〉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조정

조 치	내 용	대상범죄
1. 경고	법적 의무 환기	단순절도, 단순절도 관련 장물취득, 불법무기소지, 대마사용, 학교 등 무단침입
2. 수강명령	기관 위탁	대마 등 장기 사용,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노상절도
3. 정상화	현재 상태 수정요구	식품위생법 관련 경미한 범죄행위, 도시/환경 관련 경미한 범죄, 보건위생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4. 피해보상	피해보상	손괴행위, 단순절도, 사기, 횡령, 절도 관련 장물범죄
5. 형사조정	형사조정 회부	가족 유기, 아동 은닉, 이웃간 경범죄, 노동 관련 경범죄, 전화를 통한 괴롭힘
6.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가족 및 전 가족구성원 간 단순폭력 범죄

\* 탁희성/강우예, 앞의 보고서, 134~135쪽 표를 참조하여 작성

또한 형사조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검사가 각각의 부담사항들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원상회복을 추구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혼란이 종식되거나 행위자의 사회복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와 행위자(가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지침(피해자에 대한 손해원상회복, 범죄로 인한 사회혼란의 종식, 행위자의 사회복귀)은 개별사안이 형사조정에 유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sup>113)</sup>

#### 마. 형사조정 효과

형사조정의 효과는 형사조정회부권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예컨대, 검사가 요청한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양형절차에서 형의 면제나 형의 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sup>114)</sup> 법원의 양형절차상 효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수사절차의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원상회복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도 가해자의 원상회복이 고려되고 있는데, 형사조정이 성사된 경우에는 법원

113) 이진국/오영근(2006),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5쪽.

114) 법원행정처, 앞의 보고서, 502쪽.

의 양형절차에서 형의 면제나 형의 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형법 제 132-58조, 제132-59조와 제132-60조에 규정되어 있다.<sup>115)</sup> 우선 형법 제132-58조(형의 면제·선고유예)에 따르면 “법원은 경죄 또는 제132-63조<sup>116)</sup> 내지 제 132-65조<sup>117)</sup>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위경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선언하고, 필요한 경우 위협하거나 유해한 물건의 몰수를 선고한 후 아래 조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다른 모든 형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132-59조(형의 면제) 규정에 의해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복귀 절차가 이루어졌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손해가 회복되었으며 범죄로 인한 사회혼란이 종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 132-60조(단순선고유예) 규정에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절차가 진행 중이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손해가 회복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사회혼란이 종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4. 소결

미국의 형사조정제도는 민간차원에서의 개별적인 형사조정 프로그램의 자발적 시행 및 개별적인 사법기관 등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별로 입법이 이루어져 왔는데 형사조정에 관하여 입법을 한 주들도 주로 형사조정의 운영주체 및 절차와 형사조정에서의 대화와 자료 등의 비밀성 및 관련자들의 면책 등 조정자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주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을 뿐 기소된 이후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 및 각 단계별 조정의 시행과 본안 재판의 속행문제, 조정성립의 형사법적 효과와 조정자체의 구속력 등 형사조정의 법적 효력 문제에 관해서

115) 이진국/오영근, 앞의 보고서, 117쪽.

116) 제132-63조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① 법원이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32-6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7) 제132-65조 【유예기간 후의 결정】 ① 법원은 유예기간 후 보호관찰기간 중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품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형을 선고하거나 또는 제132-63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다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벌적용판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동의를 받아 선고공판일 30일 이전에 형사소송법 제712-6조의 규정에 부합한 대심변론 후에 형의 면제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는 유예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는 입법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다.<sup>118)</sup> 규정된 법률 또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하나의 일관된 절차로서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여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와 조화롭게 연결된 하나의 완결된 체제로 형성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아직 연방차원에서의 형사조정에 관한 통일된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식적·물질적 피해회복, 사회통합의 촉진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형사조정제도가 미국의 많은 주에서 꾸준히 도입되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민사법상의 손해배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기능적 개념으로서 형사조정을 포함하는 원상회복 개념을 설정하고 형사조정 성립시 형사사법기관이 형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이와 같이 자율성이 강조되는 당사자 간의 형사조정과 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법률효과 부여라는 2개의 단계로 분리되어 있지만, 형사조정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형사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각 형사사법기관에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 형사절차에서 형사조정의 결과를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할 것인지, 형사조정의 내용과 방식은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형사사법기관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조정제도와 형사화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소송법 제41-1조에서 검사가 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화해제도는 형사소송법 제41-2조에서 형사조정에 비해 중대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안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형사화해가 집행되는 경우 공소권이 소멸된다. 한편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법원의 양형에서는 형의 면제나 형의 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조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법률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으며, 형사조정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내용이

118) 조현지, 앞의 논문, 147쪽.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공식문서로 작성하여 지급명령 절차에 따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3장

---

#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

---

안성훈 · 윤현석



## 제3장

#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

## 제1절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방법

본 조사는 형사사법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형사합의의 실태와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합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WEB, fax, E-mail 조사 병행)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고려한 단순 무작위 추출(simple random sampling)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형사합의에 관한 조사항목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의 실태, 둘째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셋째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넷째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첫째 형사합의 실태에 관련된 문항에는 ‘형사합의를 권유한 경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한 이유<sup>119)</sup>’,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한 이유<sup>120)</sup>’, ‘사건유형별 형사합의 권유 정도<sup>121)</sup>’, ‘사건유형별 형사합의 성사 정도<sup>122)</sup>’, ‘합의성사의 결정적

119)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죄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형사소송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등 5개 문항.

120)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등 3개 문항.

121) 18개 사건유형별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정도는 10건 중 몇 건 정도인지 질문.

요인은 무엇인가'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에 관련된 문항에는 '형사합의가 피해자<sup>123</sup>)와 가해자<sup>124</sup>)에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형사합의의 성공요소<sup>125</sup>)', '형사합의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족정도', '형사합의 후 합의사항 이행 정도', '사건유형별 형사합의를 통한 사건해결의 적절성<sup>126</sup>)'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문항에는 효과에 관련된 8개 문항<sup>127</sup>)과 문제점에 관련된 3개 문항<sup>128</sup>)이 포함되었다.

넷째 형사합의 제도화 방향에 관한 문항에는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확대<sup>129</sup>)',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관할 기관<sup>130</sup>)', '형사합의 제도화의 지향점<sup>131</sup>)' 등이 포함되었다.

- 
- 122) 18개 사건유형별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가 성사되는 빈도가 10건 중 몇 건 정도인지 질문.
- 123)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신속한 사건해결', '금전 등의 수단을 통한 실질적 피해배상', '신속한 배상을 통한 빠른 피해회복',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가해자와의 관계회복' 등 6개 문항.
- 124)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신속한 사건해결',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획득',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등 4개 문항.
- 125)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 '피해자의 피해감정 해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 '재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 등 5개 문항
- 126) 18개 사건유형별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통한 사건해결의 적절성을 질문
- 127)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가해자들의 준법정신을 향상시킨다',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가해자의 재범억제·예방에 기여한다',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가해자의 보복범죄 방지에 기여한다',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한다',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한다', '형사합의는 중국적 사건해결에 기여한다',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수사·재판 등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기여한다',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형사사법기관에 지워진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 128) '형사합의를 하려고 당사자 간 강요·협박·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형사절차 담당자 간에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면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129)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확대하여 형사합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경찰수사단계, 재판단계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형사조정제도가 적용되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등 3개 문항
- 130)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시행시 관할기관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시행시 민간기구 관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2개 문항
- 131)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금전배상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단순한 피해회복을 넘어서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 4개 문항

## 2. 형사합의의 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인원	비율(%)
전체		247	100.0
직업	판사	46	18.6
	변호사	50	20.2
	검사	46	18.6
	경찰	105	42.5
성별	남성	204	82.6
	여성	42	17.0
	무응답	1	0.4
연령	30대 이하	105	42.5
	40대	109	44.1
	50대	32	13.0
	무응답	1	0.4
근무기간	3년 이하	41	16.6
	4년 ~ 5년	18	7.3
	6년 ~ 10년	51	20.6
	11년 ~ 15년	56	22.6
	15년 초과	78	31.6
	무응답	3	1.2

조사대상자 247명 중 판사는 46명, 변호사 50명, 검사 46명, 경찰 10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4명으로 82.6%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42명으로 17.0%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이하 포함)가 105명으로 42.5%, 40대가 109명으로 44.1%, 50대(이상 포함)가 32명으로 13.0%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5년 이상이 31.6%였으며, 5년 이하가 24%(16.6%+7.3%), 6년에서 15년 이하가 43.2%(20.6%+22.6%)로 나타났다.

형사합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귀하께서는 형사합의를 권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표 3-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2> 형사합의 권유 경험

구분		인원	응답(%)			계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247	75.7 (187명)	23.9 (59명)	0.4 (1명)	100.0
직업	판사	46	71.7	26.1	2.2	100.0
	변호사	50	94.0	6.0	0.0	100.0
	검사	46	100.0	0.0	0.0	100.0
	경찰	105	58.1	41.9	0.0	100.0
연령	30대 이하	105	64.8	35.2	0.0	100.0
	40대	109	82.6	16.5	0.9	100.0
	50대	32	87.5	12.5	0.0	100.0

전체 응답자 중 75.7%가 사건 당사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9%는 권유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이 형사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직업별로 형사합의 권유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사는 응답자 전원이 형사합의를 권유한 경험이 있으며, 다음으로 변호사는 94.0%, 판사는 71.7%, 경찰은 58.1%가 형사합의를 권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정도가 낮은 것은 사건접수 후 수사과정에서 수사종결권이 없는 등 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건처리에 있어서 권한이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이하 포함)는 64.8%가 권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40대와 50대(이상 포함)는 각각 82.6%와 87.5%가 권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에 관한 항목의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항목	인원	응답(%)					평균 <sup>a)</sup> (4점)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187	1.1	2.1	55.6	38.0	3.2	3.35
		3.2		93.6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죄해서	187	5.9	27.3	56.7	5.9	4.3	2.65
		33.2		62.6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187	1.6	23.0	59.9	11.2	4.3	2.84
		24.6		71.1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187	4.3	19.8	59.4	12.3	4.3	2.83
		24.1		71.7			
형사소송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187	13.4	27.3	47.1	8.0	4.3	2.52
		40.6		55.1			

a) 전혀 아니다 1점, 아닌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한 결과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의 93.6%가 그런 편이다(55.6%) 또는 매우 그렇다(38.0%)라고 응답하였으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죄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62.6%가 그런 편이다(56.7%) 또는 매우 그렇다(38.0%)라고 응답하였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의 71.1%가 그런 편이다(59.8%) 또는 매우 그렇다(11.2%)라고 응답하였으며,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71.7%가 그런 편이다(59.4%) 또는 매우 그렇다(12.3%)라고 응답하였다. ‘형사소송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에는 55.1%가 그런 편이다(47.1%) 또는 매우 그렇다(8.0%)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응답 내용을 긍정적 평가 비율과 4점 만점 기준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다섯 개 항목을 비교하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

한 것은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사죄하고 반성했기 때문이거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상으로 형사합의를 통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고,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결과이지 형사합의의 주된 목적이거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주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평균값을 이용하여 응답자 직업과 연령별로 비교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 직업 · 연령별 비교

항목	평균 (4점)	직업				연령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이하	40대	50대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3.35	3.43	3.40	3.53	3.13	3.34	3.38	3.22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죄해서	2.65	2.41	2.74	2.61	2.72	2.58	2.71	2.74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2.84	2.89	2.83	2.86	2.82	2.77	2.89	2.85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2.83	2.78	2.77	2.93	2.84	2.88	2.81	2.81
형사소송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2.52	1.74	2.55	2.77	2.66	2.71	2.39	2.52

직업별로 나타난 차이를 보면, 먼저 판사의 경우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로 형사소송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업무부담의 경감 항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판사나 검사에 비해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죄해서 형사합의를 권유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사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을 형사합의 권유의 이유로 많이 꼽는 가운데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보다는 업

무부담의 경감을 이유로 꼽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는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업무부담의 경감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나타난 차이를 보면, 저연령층은 고연령층에 비해서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을 형사합의 권유의 이유로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고연령층은 저연령층에 비해서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및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응답자의 경우 업무부담 경감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많이 선택하였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형사합의의 이유로 업무부담 경감보다 덜 선택한 점이 다소 특이하다.

한편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를 보면 <표 3-5>와 같다.

<표 3-5>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항목	인원	응답(%)					평균 <sup>a)</sup> (4점)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187	7.5	20.9	46.0	21.9	3.7	2.86
		28.3		67.9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187	0.5	4.3	59.9	34.2	1.1	3.29
		4.8		94.1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187	4.8	19.8	59.4	12.3	3.7	2.82
		24.6		71.7			

a) 전혀 아니다 1점, 아닌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여한 결과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로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라는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의 67.9%가 그런 편이다(46.0%) 또는 매우 그렇다(21.9%)라고 응답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94.1%가 그런 편이다(59.9%) 또는 매우 그렇다(34.2%)라고 응답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의 71.7%가 그런 편이다(59.4%) 또는 매우 그렇다(12.3%)라고 응답하였다.

98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이상의 응답 내용을 긍정적 평가 비율과 4점 만점 기준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세 개 항목을 비교하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권유한다는 비율은 세 항목 중 가장 낮았지만, ‘매우 그렇다’라고 강한 긍정을 표시한 비율(21.9%)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권유하는 경우(12.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소수지만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평균값을 이용하여 응답자 직업과 연령별로 비교하면 <표 3-6>과 같다.

<표 3-6>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 직업 · 연령별 비교

항목	평균 (4점)	직업				연령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이하	40대	50대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2.86	3.03	3.57	2.58	2.40	2.70	2.93	2.96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3.29	3.38	3.13	3.56	3.18	3.33	3.28	3.21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2.82	2.66	2.81	3.00	2.78	2.88	2.80	2.82

먼저 직업별 차이를 보면, 판사의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3.38)이었으며, 다음으로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3.03), ‘피해자와의 관계회복(2.66)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변호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3.5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3.13), 피해자와의 관계회복(2.81)을 선택하여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정도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사와 경찰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두 집단 모두 판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선택하였다. 검사와 경찰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검사와 경찰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별 차이를 보면, 세 집단 모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두 번째로 선택한 항목이 40대와 50대에서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었지만 30대는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선택하였다. 30대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서 가해자 입장보다는 피해자 입장을 더 고려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앞서 <표 3-4> 에서 30대 응답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죄했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2.58)가 40대(2.71)와 50대(2.74)에 비해서 낮았던 점도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각종 범죄사건에 대한 형사합의 권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0건 중 몇 건 정도 형사합의를 권유하는지 질문하였다<sup>132)</sup>. 응답 결과는 <표 3-7>과 같다.

132)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으로 부적절하다는 검찰측 의견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표 3-7〉 형사합의 권유 빈도

사건 유형	10건 중 권유 빈도 평균 (건수)	직업			연령		
		판사	변호사	경찰	30대 이하	40대	50대
전체(평균)	4.5	5.4	6.9	2.2	3.6	4.7	5.2
살인	2.5	1.4	5.3	0.8	2.2	2.1	3.9
강도	2.6	2.0	5.4	0.8	2.2	2.3	4.0
강간·강제추행	3.8	3.6	7.4	1.2	3.4	3.7	4.8
절도	4.1	4.2	6.9	1.8	3.3	4.3	5.0
상해	5.0	6.2	7.5	2.5	4.3	5.3	5.7
폭행	5.8	6.7	8.1	3.6	5.5	5.8	6.4
체포·감금	3.7	4.5	6.1	1.5	2.6	3.8	5.0
협박	4.5	6.3	6.7	1.9	3.4	4.9	5.1
모욕	4.9	6.2	7.0	2.5	3.8	5.4	5.2
명예훼손	4.9	6.0	7.1	2.6	3.9	5.2	5.5
약취·유인	2.9	3.1	5.7	0.8	2.3	3.0	3.6
공갈	3.8	5.0	6.2	1.4	2.8	4.2	4.4
손괴	4.9	5.8	6.9	2.9	4.0	5.2	5.3
사기	5.7	7.2	8.1	3.1	4.8	6.2	6.0
횡령	5.2	6.8	7.3	2.7	4.0	5.7	5.7
배임	4.9	6.6	6.9	2.5	3.7	5.4	5.5
임금체불	5.9	8.2	7.7	3.3	4.6	6.6	6.3
교통범죄	5.5	7.3	7.8	2.9	4.6	5.8	6.1

먼저 18개 사건 전체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정도는 10건의 사건 중 평균 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10건 중 5.9건, 폭행 5.8건, 사기 5.7건, 교통범죄 5.5건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살인 2.5건, 강도 2.6건, 약취유인 2.9건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금전관련 사건이나 쌍방폭력이나 쌍방과실 사건 등에 대한 형사합의 권유 정도가 높으며, 일방적인 가해사건이나 강력사건에 대한 형사합의 권유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비교하면, 먼저 직업별로 비교하면 변호사가 10건 중 평균 6.9건으로 가장 높고, 판사는 5.4건, 경찰은 2.2건으로 낮게 나타났다 변호사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변호사의 경우 가해자의 변

호인으로서 앞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합의 권유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풀이된다. 반면에 경찰의 경우 합의권유 정도가 낮은 이유는 수사 및 사건처리의 최종적인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형사합의에 적극성을 띠기 힘들기 때문에 풀이된다.

직업별 차이는 사건유형별 합의권유 정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즉 변호사의 경우에는 최저 5.3건(살인)에서 최고 8.1건(사기, 폭행)인 반면에 판사는 최저(살인) 1.4건(임금체불)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건 유형에 상관없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반면에 판사의 경우에는 사건 유형에 따라 합의를 권유하는 정도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에는 최저 0.8건(살인)에서 최고 3.6건(폭행)으로 유형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합의권유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령별 차이를 보면, 50대가 5.2건으로 합의권유에 가장 적극적이고, 40대가 4.7건, 30대는 3.6건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고연령층일수록 합의권유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유형별 차이를 보면, 50대의 경우 최저 3.6건(약취유인)에서 최고 6.4건(폭행)이고, 40대는 최저 2.1건(살인)에서 최고 6.4건(폭행)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최저 2.2건(살인)에서 최고 5.5건(폭행)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50대 보다는 합의권유에 덜 적극적이지만, 사건유형에 따라서 합의를 권유하는데 있어서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담당한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빈도를 10건 중 몇 건이나 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형사합의 성사 빈도

사건 유형	10건 중 성사 빈도 평균 (건수)	직업				연령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이하	40대	50대
전체(평균)	3.0	3.3	4.0	3.2	2.0	2.7	3.1	3.4
살인	1.1	1.6	2.2	0.6	0.6	0.8	1.2	1.6
강도	1.4	1.4	2.5	1.2	0.7	1.2	1.4	1.7
강간·강제추행	2.8	3.4	4.4	2.9	1.4	2.7	2.8	3.2
절도	3.1	3.1	4.1	3.6	1.9	2.9	3.3	2.7
상해	3.8	4.4	4.8	4.3	2.4	3.3	4.0	4.2
폭행	4.4	4.6	5.3	5.0	3.3	4.4	4.3	4.9
체포·감금	2.3	3.0	3.4	2.1	1.3	2.0	2.3	2.8
협박	3.0	3.4	4.2	3.3	1.7	2.7	2.9	3.9
모욕	3.1	3.1	4.0	3.5	2.2	3.1	2.9	3.7
명예훼손	3.1	2.8	3.9	3.3	2.3	3.0	2.9	3.9
약취·유인	1.6	1.5	2.9	1.4	1.0	1.4	1.7	1.9
공갈	2.4	2.8	3.5	2.3	1.6	2.1	2.5	3.1
손괴	3.7	3.6	4.6	4.1	2.7	3.4	3.7	4.4
사기	3.7	4.2	4.3	3.8	2.9	3.3	4.1	3.5
횡령	3.2	4.0	4.1	3.3	2.0	2.5	3.6	3.4
배임	3.0	3.8	4.0	2.8	1.9	2.3	3.4	3.3
임금체불	3.7	4.6	4.5	4.5	2.1	3.5	3.9	3.8
교통범죄	4.4	4.9	5.6	4.7	3.1	4.4	4.4	4.8

먼저 18개 사건 전체에 대하여 형사합의가 성사되는 빈도는 10건 중 평균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건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와 폭행사건이 10건 중 4.4건으로 가장 높고, 상해는 3.8건, 손괴, 사기, 임금체불 등은 3.7건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살인(1.1건), 강도(1.4건), 약취유인(1.6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서 권유빈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금전관련 사건이나 쌍방폭력이나 쌍방과실 사건 등의 합의성사 비율이 높고, 강력사건에 대한 합의성사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비교하면, 먼저 직업별로 비교하면 변호사가 10건 중 평균 4.0건으로 가장 높고, 판사와 검사는 각각 3.3건과 3.2건으로 비슷하며, 경찰은 2.0건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서 권유빈도와 성사빈도를 비교하면,

경찰의 경우 10건 중 2.2건 정도 권유하지만 성사빈도는 2.0건(90.9%)으로 판사의 5.4건 권유와 3.3건 성사(61.1%), 변호사의 6.9건 권유와 4.0건 성사(58.1%)에 비해서 권유빈도와 성사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작다. 즉 경찰의 경우 합의권유에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합의의 성공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합의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택하여 합의를 권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령별 차이를 보면, 50대의 합의성사 빈도가 3.4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가 3.1건, 30대가 2.7건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자의 합의성사 빈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앞서 권유 빈도를 고려할 경우에 50대는 5.2건 권유에 3.4건 성사(65.4%)이고, 40대는 4.7건 권유에 3.1건 성사(66.0%), 30대는 3.6건 권유에 2.7건 성사(75.0%)로 나타났다. 따라서 30대의 경우 권유빈도는 작지만 오히려 합의를 성사시킬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합의가 성사된 경우에 합의의 조건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묻은 결과는 <표 3-9>와 같다.

<표 3-9> 형사합의 성사시 합의 조건

구분	인원	응답(%)					계	
		금전 배상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금전배상 + 가해자 사과	가해자, 변호인, 재판부의 합의조정 의지	무응답 · 모름		
전체	187	76.5	17.6	3.2	0.5	2.2	100.0	
직업	판사	33	69.7	15.2	12.1	0.0	3.0	100.0
	변호사	47	78.7	17.0	0.0	2.1	2.1	100.0
	검사	46	80.4	13.0	4.3	0.0	2.2	100.0
	경찰	61	75.4	23.0	0.0	0.0	1.6	100.0
연령	30대	68	73.5	20.6	2.9	0.0	2.9	100.0
	40대	90	77.8	15.6	4.4	1.1	1.1	100.0
	50대	28	78.6	17.9	0.0	0.0	3.6	100.0

형사합의 성사시 합의 조건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6.5%가 금전배상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17.6%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선택하였다. 압도적인 다수가 형사합의의 조건으로 금전배상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직업별로 비교하면

검사가 8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변호사가 78.7%, 경찰이 75.4%, 판사가 69.7%로 가장 낮았다. 경찰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선택한 비율이 23.0%로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판사의 경우에는 금전배상과 가해자의 사과를 모두 선택한 비율이 12.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금전배상을 합의성사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선택하였다. 즉 30대는 73.5%가 금전배상을 선택하였으며, 40대는 77.8%, 50대는 78.6%가 선택하였다.

### 3.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통해서 어떤 도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6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10>과 같다.

<표 3-10>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항목	인원	응답(%)					평균(a) (4점)
		전혀 도움 되지 못함	별로 도움되지 못함	대체로 도움 되는 편	매우 크게 도움됨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신속한 사건해결	247	2.0	9.7	64.4	17.8	6.1	3.04
		11.7		82.2			
금전 등의 수단을 통한 실질적 피해배상	247	0.4	5.7	52.6	35.6	5.7	3.31
		6.1		88.3			
신속한 배상을 통한 빠른 피해회복	247	1.2	6.9	54.7	31.6	5.7	3.24
		8.1		86.2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	247	3.6	28.7	48.6	13.0	6.1	2.75
		32.4		61.5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247	2.4	21.5	55.1	15.0	6.1	2.88
		23.9		70.0			
가해자와의 관계회복	247	6.1	30.0	49.8	8.1	6.1	2.64
		36.0		57.9			

a) 전혀 도움되지 못함 1점, 별로 도움되지 못함 2점, 대체로 도움되는 편 3점, 매우 크게 도움됨 4점을 부여한 결과

먼저 ‘신속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의 82.2%가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64.4%) 또는 매우 크게 도움이 됨(17.8%)을 선택하였으며, ‘금전 등의 수단을 통한 실질적 피해배상’에 대해서 88.3%가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52.6%) 또는 매우 크게 도움이 됨(35.6%)을 선택하였고, ‘신속한 배상을 통한 빠른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86.2%가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54.7%) 또는 매우 크게 도움이 됨(31.6%)을 선택하였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에 대해서는 61.5%(48.6%+13.0%),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대해서는 70.0%(55.1%+15.0%),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대해서는 57.9%(49.8%+8.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응답내용을 긍정적 평가 비율과 4점 만점의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비교하면, 금전적 피해배상과 신속한 피해회복 및 신속한 사건해결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이나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받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와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신속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는 높게 나타났다. 비록 형사합의를 권유할 때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신속한 사건해결을 통해서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응답자 특성별로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를 비교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 직업 · 연령 · 권유 경험별 비교

항목	평균 (4점)	직업				연령			형사합의 권유경험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40대	50대	있음	없음
전체(평균)	2.98	3.04	2.97	3.18	2.87	2.91	3.03	3.00	3.03	2.78
신속한 사건해결	3.04	2.94	3.14	3.27	2.93	3.05	3.04	3.06	3.07	2.94
금전 등의 수단을 통한 실질적 피해배상	3.31	3.42	3.26	3.51	3.21	3.23	3.39	3.28	3.37	3.06
신속한 배상을 통한 빠른 피해회복	3.24	3.36	3.20	3.49	3.10	3.19	3.29	3.16	3.28	3.04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	2.75	2.85	2.82	2.98	2.60	2.66	2.85	2.72	2.84	2.40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2.88	2.91	2.90	2.93	2.84	2.76	2.96	3.00	2.90	2.81
가해자와의 관계회복	2.64	2.73	2.50	2.91	2.56	2.59	2.66	2.78	2.69	2.45

직업별로는 피해자에 대한 도움에 대해서 검사의 경우 가장 긍정적 인식의 정도가 강하고, 경찰의 경우 긍정적 인식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개 항목 모두에 대해서 검사의 경우 평균점수가 다른 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의 경우 6개 항목 중 ‘가해자와의 관계회복’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다른 집단보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거나 어떤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30대 연령층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다소 낮고, 40대 50대 연령층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연령층의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와 ‘가해자와의 관계회복’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나타났다.

형사합의를 권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없는 응답자를 비교하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점수가 특히 낮은 항목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항목과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으로 나타났다. 권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한편 형사합의가 가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항목	인원	응답(%)					평균a) (4점)
		전혀 도움 되지 못함	별로 도움 되지 못함	대체로 도움 되는 편	매우 크게 도움됨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신속한 사건해결	247	1.6	7.3	59.9	25.1	6.1	3.16
		8.9		85.0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247	1.2	3.2	49.4	40.5	5.7	3.37
		4.5		89.9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획득	247	2.4	20.6	55.9	15.0	6.1	2.89
		23.1		70.9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247	5.7	27.9	47.4	12.6	6.5	2.71
		33.6		59.9			

a) 전혀 도움되지 못함 1점, 별로 도움되지 못함 2점, 대체로 도움되는 편 3점, 매우 크게 도움됨 4점을 부여한 결과

먼저 ‘신속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0%가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59.9%)’ 또는 ‘매우 크게 도움 됨(25.1%)’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에 대해서는 89.9%(49.4%+40.5%)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획득’ 항목에 대해서는 70.9%(55.9%+15.0%)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항목에 대해서는 59.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 평가비율과 4점 만점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비교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이라는 요소가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매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0.5%로 다른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표 3-6>의 피해자에 대한 도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경우에도 ‘신속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하여 형사합의가 결과적으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업무부담의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

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가해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형사합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회복에는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각 항목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표 3-13>과 같다.

<표 3-13>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 직업 · 연령 · 권유경험별 비교

항목	평균 (4점)	직업				연령			형사합의 권유경험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40대	50대	있음	없음
전체(평균)	3.03	3.04	3.13	3.22	2.91	3.01	3.07	3.02	3.08	2.87
신속한 사건해결	3.16	3.09	3.30	3.36	3.02	3.15	3.18	3.13	3.17	3.11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3.37	3.48	3.68	3.49	3.13	3.33	3.43	3.31	3.43	3.13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획득	2.89	2.85	2.92	3.09	2.80	2.84	2.95	2.88	2.94	2.68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2.71	2.72	2.60	2.93	2.68	2.70	2.73	2.75	2.76	2.55

먼저 직업별로 비교하면, 검사의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경찰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네 집단 모두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속한 사건해결’,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의 획득’,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또한 앞서 피해자에 대한 도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검사의 경우 가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의 정도가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긍정적 평가 점수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변호사가 형사합의 권유에 적극적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사건해결’과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있어서는 세 집단 간에 별 차이

가 없지만,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과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획득’ 항목에서는 40대 응답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합의 권유 경험 유무별로 비교하면, ‘신속한 사건해결’에 긍정적이라는 응답 비율은 두 집단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다른 세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세 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서 형사합의를 권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결과는 <표 3-14>와 같다.

<표 3-14> 형사합의 성공 요인의 중요도

항목	인원	응답(%)					평균a) (4점)
		전혀 중요 안함	별로 중요 안함	중요 한 편	매우 중요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247	0.0	4.0	42.1	47.8	6.1	3.47
		4.0		89.9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	247	1.2	8.5	53.8	30.4	6.1	3.21
		9.7		84.2			
피해자의 피해감정 해소	247	1.2	11.7	58.3	22.3	6.5	3.09
		13.0		80.6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	247	2.4	31.6	50.2	9.3	6.5	2.71
		34.0		59.5			
재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	247	6.5	25.1	49.4	12.6	6.5	2.73
		31.6		61.9			

a) 전혀 중요 안함 1점, 별로 중요 안함 2점, 중요한 편 3점, 매우 중요 4점을 부여한 결과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는 5개 항목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의 89.9%가 ‘중요한 편’이나 ‘매우 중요함’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에 대해서 84.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감정 해소’에 대해서는 80.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반면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과 ‘재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에 대해서는 각각 59.5%와 61.9%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여 다른 세 문항보다 중요도에서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평균점수와 긍정적 평가비율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이 형사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매우 중요함’을 선택하여 금전적 배상이 형사합의의 성사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이나 재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형사합의 성공요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가해자 입장에서 양형에서의 유리함이 형사합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변호사의 경우 형사합의 권유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양 당사자로부터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형사합의 성공요인에 대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하면 <표 3-15>와 같다.

<표 3-15> 형사합의 성공 요인의 중요도 : 직업 · 연령 · 권유경험별 비교

항목	평균 (4점)	직업				연령			형사합의 권유경험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40대	50대	있음	없음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3.47	3.53	3.72	3.47	3.32	3.47	3.45	3.50	3.48	3.43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	3.21	3.31	3.32	3.22	3.11	3.16	3.28	3.13	3.24	3.06
피해자의 피해감정 해소	3.09	3.19	3.14	3.11	3.02	3.03	3.14	3.06	3.09	3.06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	2.71	2.66	2.60	2.75	2.76	2.68	2.73	2.72	2.69	2.79
재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	2.73	2.59	3.00	2.66	2.67	2.66	2.74	2.94	2.75	2.64

직업별로 차이를 보면, 변호사의 경우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과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을 성공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판사나 변호사에 비해서 검사나 경찰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 항목에 대해서 고연령층일수록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항목에서는 뚜렷한 차이나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형사합의 성공요인으로 제시된 5개 항목의 중요도의 차이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항목의 중요도를 질문하는 방식 이외에 5개 항목에서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2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는 <표 3-16>과 같다.

<표 3-16> 형사합의 성공요소 : 1순위 및 1순위+2순위 기준

구분	인원	응답(%)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	피해자의 피해 감정 해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	재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	무응답	
전체	247	68.4 (82.2)	19.0 (65.5)	2.0 (16.6)	2.0 (6.9)	1.6 (14.6)	6.9 (7.3)	
직업	판사	46	52.2 (65.2)	17.4 (58.7)	0.0 (8.7)	0.0 (0.0)	2.2 (10.9)	28.3 (28.3)
	변호사	50	74.0 (96.0)	20.0 (70.0)	2.0 (12.0)	0.0 (2.0)	4.0 (20.0)	0.0 (0.0)
	검사	46	78.3 (91.3)	10.9 (69.6)	2.2 (8.7)	4.3 (6.5)	2.2 (19.6)	2.2 (2.2)
	경찰	105	68.6 (79.0)	22.9 (64.8)	2.9 (25.7)	2.9 (12.4)	0.0 (11.4)	2.9 (3.8)
연령	30대	105	68.6 (80.0)	20.0 (65.7)	1.9 (20.0)	1.9 (8.6)	1.0 (12.4)	6.7 (6.7)
	40대	109	67.0 (80.7)	16.5 (63.3)	1.8 (14.7)	2.8 (5.5)	2.8 (16.5)	9.2 (10.1)
	50대	32	71.9 (93.8)	25.0 (71.9)	3.1 (12.5)	0.0 (6.3)	0.0 (15.6)	0.0 (0.0)
합의 권유 경험	있음	187	72.7 (88.8)	18.7 (70.6)	2.1 (14.4)	2.1 (5.3)	2.1 (16.0)	2.1 (2.7)
	없음	59	55.9 (62.7)	20.3 (50.8)	1.7 (23.7)	1.7 (11.9)	0.0 (10.2)	20.3 (20.3)

a) 괄호안의 수치는 ‘1순위 + 2순위’로 중복응답 결과

먼저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항목으로 응답자의 68.4%가 ‘금전적 배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19.0%가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이라고 응답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표 3-14>와 <표 3-15>에서 두 항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과 평균점수를 통해 제시된 중요도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형사합의 성공여부에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비율을 보면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항목의 선택 비율이 65.6%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금전적 배상이 가장 결정적이며,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는 부차적인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가지 항목 각각의 1순위 선택 비율과 ‘1순위 선택비율+2순위 선택비율’ 사이의 증가폭을 보면, ‘가해자 피해자 관계회복’이 가장 미미하다. 결과적으로 형사합의 성공요인으로 그다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사합의가 두 사람 사이의 실질적인 화해와 관계회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에서 네 집단 모두 ‘금전배상’과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선택한 비율이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세 항목의 선택비율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찰의 경우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피해감정 해소’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진행’, ‘관계회복’ 순으로 선택하였지만, 나머지 세 집단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피해감정 해소’, ‘관계회복’ 순으로 선택하였다.

연령별로 비교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는 ‘금전적 배상’과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라는 점에서는 세 집단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나머지 항목의 중요도 순위는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즉 30대 연령층은 ‘피해감정 해소’,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진행’, ‘관계회복’ 순으로 선택하였으나, 나머지 두 연령집단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진행’, ‘피해감정 해소’, ‘관계회복’ 순으로 선택하였다.

합의 권유 경험 유무별로 비교하면, 두 집단 모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금전적 배상’과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선택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나머지 세 요인의 중요도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가해자

에게 유리한 재판진행’, ‘피해감정 해소’, ‘관계회복’ 순으로 선택하였으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피해감정 해소’, ‘관계회복’,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진행’ 순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형사합의가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만족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는 <표 3-17>과 같다.

<표 3-17> 형사합의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족수준 비교

구분	인원	응답(%)						평균a) (5점)	
		가해자가 훨씬 더 만족	가해자가 좀 더 만족	양쪽 모두 비슷	피해자가 좀 더 만족	피해자가 훨씬 더 만족	무응답		
		가해자 만족			피해자 만족				
전체	247	10.1	21.9	40.9	19.0	2.4	5.7	2.81	
		32.0			21.5				
직업	판사	46	13.0	17.4	21.7	19.6	0.0	28.3	2.67
			30.4			19.6			
	변호사	50	10.0	26.0	50.0	14.0	0.0	0.0	2.68
			36.0			14.0			
	검사	46	2.2	10.9	54.3	23.9	6.5	2.2	3.22
			13.0			30.4			
	경찰	105	12.4	26.7	39.0	19.0	2.9	0.0	2.73
			39.0			21.9			
연령	30대	105	6.7	21.0	43.8	21.9	0.0	6.7	2.87
			27.6			21.9			
	40대	109	13.8	24.8	35.8	16.5	2.8	6.4	2.68
			38.5			19.3			
	50대	32	9.4	12.5	50.0	18.8	9.4	0.0	3.06
			21.9			28.1			
합의 권유 경험	있음	187	11.2	20.3	44.9	20.3	2.7	0.5	2.83
			31.6			23.0			
	없음	59	6.8	27.1	28.8	15.3	1.7	20.3	2.72
			33.9			16.9			

a) 가해자가 훨씬 더 만족 1점, 가해자가 좀 더 만족 2점, 양쪽 모두 비슷 3점, 피해자가 좀 더 만족 4점, 피해자가 훨씬 더 만족 5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9%는 가해자 피해자 양쪽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해자 쪽이 더 만족한다는 응답이 32.0%, 피해자 쪽이 더 만족한다는 응답이 21.5%로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는 2.8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수 응답자가 양쪽이 비슷하게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더 만족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직업별로 비교하면 네 집단의 평가는 확연히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평균점수를 보면, 검사가 3.22로 가장 높고 나머지 세 집단이 비슷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응답 항목별 선택비율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달라진다.

우선 변호사와 검사의 경우 양쪽 모두 비슷하다는 응답이 각각 50.0%와 54.3%로 절반 이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변호사의 경우 가해자가 더 만족하다는 응답이 36.0%로 피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응답(14.0%)보다 더 많았고 검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응답이 30.4%로 가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응답(13.0%)보다 더 많았다. 한편 판사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쪽 모두 만족(21.7%), 피해자가 더 만족(19.6%)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경찰은 양쪽 모두 만족과 가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39.0%로 같았으며 피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응답이 21.9%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검사들은 양쪽 모두 만족하거나 피해자가 더 만족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나머지 세 집단은 양쪽 모두 만족하거나 가해자가 만족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경우 가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응답(38.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양쪽 모두 만족(35.8%), 피해자가 더 만족(19.3%)로 나타난 반면에 50대는 양쪽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30대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 비슷하게 만족한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으면서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30대와 40대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더 만족한다고 평가하고 50대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30대와 40대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평가한 반면에 50대는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형사합의 권유경험별로는 보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양쪽 모두 비슷하게 만족이 4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해자 만족(31.6%), 피해자 만족(23.0%) 순으로 나타났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가해자 만족(33.9%), 양쪽 모두 만족(28.8%), 피해자 만족(16.9%)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집단이 응답 항목 별 비율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점수 등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 집단 모두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형사합의가 성사된 후에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는 <표 3-18>과 같다.

<표 3-18> 형사합의 후 합의사항 이행 정도

구분	인원	응답(%)				모름	평균 <sup>a)</sup>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전체	247	1.2	13.0	66.8	8.1	10.9	2.92	
		14.2		74.9				
직업	판사	46	0.0	8.7	56.5	4.3	30.4	2.94
			8.7		60.9			
	변호사	50	0.0	12.0	72.0	12.0	4.0	3.00
			12.0		84.0			
	검사	46	2.2	13.0	71.7	8.7	4.3	2.91
			15.2		80.4			
	경찰	105	1.9	15.2	66.7	7.6	8.6	2.88
			17.1		74.3			
연령	30대	105	1.0	13.3	67.6	4.8	13.3	2.88
			14.3		72.4			
	40대	109	0.9	15.6	64.2	7.3	11.9	2.89
			16.5		71.6			
	50대	32	3.1	3.1	71.9	21.9	0.0	3.13
			6.3		93.8			
합의 권유 경험	있음	187	0.5	13.4	70.6	10.2	5.3	2.95
			13.9		80.7			
	없음	59	3.4	11.9	55.9	1.7	27.1	2.77
			15.3		57.6			

a)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여한 결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4.9%가 잘 이행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는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직업별로 비교하면, 변호사와 검사는 각각 84.0%와 80.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찰은 74.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판사의 경우에는 60.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4%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합의사항 이행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에도 부정적 평가비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낮다는 점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산출된 평균점수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50대 응답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 40대 연령집단은 각각 72.4%와 71.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50대는 93.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형사합의 권유경험 유무별로는 보면, 경험이 있는 응답자 80.7%가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 56.7%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약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해서 평소 잘 모르기 때문에 합의권유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18개 사건 유형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3-19>와 같다.

〈표 3-19〉 형사합의를 통한 사건해결의 적절성

사건 유형	인원	응답(%)					평균a) (4점)
		전혀 적절 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	적절한 편	매우 적절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살인	247	41.3	43.3	11.3	1.6	2.4	2.23
		84.6		13.0			
강도	247	32.0	46.2	17.8	1.6	2.4	2.86
		78.1		19.4			
강간·강제추행	247	21.5	38.1	32.0	6.1	2.4	2.29
		59.5		38.1			
절도	247	8.5	15.4	57.1	17.0	2.0	3.06
		23.9		74.1			
상해	247	6.9	15.0	61.1	15.0	2.0	2.03
		21.9		76.1			
폭행	247	2.4	6.5	65.2	23.9	2.0	3.15
		8.9		89.1			
체포·감금	247	18.2	38.1	36.0	5.3	2.4	3.02
		56.3		41.3			
협박	247	11.3	20.2	51.8	14.6	2.0	3.41
		31.6		66.4			
모욕	247	7.7	8.5	52.2	30.0	1.6	
		16.2		82.2			
명예훼손	247	6.9	8.9	51.8	30.8	1.6	
		15.8		82.6			
약취·유인	247	25.9	45.7	21.5	3.6	3.2	
		71.7		25.1			
공갈	247	14.6	28.7	46.2	8.5	2.0	
		43.3		54.7			
손괴	247	6.1	6.9	51.4	33.6	2.0	
		13.0		85.0			
사기	247	6.9	9.3	51.0	31.2	1.6	
		16.2		82.2			
횡령	247	8.1	10.5	50.6	29.1	1.6	
		18.6		79.8			
배임	247	8.5	13.4	48.2	28.3	1.6	
		21.9		76.5			
임금체불	247	5.3	4.0	34.4	54.7	1.6	
		9.3		89.1			
교통범죄	247	4.5	7.7	53.8	32.0	2.0	
		12.1		85.8			

a) 전혀 적절하지 않음 1점, 적절하지 않은 편 2점, 적절한 편 3점, 매우 적절에 4점을 부여한 결과

18개 사건 유형 중에서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폭행(89.1%)과 임금체불(89.1%)이었으며, 다음으로 교통범죄(85.8%), 손괴(85.0%) 순으로 나타났다. 18개 사건 유형 중에서 13개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반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은 것은 살인(84.6%), 강도(78.1%), 약취·유인(71.7%), 강간·강제추행(59.5%), 체포·감금(56.3) 등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합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하면 <표 3-20>과 같다. 먼저 직업별로 보면 변호사의 경우 18개 사건 유형의 형사합의 적절성 평가점수평균값은 2.99로 네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사와 검사와 2.99와 2.91로 거의 비슷하며, 경찰은 2.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서 변호사의 경우 형사합의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찰의 경우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0〉 형사합의를 통한 사건해결의 적절성 : 직업 · 연령 · 권유경험별 비교

사건 유형	평균 (4점)	직업				연령			합의권유 경험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40대	50대	있음	없음
전체(평균)	2.73	2.92	2.99	2.91	2.45	2.63	2.79	2.86	2.77	2.60
살인	1.73	1.90	2.18	1.57	1.51	1.56	1.82	2.00	1.78	1.55
강도	1.89	2.22	2.32	1.74	1.62	1.75	2.01	1.97	1.93	1.74
강간·강제추행	2.23	2.49	2.78	2.41	1.79	2.02	2.33	2.68	2.34	1.88
절도	2.84	2.93	3.12	3.09	2.57	2.88	2.83	2.84	2.88	2.74
상해	2.86	2.98	3.08	3.20	2.56	2.77	2.93	2.94	2.93	2.64
폭행	3.13	3.29	3.24	3.28	2.94	3.13	3.12	3.13	3.16	3.02
체포·감금	2.29	2.59	2.68	2.41	1.93	2.19	2.37	2.39	2.34	2.12
협박	2.71	2.98	3.04	3.00	2.32	2.62	2.78	2.77	2.79	2.47
모욕	3.06	3.26	3.22	3.41	2.75	3.00	3.10	3.09	3.09	2.97
명예훼손	3.08	3.26	3.24	3.33	2.83	3.03	3.09	3.22	3.10	3.02
약취·유인	2.03	2.22	2.33	2.00	1.83	1.87	2.22	1.97	2.03	2.04
공갈	2.50	2.74	2.82	2.57	2.21	2.36	2.55	2.77	2.51	2.47
손괴	3.15	3.19	3.30	3.33	2.98	3.11	3.16	3.23	3.15	3.14
사기	3.08	3.26	3.22	3.37	2.82	2.98	3.16	3.16	3.13	2.93
횡령	3.02	3.21	3.26	3.28	2.72	2.89	3.10	3.22	3.08	2.86
배임	2.98	3.12	3.22	3.26	2.69	2.84	3.06	3.22	3.03	2.83
임금체불	3.41	3.62	3.60	3.63	3.13	3.32	3.43	3.59	3.43	3.33
교통범죄	3.16	3.21	3.24	3.41	2.98	3.08	3.19	3.35	3.20	3.03

직업별 특성을 18개 유형의 평균값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의 경우 평균점수가 최저 2.18에서 최고 3.60으로 나타났고, 검사는 최저 1.57에서 최고 3.63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점수에서는 검사가 변호사 보다 약간 낮았지만, 사건유형별로 보면 더 높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검사의 경우에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검사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강제추행,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에 대한 형사합의 적절성 정도를 변호사 보다 훨씬 낮게 평가했지만, 교통범죄, 사기, 모욕 등의 적

절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다 높게 평가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합의경험 유무별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으로 형사합의를 통한 사건해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형사합의가 형사사법과 사회 일반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8개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표 3-21>과 같다.

<표 3-21> 형사합의의 효과

항목	인원	응답(%)					평균a) (4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가해자들의 준법정신을 향상시킨다	247	18.6	50.2	27.5	2.0	1.6	2.13
		76.1		17.4			
가해자의 재범억제·예방에 기여한다	247	14.2	48.6	33.6	2.0	1.6	2.24
		62.8		35.6			
가해자의 보복범죄 방지에 기여한다	247	12.1	26.3	52.6	6.9	2.0	2.55
		38.5		59.5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한다	247	10.9	41.3	40.9	5.3	1.6	2.41
		52.2		46.2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한다	247	2.8	9.3	59.5	27.1	1.2	3.12
		12.1		86.6			
종국적 사건해결에 기여한다	247	5.7	23.1	53.8	15.8	1.6	2.81
		28.7		69.6			
수사·재판 등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기여한다	247	3.6	13.8	61.1	20.2	1.2	2.99
		17.4		81.4			
형사사법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247	4.0	20.6	59.1	15.0	1.2	2.86
		24.7		74.1			

a)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는 편 2점, 동의하는 편 3점, 매우 동의에 4점을 부여한 결과

형사합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련된 8개 항목 중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86.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81.4%),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 완화’(74.1%), ‘사건해결에 기여’(69.6%), ‘보복범죄 방지’(59.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해자의 준법정신 향상’, ‘가해자의 재범예방’, ‘가해자의 재사회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형사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회복과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 보복범죄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가해자의 변화(준법의식, 재범예방, 재사회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평균값을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하면 <표 3-22>와 같다.

<표 3-22> 형사합의의 효과 : 직업 · 연령 · 권유경험별 비교

항목	평균 (4점)	직업				연령			형사합의의 권유경험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40대	50대	있음	없음
전체(평균)	2.64	2.57	2.75	2.94	2.49	2.59	2.71	2.62	2.71	2.42
가해자들의 준법정신을 향상시킨다	2.13	1.95	2.31	2.24	2.08	2.05	2.20	2.22	2.21	1.88
가해자의 재범억제·예방에 기여한다	2.24	2.09	2.41	2.41	2.14	2.13	2.34	2.28	2.32	1.98
가해자의 보복범죄 방지에 기여한다	2.55	2.62	2.71	2.83	2.33	2.45	2.67	2.50	2.64	2.29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한다	2.41	2.42	2.39	2.70	2.30	2.37	2.51	2.28	2.46	2.24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한다	3.12	3.28	3.14	3.43	2.91	3.05	3.19	3.16	3.21	2.84
중국적 사건해결에 기여한다	2.81	2.88	2.92	3.30	2.51	2.76	2.88	2.78	2.91	2.49
수사·재판 등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기여한다	2.99	2.79	3.08	3.35	2.88	3.06	2.98	2.88	3.01	2.93
형사사법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2.86	2.56	3.02	3.22	2.75	2.88	2.87	2.84	2.91	2.69

직업별로 살펴보면, 검사와 변호사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형사합의의 효과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은 네 집단 중 가장 덜 긍정적이다.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호사 집단은 ‘가해자의 준법정신’, ‘가해자의 재사회화’ 및 ‘재범예방’에 대한 평가에서 검사를 비롯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형사합의 활용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사건처리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형사합의의 효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가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사합의 권유를 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형사합의 효과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다.

한편 형사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 3-23>과 같다.

<표 3-23> 형사합의의 문제점

항목	인원	응답(%)					평균 <sup>a)</sup> (4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형사합의를 하려고 당사자 간 강요·협박·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47	4.0	53.8	39.3	2.0	0.8	2.40
형사합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형사절차 담당자간에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247	15.8	52.2	28.3	2.4	1.2	2.18
형사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면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47	2.4	59.9	32.8	3.6	1.2	2.38

a)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동의하지 않는 편 2점, 동의하는 편 3점, 매우 동의에 4점을 부여한 결과

형사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긍정적 평가 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즉 ‘강요·협박·폭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57.9%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와 형사사법담당자 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68.0% 그리고 ‘합의사항 미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62.3%가 동의하지 않았다. 대체로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문항에 따라서 응답자의 30%~41%가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 항목 중 형사합의를 하려고 회유나 협박 강요 등이 발생할 가능성(41.3%)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합의가 제도화 될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평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3-24>와 같다.

<표 3-24> 형사합의의 문제점 : 직업 · 연령 · 권유경험별 비교

항목	평균 (4점)	직업				연령			형사합의 권유경험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40대	50대	있음	없음
전체(평균)	2.32	2.37	2.22	2.04	2.46	2.35	2.32	2.22	2.24	2.55
당사자 간 강요·협박·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40	2.66	2.30	2.13	2.45	2.43	2.39	2.28	2.32	2.63
당사자와 형사절차 담당자간에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2.18	2.00	2.12	1.89	2.40	2.23	2.16	2.09	2.10	2.41
사건이 종결되면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38	2.44	2.24	2.11	2.54	2.38	2.41	2.28	2.31	2.62

형사합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판사와 경찰이 변호사나 검사에 비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검사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경

찰의 경우에는 다른 세 집단과 달리 ‘강요·협박·폭력의 발생’ 가능성보다 ‘합의사항 불이행’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형사합의 권유 경험자보다는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문제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권유 미경험자의 경우 형사합의 효과에 대한 낮은 인식과 더불어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한 더 큰 우려가 형사합의 권유에 소극적인 자세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 5.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현재 각 지방검찰청(지청포함)의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표 3-25>와 같다.

<표 3-25>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한 의견

항목	인원	응답(%)					평균a) (4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확대하여 형사합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47	5.3	21.5	65.2	6.5	1.6	2.74
현행 검찰수사단계 조정제도를 경찰수사단계, 재판단계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247	6.5	26.3	55.1	10.5	1.6	2.71
현행 형사조정제도가 적용되는 대상범죄가 확대되어야 한다	247	4.9	29.1	55.1	9.3	1.6	2.70

a)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한 결과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2/3 이상은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즉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71.7%가 찬성하였으며, 현재 검찰수사단계에서 기소여부 결정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경찰수사단계나 법원재판단

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5.6%가 찬성하였다. 또한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주로 적용되는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와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임금체불 교통범죄 등 사적 분쟁 이외의 사건으로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4.4%가 찬성하였다.

형사조정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하면 <표 3-26>과 같다.

<표 3-26>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한 의견 : 직업 · 연령 · 권유경험별 비교

항목	평균 (4점)	직업				연령			형사합의 권유경험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40대	50대	있음	없음
전체(평균)	2.72	2.47	2.78	2.89	2.71	2.65	2.77	2.76	2.76	2.57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확대하여 형사합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74	2.53	2.90	3.04	2.62	2.70	2.75	2.84	2.82	2.49
현행 검찰수사단계 조정제도를 경찰수사단계, 재판단계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2.71	2.47	2.71	2.76	2.78	2.66	2.79	2.59	2.74	2.59
현행 형사조정제도가 적용되는 대상범죄가 확대되어야 한다	2.70	2.40	2.73	2.87	2.73	2.60	2.77	2.84	2.72	2.63

직업별로 살펴보면, 검사의 경우 형사조정제도의 확대 방안 세 가지에 대해서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가장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호사, 경찰 순으로 나타났으며, 판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서 찬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에 지금까지 형사합의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데, 공식적인 제도화를 통한 확대에는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찰수사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찬성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식적인 제도(규정)에 근거하여 경찰 스스로 일정한 권한을 갖고 형사합의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희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판사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사건 해결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덜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30대에 비해서 40대 50대가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단계별 확대에 대해서는 의외로 찬성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형사합의 권유 경험 유무별로는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될 경우에 형사조정담당기관을 어느 기관의 관할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3-27>과 같다.

<표 3-27>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시행시 관할 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

구분		인원	응답(%)				무응답
			형사 절차마다 해당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설치	검찰에 설치	법원에 설치	제3의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설치	
전체		247	41.7	20.6	17.8	16.6	3.2
직업	판사	46	30.4	15.2	26.1	13.0	15.2
	변호사	50	40.0	24.0	22.0	12.0	2.0
	검사	46	34.8	52.2	4.3	8.7	0.0
	경찰	105	50.5	7.6	18.1	23.8	0.0
연령	30대	105	41.0	16.2	21.0	21.0	1.0
	40대	109	42.2	21.1	16.5	13.8	6.4
	50대	32	43.8	34.4	9.4	12.5	0.0
형사합의권 유경험	있음	187	42.2	24.6	16.6	13.9	2.7
	없음	59	40.7	8.5	22.0	25.4	3.4

전체 응답자의 41.7%가 형사절차마다 해당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검찰에 설치(20.6%), 법원에 설치(17.8%),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17.8%)에 대한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판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마다 해당기관마다 설치(30.4%)를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는 법원에 설치(26.1%)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변호사 역시 해당기관마다 설치(40.0%)를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다음으로 검찰에 설치와 법원에 설치가 각

각 24.0%와 22.0%로 비슷하게 나왔다. 검사의 경우는 다른 세 집단과 달리 검찰에 설치 의견(52.2%)이 과반수를 넘은 가운데 다음으로 형사절차마다 설치(34.8%) 방안을 선호하였다. 경찰의 경우는 형사절차마다 설치 의견(50.5%)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세 집단과 달리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23.8%)를 선호하였다.

연령별로는 세 집단 모두 형사절차마다 설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차선택으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검찰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저연령층일수록 법원이나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합의 권유 경험 유무별로는 비교하면, 경험자든 미경험자든 형사절차마다 설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지만, 차선택으로는 경험자는 검찰설치를 선호하고 미경험자는 법원설치나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확대된 형사조정제도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가 관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표 3-28>과 같다.

128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표 3-28〉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시행시 민간기구 관할에 대한 의견

구분	인원	응답(%)					평균a)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 한다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전체	247	22.3	42.9	28.7	4.5	1.6	2.16	
		65.2		33.2				
직업	판사	46	30.4	43.5	19.6	0.0	6.5	1.88
			73.9		19.6			
	변호사	50	26.0	54.0	18.0	0.0	2.0	1.92
			80.0		18.0			
	검사	46	26.1	50.0	19.6	4.3	0.0	2.02
			76.1		23.9			
	경찰	105	15.2	34.3	41.9	8.6	0.0	2.44
			49.5		50.5			
연령	30대	105	19.0	46.7	31.4	2.9	0.0	2.18
			65.7		34.3			
	40대	109	22.0	38.5	29.4	6.4	3.7	2.21
			60.6		35.8			
	50대	32	34.4	46.9	15.6	3.1	0.0	1.88
			81.3		18.8			
형사합의 권유경험	있음	187	23.0	44.9	26.7	3.7	1.6	2.11
			67.9		30.5			
	없음	59	20.3	37.3	35.6	6.8	0.0	2.29
			57.6		42.4			

a)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점, 동의하는 편이다 3점, 매우 동의한다 4점을 부여한 결과

민간기구 관할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만 찬성하고, 나머지 약 2/3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경찰의 경우에는 민간기구 관할에 대해서 찬성(50.5%)과 반대(49.5%)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세 집단의 경우에는 73.9%~80.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조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50대 응답자의 81.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30대(65.7%)나 40대(60.6%)에 비해서 민간기구 관할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형사합의 권유 경험유무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대체로 경험자(67.9%)가 미경험자(57.6%)보다 민간

기구 관할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형사합의가 제도화될 경우에 지향하여야 할 방향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29>와 같다.

<표 3-29> 형사합의 제도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

구분	인원	응답(%)					평균a)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 한다	무응답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금전배상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247	0.8	9.7	72.5	15.8	1.2	3.05
		10.5		88.3			
단순한 피해회복을 넘어서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47	2.8	16.2	61.5	18.2	1.2	2.96
		19.0		79.8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47	0.8	7.3	61.1	29.1	1.6	3.21
		8.1		90.3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여야 한다	247	1.2	8.9	55.5	32.8	1.6	3.22
		10.1		88.3			

a)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점, 동의하는 편이다 3점, 매우 동의한다 4점을 부여한 결과

형사합의를 제도화할 경우에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된 ‘금전배상’, ‘관계회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등 네 개 항목에 모두에 대하여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네 개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큰 차이는 없지만, ‘관계회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합의가 당사자의 관계회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합의 성공요인으로서의 영향력도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도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응답결과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제도화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은 것은 응답자들이 현행 형사합의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형사합의의 성공요인에 있어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보다는 금전배상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받거나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죄할 기회를 획득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반성과 사죄 더 나아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하면 <표 3-30>과 같다.

<표 3-30> 형사합의 제도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 : 직업 · 연령 · 권유경험별 비교

항목	평균 (4점)	직업				연령			형사합의 권유경험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30대	40대	50대	있음	없음
금전배상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3.05	3.07	3.08	3.09	3.00	3.03	3.08	2.97	3.04	3.05
단순한 피해회복을 넘어서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96	2.77	2.92	3.02	3.04	2.96	2.97	2.94	2.93	3.07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21	3.26	3.20	2.98	3.29	3.12	3.27	3.25	3.15	3.40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22	3.12	3.18	3.15	3.30	3.15	3.25	3.31	3.18	3.33

직업별로 비교하면, 판사와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고, 검사와 경찰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결국 네 집단 모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행 형사합의에서 ‘금전적 배상’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연령과 형사합의 권유 경험을 보면, 40대 50대 연령층 그리고 형사합의 경험이 없

는 응답자에게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응답자들은 금전배상 위주의 현행 형사합의에서 피해자의 안정과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합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심층면접 결과

### 1. 조사방법

현행법에서 형사사건 당사자 간의 개인적 합의에 대해 형사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형사사법절차에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배상합의를 통해 피해자를 납득시키면 형법 제51조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써 기소유예를 할 수 있으며, 법관도 역시 형을 감면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sup>133)</sup>

형사사법절차의 초동단계인 경찰의 경우는 형사합의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의사와 합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확인할 뿐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중용하면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형사합의의 법적 효과나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손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보장이나 법규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는 범행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지만 맡겨두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큰 부담을 초래

133) 형법 제51조는 법관의 양형단계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의 태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고려되고 있다. 즉,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진보하고 사죄함으로써 피해자를 납득시켰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도 또한 ‘자발적인 급부를 통한 범행결과의 상쇄’를 근거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형법 제53조), 더 나아가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형법 제59조 이하)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형법 제62조 이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은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에 관한 일선 경찰공무원의 의견이나 느낌, 태도와 감정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심층면접 방법은 자유응답 방식으로 실시하여 평소의 생각을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풀어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면접기간은 2014년 8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으로, 소속기관, 지역 및 부서가 다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의 실태, 둘째, 경찰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셋째,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의 효과 및 문제점, 넷째, 경찰단계 또는 형사절차에서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번호	응답자	소속기관	면접일	비고
1	김○○	전북지방경찰청	2014.08.20	
2	이○○	전주덕진경찰서	2014.09.07	
3	백○○	성남중원경찰서	2014.09.21	
4	박○○	서울강남경찰서	2014.10.07	
5	나○○	경기지방경찰청	2014.10.12	
6	김○○	인천지방경찰청	2014.10.06	
7	박○○	서울서초경찰서	2014.10.11	
8	양○○	부산지방경찰청	2014.10.13	
9	백○○	충북보은경찰서	2014.10.18	
10	하○○	울산지방경찰청	2014.10.20	

이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형사합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나아가서는 경찰단계를 포함하는 형사절차단계에서 공식적인 형사합의제도 법·제도적 근거의 정립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 실태

경찰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진술조서 양식에 따르면 친고죄 여부에 상관없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합의여부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진술조서에서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가해자 처벌의사를 위한 행위이지만 고소장 접수 후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처벌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권과 처벌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이며, 이후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형사합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의 요건이 되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단계에서 합의여부 및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 가. 형사합의의 권유

형사합의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제범죄의 경우 피고소인 및 고소인(진정인) 조서작성 말미에 항상 합의 여부를 확인하며, 고소인들 같은 경우 피고소인의 처벌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다만 수사관의 직접적인 합의 권유는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합의 중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합의를 중용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향후 사건처리 및 진행 절차를 설명하면서 합의가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당사자 등이 사건진행에 대해 문의할 경우 합의를 했을 때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간접적으로 형사합의를 권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면접자 : 형사합의를 권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합의권유의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피면접자1 :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산상의 손해회복을 원하였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의 경우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하겠지만 고소인들은 재산상 손해만 회복된다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서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고소인은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고소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피면접자3 : 합의권유는 사안에 대해 제 개인적인 판단 후 합의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작기계 계약금 편취 사기사건의 대질조사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지만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고소인 역시 최우선적인 목적이 피의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과정 중 대금지급과 합의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며 당사자들이 대금지급으로 합의하기를 원하여 합의 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면접자5 : 피의자가 피해자(처)를 가위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사례입니다. 남편이 원만한 사건해결 방안을 문의해서 일단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여 피의자에게 합의 방안을 설명하였는데, 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사합의의 효과는 법적인 절차규정이나 규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표 3-2> 형사합의 권유 경험에서 경찰(58.1%)가 합의를 권유해본 경험이 있는데 수사관의 개인능력 여하에 맡겨져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형사합의의 여부는 상당한 법효과를 가져오는데 예컨대 형사합의의 성립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양형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의 손해회복에 큰 도움(93.6%가 긍정)이 된다는 <표 3-4>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의 결과를 보면 형사합의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권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는 민사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인들은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감과 형사입건이 되었을 시 간편하게 피해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사실상 피고소인의 형사처벌 유무보다는 본인의 피해회복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경우 형사합의는 실질적인 금전배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이나 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특히 사기사건의 많은 경우 형사입건 후(형사조정 성립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가해자가 피해금을 변제하면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검찰측에서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한다.

면접자 : 형사합의를 피해자에게 권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면접자2 :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을 원합니다. 실제 수사가 이루어져 가해자를 구속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분통을 터뜨립니다. 또한 사실상 민사사안에 불과한 경우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일단 고소를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담당수사관이 사실상 하는 업무와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감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곤 합니다. 실제 합의가 되는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 횡령 등의 경우에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면접자4 : 예를 들면, 향후10주의 치료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비등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어 2중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금전적 배상이 피해회복과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도

마찬가지인데 수천만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회복을 받을 방법이 많지 않으므로 형사합의를 권유합니다.

## 2)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권유

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나 양형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합의 여부에 의한 처벌여부, 양형상의 고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합의하는 것이 가해자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면서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경미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우선 형사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그 과정을 지켜본 뒤에 사건의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동의를 하면 피해자의 손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권유하고 있으며, <표 3-6>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직업·연령별 비교의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3.18)’을 보였는데 형사합의시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피해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면접자 : 형사합의를 가해자에게 권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면접자7 : 가해자에게는 주로 향후 형사절차에서 처벌수위나 혐의유무에 대해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합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은 형사입건 되었을 시 수사대상자(피의자)가 되었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추후 처벌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속한 문제해결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형사합의를 통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 주는 방안으로 형사합의를 권유합니다.

피면접자9 : 가해자가 고액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향후 형사절차에서 유리하도록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는 간단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는 액수를 일부 감면받는 등의 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를 권유합니다.

피면접자10 : 형사합의를 가해자에게 권유하는 주된 이유는 경미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는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형사사건화되지 않아도 될 사건을 사건화하여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 나.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범죄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범죄는 조사관의 1차 판단에 의해 선택된다. 폭행, 모욕, 명예훼손, 상해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물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은 재산죄의 사건이나 경미한 범죄에서 형사합의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 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면 유선상으로 내지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합의의사를 확인한다. 조사관은 직접적으로 민사상 개입을 할 수 없으므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오해나 악감정 없이 당사자 간에 대화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3-7> 형사합의 권유 빈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의 경우에는 최저 0.8건(살인)에서 최고 3.6건(폭행)으로 유형에 상관없이 합의권유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바는 형사합의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형사합의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면접자 : 주로 어떤 범죄사건에서 형사합의를 권유 하였는지요?

면접자5 : 형사합의를 가장 많이 권하게 되는 범죄는 단순 폭행죄나 또는 교통사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므로 가해자로서는 합의의 의사가 강하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향후 피해구제 절차가 번거롭게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수수하는 것이 이롭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성립된 경우 형사합의 금액은 단순 폭행의 경우에 진단 2주 정도가 나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100만원 전후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실제 2주 진단의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인데, 이 정도의 피해

에 대해 100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면접자7 : 저의 경우 지능범죄수사팀과 사이버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의 경우 형사합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외에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등의 경우에도 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자8 : 공무원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합의를 권하지 않고 권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범죄는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상해죄, 손괴죄, 사기, 횡령, 배임, 교통사고 등은 피해회복 차원에서 합의를 권유합니다.

#### 다. 범죄유형별 형사합의 성립정도

대부분의 형사합의는 보통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구속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합의를 원한다.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해 등의 경우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수반하므로 피해자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원하며 피의자측은 재판이나 양형에 유리함을 위해 합의를 원한다. 다른 범죄의 경우 원활한 사회생활의 유지 및 기존 생활에 조속한 복귀를 위해 형사합의를 권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감정이나 합의조건이 심하게 대립하여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하지 않고 있다. 합의 성립 정도는 양측의 합의조건 차이의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원활하게 합의가 성립하나 ① 금전적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경우 ② 감정적 대립이 심각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범죄유형에 따른 형사합의의 성립·불성립의 정도보다 가해자의 성향, 경제적 능력, 피해자의 성향 등이 형사합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3-8> 형사합의 성사 빈도의 결과에서 경찰의 경우 2.0건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다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권유빈도와 성사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경우 합의권유에는 다소 소극적이지만 합의 성공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합의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택하여 합의를 권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면접자 : 주로 어떤 범죄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잘 성립되는지요?(만약 형사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잘 성립되었는지, 불성립되었으면 어떤 이유에서 불성립되었는지를 설명해주세요.)

피면접자4 : 우선 형사합의가 잘 성립된 경우는 주로 사기사건에서 합의가 잘 이뤄집니다. 상당수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된 목적은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이지 피의자의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기사건의 경우 민사문제와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피해대금 변제 및 합의가 성립되면 원만히 사건이 종결되어 피의자의 이해에도 부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사합의가 불성립된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형사합의가 잘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죄들은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만 이뤄지면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형식적 판단으로 종결되어 업무를 경감하는데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특성상 당사자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특히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권유를 할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어 형사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종종 화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피면접자6 : 형사합의가 잘 성립된 경우는 임금체불이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한 사건이 합의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만 회복이 되면 바로 합의가 된다. 이런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 등은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성립된 경우는 채권채무 관계는 명확하나 구체적 액수 다툼이 있는 경우 공방이 길어진다. 불성립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계약서나 문서화된 서류가 없어 구체적 계약 액수가 다른 경우 다툼이 길어지며 합의가 어려운 것 같다. 이와 같은 경우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인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만약 합의가 성립되면 소송의 효율성이나 피해회복, 업무의 경감 등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3.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 가. 형사합의 성립 조건

형사합의가 성사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피해자는 금전배상이나 가해자의 사죄 및 반성을 고려하고 가해자는 재판이나 양형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표 3-9> 형사합의 성사시 합의 조건의 결과에서도 ‘금전배상(75.4%)’를 보였으며 더불어 다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와 달리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23.0%)’로 가장 높은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금전배상이 좌우하는 경향이 많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금전배상을 포함한 사과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금전배상을 약속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금전배상이 없는 가해자의 반성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합의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편파수사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면접자 : 형사합의가 성사된 경우 합의의 조건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피면접자1 : 제 사례에서는 주로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가 된 것이 많았고 금전배상이 합의의 조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대금 변제가 가장 큰 목적이며, 피의자 역시 피해대금을 변제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면접자4 : 금전배상의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금전배상을 거부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피해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가해자의 사과·반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대부분은 금전배상을 특히 충분한 배상을 합의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합니다.

## 나. 형사합의를 통한 도움정도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조사를 받게 되는 데 그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특정범죄(가령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조사받는 과정 자체가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절차가 단기간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수사절차를 조기에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가해자도 형사합의를 통해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며 형사합의를 통해서 재판과 양형 등 유리한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도움정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보상심리 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후에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적 절차(민사소송 등)등을 번거롭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고 피해회복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표 3-11>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의 결과에서 ‘금전적 피해배상’과 ‘신속한 피해회복 및 신속한 사건해결’이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면접자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피면접자3 :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는 피해자들은 법에 대해 문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직권주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수단 등을 특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주요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면접자7 :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본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의 회복속도도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수회 방문하게 되고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형사합의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 2) 가해자에 대한 도움정도

구속될 우려가 높은 가해자의 경우는 특히 형사합의가 주는 의미가 더욱 크다. 경찰단계에서의 형사합의, 재판과정에서의 형사합의 등 그 형사합의 시기에 따라서 외부로 드러나는 사건해결의지가 달라 보이고 이러한 사건해결의지가 재판과정에서 판사에게 어필이 될 수도 있어 조기에 형사합의 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회사동료, 친족관계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통해서 무너진 관계회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어 형사절차의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3-13>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정도의 결과에서도 ‘신속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의 85.0%가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59.9%)’ 또는 ‘매우 크게 도움 됨(25.1%)’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 되면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도 압박감을 받게 되는데, 형사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경우 원만히 합의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는 것 역시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면접자 : 형사합의는 가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피면접자8 :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켜 주는 대신에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

들에게 사기를 치고 고소를 한 피해자들에게만 합의를 하여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속한 사건해결이나 유리한 양형 등은 가해자에게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사항들입니다.

피면접자9 : 가해자도 신속한 사건 해결로 형사절차를 조속히 벗어나게 되며, 특히 범죄기록이 발생하지 않아(흔히'전과'라고 표현하는 것)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 다. 성공적인 형사합의를 위한 요소

현재 경찰은 민사 불개입의 원칙에 따라 형사합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다만, 형사합의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법효과에 대한 설명과 당사자 간의 오해나 악감정을 풀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불과하다. 성공적인 형사합의를 위한 요소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고려 요소나 가중치가 달라지지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중요한 요소이다. 제1절 설문조사 결과의 <표 3-9> 형사합의 성사시 합의 조건에서도 경찰은 (75.4%)로 금전적 배상을 다른 요소에 비해 높게 선택했다.

우리나라는 고소·고발공화국으로 불리는데 대다수의 고소·고발사건은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이다. 이와 같은 경제범죄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회복이 되어 형사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반면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감정다툼을 원만히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당사자들이 감정적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위한 제3의 독립기구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면접자 : 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피면접자4 : 형사합의를 할 만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소하고, 금전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와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소 친분정도, 가해자의 반성 및 사죄 정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이 원하는 바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을 때 원활한 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면접자8 :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는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구제라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물질·인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고통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형사합의 성공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데,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였습니다. 피해자(아내)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자(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자가 밖에서 불일 보고 밤 10시쯤 귀가하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밖에서의 행적을 의심하여 가위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진단이 3주가량 나온 사안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3회 정도 신고되어 벌금형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혼을 무릅쓰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그 동안의 폭력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의 의미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사합의가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합의금과 더불어 피해자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감정을 해소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할 때 더욱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라. 형사합의에 대한 만족수준

형사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쪽이 더 만족하는 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먼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금전배상을 받았다면 만족하는 정도가 높을 것이다. 하지만 물질·인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체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형사합의 과정에서 선부르게 형사합의를 해버린 이후에 사후적 피해배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형사합의 이후에 가해자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게 하는 절차는 민사절차로서 피해자에게 또 다시 번거로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표 3-17> 형사합의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족수준 비교에서 경찰은

양쪽 모두 만족과 가해자가 더 만족한다(39.0%), 피해자가 더 만족한다(21.9%)는 응답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가해자가 만족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과다한 합의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불만족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합의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피해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면접자 : 형사합의가 성립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쪽이 더 만족하는지요?

피면접자1 : 형사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은 피해자가 더 만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위와 같이 형사합의에 동의하는 피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전이 가장 큰 목적이고, 피의자의 형사처벌 유무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하더라도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형사합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면접자5 : 형사합의가 성립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만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형사합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로 양보를 통해 원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편입니다.

피면접자6 : 피해자 가해자 쌍방 모두 만족도가 높으나 가해자 쪽에서 형사절차를 벗어나는데 대한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더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 마. 형사합의사항 이행정도

형사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3-18> 형사합의 후 합의사항 이행 정도의 결과에서 경찰은 74.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거나, 예외적으로 재고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관이 제시하는 형사합의의 가이드라인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

치므로, 이전 사건처리의 경험에 비추어 형사합의시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 합의사항이 잘 이뤄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면접자 : 형사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사항이 잘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 일까요?

피면접자4 : 금전적 배상의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큰 경우 한 번에 그리고 단기간 내에 변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를 확정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공정증서와 같은 공신력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형사합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합의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될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는 수사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면접자7 : 형사합의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한 후에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약속을 강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를 믿고 선부르게 문서화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는 문서화해서 합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실제로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배상을 받은 후에 문서화하는 합의를 작성해 주도록 조언을 해 주기도 합니다.

#### 4.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 가. 형사합의의 효과

<표 3-22> 형사합의의 효과의 결과에서 형사합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련된 8개 항목 중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86.6%), 다음으로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81.4%),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 완화’(74.1%), ‘사건해결에 기여’(69.6%),

‘보복범죄 방지’(59.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해자의 준법정신 향상’, ‘가해자의 재범예방’, ‘가해자의 재사회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게 나타났다.

이처럼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금전적 손해의 경우 금전 배상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받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가해자의 사과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 또한 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과기록은 평생 기록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형사합의를 통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해자의 재사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업무경감의 효과가 있는데 민사적 성격이 강한 고소·고발의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형사합의는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이나 종국적 사건해결,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측면에서는 그 어떠한 제도보다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가해자의 재범방지, 재사회화에 대한 측면에서는 형사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각 사안에 따라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비교형량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실무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성 있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합의조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수사결과보고서나 의견서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다만 경찰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서로 형사 합의할 것을 권유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서 등을 송치서류에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사안의 경미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어 당사자 간의 법적이익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면접자 : 형사합의로 인한 법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피면접자1 : 예컨대 민사상 소액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고소장에 사기로 기재하여 고소를 하게 되는데, 보통 고소인도 처벌의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채권 추심의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사건처리를 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는데 합의를 하는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소인의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피면접자3 : 노래방에서 노래를 사용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에서 저작권료를 내고 고소취하서를 받아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보통 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돈 받으면 대부분 고소를 취하합니다. 이처럼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피고소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므로 이런 각종 특별법 사건의 경우에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접자 :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의 해결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까요?

피면접자6 : 형사합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도 형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양형상의 고려가 충분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등 그 효과가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만 있으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형사절차를 경시케 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한탕주의에 대한 인식을 심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업무경감을 위해 합의를 통해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려고 무리하게 합의를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합의절차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실제 피해자나 가해자나 원치도 않는데 합의를 하게 되어 형사절차를 형해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피면접자7 : 실질적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며, 신속히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경찰의 사건감소에 도움을 주어 범죄예방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 사건의 경우, 경미하고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범방지나 재사회화 등의 부분에서는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나. 형사합의 과정상 문제점

<표 3-24> 형사합의의 문제점: 직업·연령·권유경험별 비교에서 경찰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와 달리 ‘강요·협박·폭력의 발생’ 가능성보다 ‘합의사

항 불이행'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었다. 형사합의 후에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경우는 이미 합의내용이 문서화되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되어 원하는 바를 달성하였다고 합의내용 이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다시 합의내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미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에 더해 심적·물적 피해를 가중한다. 더불어 형사합의 절차상 피해자가 궁박한 상황이나 사회적 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주변의 강요나 제대로 주변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부르게 형사합의를 하고나서 이후에 적절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형사합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기관이 합의절차에 깊숙이 개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강요하거나 중개하는 등 심각한 경우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절차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형사합의의 제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다.

면접자 : 형사합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피면접자1 : 담당 수사관이 형사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각 당사자로부터 상대방과 커백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합의사항이 불이행되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그 원망을 모두 듣게 되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형사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형사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합의내용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거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현물 수수가 필요하다. 종종 문서상으로만 합의한 이후에 가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재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합의의 이행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피면접자2 : 실질적으로 현행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형사합의가 어려운 것이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편파수사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은 민사관계불개입 원칙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는 민사관계에 관여할 수 없는데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경찰관이 민사관계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형사합의라는 유혹을 수사관들이 쉽게 떨쳐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형사합의를 강요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5.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 가. 형사합의의 제도화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 진정 접수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반려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민원상담관 및 사건팀장이나 사건담당자가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고, 명백히 민사사건이거나 악의에 의한 접수일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구제절차를 설명 후 반려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고소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와 민사사건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합의나 민사분쟁사건의 합의나 구제에 관한 내용의 지침서는 없는 실정이다.

면접자 : 그렇다면 형사합의를 정형화시킨다면 어떤 범죄에서 제도화시키면 좋겠는지요?

피면접자2 : 형사합의를 정형화시키기 용이한 분야는 우선 교통사고 분야, 폭행죄, 사기·횡령·배임 등의 경우에 피해정도(가령 진단 수, 피해액)에 따라 형사합의를 정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나, 폭행사건의 경우에 물적 피해를 산정하기가 용이하고, 인전피해도 진단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납득할 만한 합의금액을 상정할 수 있어서 형사합의를 정형화시킬 수 있을 듯합니다.

피면접자5 :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경제범에 있어서 형사합의를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범죄는 민사문제와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피의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대금의 변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는 피의자들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등) 역시 형사합의를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감정다툼으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정다툼을 해소시키면 문제를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지만 자존심의 문제로 인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과 등을 통해 형사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피면접자7 :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등에 있어서 진단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의 정형화가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사건과 명예훼손, 모욕 등 사적 분쟁 사건 등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한 재범의 방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회복과 비교형량 하는 경우 후자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나.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확대

<표 3-26>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한 의견: 직업·연령·권유경험별 비교에서 경찰은 형사합의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반면 공식적인 제도화를 통한 확대에는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찰수사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비해서 찬성하는 경향이 더 강했는데 사건처리 과정에서 형사조정제도 등 공식적인 제도나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이 일정한 권한을 갖고 형사합의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향후 형사조정제도가 확대된다면 경찰단계부터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시켜 제도화시키는 방안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찰 역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다. 형사합의를 경찰단계까지 정형화한다면 경찰이 마치 추심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형사합의를 권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사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형사합의만을 추구하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사항은 여러 가지 법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면접자 :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확대하여 형사합의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건 어떤지요?

피면접자3 : 찬성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형사합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를 제도화시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합의를 제도권으로 포용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준용함으로써 이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면 신속한 사건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면접자5 : 다만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법적 효력이 의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지, 집행권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가해자나 피해자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한 후에 형사합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확대하여 형사합의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관련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어느 일방 당사자만 이득을 보기도는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차로서 형사조정제도가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다.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의 실시방안

현행 검찰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에서 실시될 경우 형사조정제도의 조정이나 형사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며, 가해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형사절차 진행을 통해서 사건에서 탈출 할 수 있거나 유리한 양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입장에서도 사건의 조기 종결을 통해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정황이나 설명만 듣고 조정이나 합의를 도모할 우려가 있고, 조사경찰관은 업무 감소를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형사합의만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후의 형사절차를 형해화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의 조정효력이 구속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경찰 이후의 절차에서 오히려 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절차가 더욱 복잡해져 이는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행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면접자 : 검찰단계의 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요?

피면접자2 : 찬성합니다. 장점으로는 사건의 신속한 진행, 불필요한 사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과 기소까지 가지 않으므로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고 피해자도 신속히 수사절차에서 벗어남으로써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수준까지 경찰이 개입하여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불공평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면접자4 :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전 형사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찰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며, 수사기관이 추심기관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통해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피면접자6 : 경찰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찰단계에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형사조정제도를 거치게 된다면 이는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내지 사건의 해결에 역행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실제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 그 전에 경찰단계에 형사조정제도가 있었다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어 피해자는 그에 따른 재산상 회복을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라. 경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대상범죄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묻는다는 의미에서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경우 실제적 진실발견이나 가해자의 재범방지, 재사회화에 대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범죄를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행 형사조정제도와 같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죄 내지는 개인 간 사적분쟁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에만 우선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경찰단계까지 형사조정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우선 사안의 경미성, 사건의 우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요 범죄 중 선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면접자 : 만약 형사조정제도가 경찰단계에서 이뤄진다면 주요 대상범죄(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대상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개인 간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의료분쟁 등 사적 분쟁)를 정하는 것이 좋을가요? 아니면 전체범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게 좋을가요?

피면접자1 :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형사합의로 해결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특히 강간죄 등과 관련해서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현행 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형사조정제도에 규정된 범죄는 주로 재산범죄 또는 명예에 관련된 범죄들로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가해자의 진실 된 사과 등이 있으면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회복이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면접자7 : 형사조정제도가 경찰단계에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범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정형화하기 용이한 교통사고, 폭행사건, 사기·횡령·배임 사건 등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범죄로 확대하기에는 형사조정제도의 신뢰성, 공정성의 담보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공식적인 형사합의가 제도화 된다면,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도 쉽게 공소제기 하지 못하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하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 마. 제도화된 형사합의의 운용

##### 1) 형사합의 관할기관

<표 3-27>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시행시 관할 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에서 경찰은 형사절차마다 관할 기관 설치 의견(50.5%)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23.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이지만 형

사합의는 피해자 및 가해자 양당사자에게 상당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를 위해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중요하다. 우선 경찰이 독립적으로 형사합의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형사합의를 형사조정제도에 포함시키고 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부터 실시하는 방안으로써 각 경찰서마다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를 원하지만 내용에 불복할 경우 각 지방경찰청에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지방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경찰서 단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시켜 검찰단계에서 운용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이지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손해회복과 가해자의 양형에 대한 부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 등을 고려하면 검찰송치 전 형사합의가 의미는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세 번째로 독립된 정부기관 설치(가칭 형사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다. 경찰과 검찰은 민사개입과 수사의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고 수사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해자 양당사자가 조정이나 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조정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면접자 : 형사합의를 제도화시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관할에 두고 실시하는 게 좋을까요?(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로 확대하고 그 안에 형사합의 실시, 현행 검찰단계에서 실시하고 그 안에 형사합의 포함, 독립된 정부기구 설치 등)

피면접자8 : 경찰서 단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경찰서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의 소송법상 불가능하고 수사의 종결권과도 연계가 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겠지만요. 어쨌든 형사조정제도의 의미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합의를 공식화하고 법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운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이나 합의의 경험이 많은 퇴직경찰관과 시민, 학계, 법조인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피면접자10 : 형사합의를 제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을 보장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두기보다는 제3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용방식은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기준으로 확대운용하면 될 것 같

구요. 다만 지금처럼 경찰수사후 송치된 사건 중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형사조정을 의뢰하는 방식에 경찰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할 경우에 제3의 독립적인 기구로 합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절차를 간략히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정을 강제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신도 없앨 수 있는 좋은 제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한 제도 도입시 법적 개선 및 변경 사항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형사조정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의 부동의를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당사자의 강요에 의한 조정은 안 되는 것이며 강요받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형사합의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형사합의에 관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직무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형사합의제도에 관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제도운영에서는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경우 형사합의 절차에서 조사경찰관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근거에서 형사합의 절차에 대한 설명과 권유, 형사합의 회부에 그치도록 규정하도록 한다. 이는 민사 불개입의 원칙과 경찰개입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독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자 :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제도를 도입한다면 현행법이나 경찰제도에서 개선되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피면접자5 : 우선 경찰에게 합의권 수권규정 명문화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기소시 이를 참작하도록 법문에 명문화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아무영향이 없는 점을 감안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도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경찰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형사합의제도가 도입된다면 형사합의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또는 경미범죄를 검찰에서 지정한 사

건에 대하여는 경찰에게 수사의 종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결국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 하고 검찰에서 경찰단계의 형사합의제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찰단계의 형사합의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피면접자9 : 만약 경찰단계에 형사합의제도나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수사 담당자는 그 절차에서 단순한 의견제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형사합의나 조정에 개입하면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풀을 마련하여 형사합의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형사조정결과와 법적효력 측면에서도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시하여 일단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바. 형사합의 제도화시 지향해야 할 사항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단순한 피해회복을 넘어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3-30> 형사합의 제도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의 결과에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현행 형사합의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는 향후 형사합의의 제도화시 단순히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반성과 사죄 더 나아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형사조정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서 도출되었듯이 형사합의의 목적도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 형사합의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처벌 경감 등에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동의를 하고 형사합의를 해야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만약 형사합의제도가 담당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용

한다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형사합의제도의 중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면접자 : 형사합의가 제도화 된다면 고려되고 지양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피면접자10 : 형사합의가 제도화될 경우에 지양해야 할 사항은 얼마나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고민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외부의 간섭 없이 당사자 스스로 충분히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적인 당사자의 의지에 기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다음은 가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이익 되는 측면과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 구제 측면이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물질적으로 금전배상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면접자6 :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금전배상의 제도화 및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더 좋겠지요. 형사합의제도의 공식화는 이러한 세부규정을 만드는 부분이 잘 되어서 실무에서 형사합의를 주도할 때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이 병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 관계회복, 가해자의 반성 및 사죄는 주관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4장

#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윤 현 석



## 제4장

---

#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 제1절 조사방법

본 조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합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첫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의 실태, 둘째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셋째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넷째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또한 경찰단계에서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첫째,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의 실태, 둘째, 경찰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셋째,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의 효과 및 문제점, 넷째, 경찰단계 또는 형사절차에서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형사합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나아가서는 경찰단계를 포함하는 형사절차단계에서 공식적인 형사합의제도의 법·제도적 근거의 정립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2절 형사합의의 실태

전체 응답자 중 75.7%가 사건 당사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9%는 권유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응답자 전원, 변호사는 94.0%, 판사는 71.7%, 경찰은 58.1%가 형사합의를 권유한 경험이 있었다. 경찰의 경우 사건처리에 있어서 권유경험이 다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

에 비해 권한이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사합의의 효과는 법적인 절차규정이나 규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의 개인능력 여하에 맡겨져 행해지고 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이었으며, 가해자가 사죄하고 반성했기 때문이거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하였다. 형사합의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지만, 부수적인 결과이지 형사합의의 주된 목적이거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업별로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판사나 검사에 비해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죄해서 형사합의를 권유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는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을 형사합의 권유의 이유로 많이 꼽는 가운데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보다는 업무부담의 경감을 이유로 꼽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직업별로는 판사, 검사,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변호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18개 사건 전체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정도는 10건의 사건 중 평균 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10건 중 5.9건, 폭행 5.8건, 사기 5.7건, 교통범죄 5.5건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살인 2.5건, 강도 2.6건, 약취유인 2.9건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변호사가 10건 중 평균 6.9건으로 가장 높고, 판사는 5.4건, 경찰은 2.2건으로 낮게 나타났다 변호사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의 경우 가해자의 변호인으로서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합의 권유에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경찰의 경우 수사 및 사건처리의 최종적인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범죄는 경찰수사관의 1차 판단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은 재산죄의 사건이나 경미한 범죄에서 형사합의를 권유하고 있다.

18개 사건 전체에 대하여 형사합의가 성사되는 빈도는 10건 중 평균 3.0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건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와 폭행사건이 10건 중 4.4건으로 가장 높고, 상해는 3.8건, 손괴, 사기, 임금체불 등은 3.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살인(1.1건), 강도(1.4건), 약취유인(1.6건)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변호사가 10건 중 평균 4.0건으로 가장 높고, 판사와 검사는 각각 3.3건과 3.2건으로 비슷하며, 경찰은 2.0건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앞서 권유빈도와 성사빈도를 비교하면, 경찰의 경우 10건 중 2.2건 정도 권유하지만 성사빈도는 2.0건(90.9%)으로 판사의 5.4건 권유와 3.3건 성사(61.1%), 변호사의 6.9건 권유와 4.0건 성사(58.1%)에 비해서 권유빈도와 성사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작다. 즉 경찰의 경우 합의권유에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신중하게 이루어져 합의 성공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합의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택하여 합의를 권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형사합의 성사시 합의 조건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6.5%가 금전배상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17.6%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선택하였다. 압도적인 다수가 형사합의의 조건으로 금전배상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직업별로 비교하면 검사가 8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변호사가 78.7%, 경찰이 75.4%, 판사가 69.7%로 가장 낮았다.

### 제3절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금전적 피해배상’과 ‘신속한 피해회복’ 및 ‘신속한 사건해결’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이나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받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피해자에 대한 도움에 대해서 검사의 경우 긍정적 인식의 정도가 가장 강하고, 경찰의 경우 긍정적 인식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속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가해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형사합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회복에는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검사의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경찰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변호사의 긍정적 평가 점수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가 형사합의 권유에 적극적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검사는 형사합의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형사합의를 위한 요소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고려 요소나 가중치가 달라지지만 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이 형사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항목이지만 금전적 배상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 또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금전적 배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당사자 간 감정다툼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당사자들이 감정적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중요한 것으로 조정위원을 전문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제3의 독립기구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형사합의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족 정도를 보면, 다수 응답자가 ‘양쪽이 비슷하게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더 만족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 보면, 판사, 변호사, 경찰은 가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인식이 다소 강하고, 검사는 피해자가 더 만족한다는 인식이 다소 강하다.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4.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 평가는 14.2%에 불과하였다. 직업별로는 변호사와 검사는 각각 84.0%와 80.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찰은 74.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판사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4%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합의사항 이행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형사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예외적으로 재고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관이 제시하는 형사합의의 가이드라인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18개 사건 유형 중에서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폭행(89.1%)과 임금체불(89.1%)이었으며, 다음으로 교통범죄(85.8%), 손괴(85.0%) 순으로 나타났다. 18개 사건 유형 중에서 13개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반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은 것은 살인(84.6%), 강도(78.1%), 약취·유인(71.7%), 강간·강제추행(59.5%), 체포·감금(56.3) 등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합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4절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형사합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련된 8개 항목 중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86.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81.4%),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 완화’(74.1%), ‘사건해결에 기여’(69.6%), ‘보복범죄 방지’(59.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해자의 준법정신 향상’, ‘가해자의 재범예방’, ‘가해자의 재사회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형사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회복과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 보복범죄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가해자의 변화(준법의식, 재범예방, 재사회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검사와 변호사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형사합의의 효과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며, 경찰이 네 집단 중 가장 덜 긍정적이다.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호사 집단은 ‘가해자의 준법정신’, ‘가해자의 재사회화’ 및 ‘재범예방’에 대한 평가에서 검사를 비롯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형사합의 활용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사건처리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긍정적 평가 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즉 ‘강요·협박·폭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57.9%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와 형사사법담당자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68.0% 그리고 ‘합의사항 미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62.3%가 동의하지 않았다. 대체로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문항에 따라서 응답자의 30%~41%가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 항목 중 형사합의를 하려고 회유나 협박 강요 등이 발생할 가능성(41.3%)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합의가 제도화 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5절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2/3 이상은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확대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71.7%가 찬성하였으며, 현재 검찰수사단계에서 기소여부 결정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경찰수사단계나 법원재판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5.6%가 찬성하였다. 또한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사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4.4%가 찬성하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검사의 경우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호사, 경찰 순으로 나타났으며, 판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서 찬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에 형사합의에 소극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데, 공식적인 제도화를 통한 확대에는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찰수사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 찬성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시켜 제도화시키는 방안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형사합의를 경찰단계까지 정형화한다면 경찰이 마치 추심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

야 할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형사합의를 권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사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형사합의만을 추구하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대된 형사조정 담당기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1.7%가 ‘형사절차마다 해당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검찰에 설치’(20.6%), ‘법원에 설치’(17.8%),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17.8%) 등의 의견은 비슷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판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마다 해당기관마다 설치(30.4%)를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는 법원에 설치(26.1%)를, 변호사는 해당기관마다 설치(40.0%) 다음으로 검찰에 설치(24.0%)와 법원에 설치(22.0%)를 선호하였다. 검사의 경우는 다른 세 집단과 달리 검찰에 설치 의견(52.2%)이 과반수를 넘고 다음으로 형사절차마다 설치(34.8%) 방안을 선호하였다. 경찰의 경우는 형사절차마다 설치 의견(50.5%)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다른 세 집단과 달리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23.8%)를 선호하였다.

민간기구 관할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1/3정도만 찬성하고, 나머지 약 2/3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경찰의 경우에는 민간기구 관할에 대해서 찬성(50.5%)과 반대(49.5%)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세 집단의 경우에는 73.9%~80.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합의를 제도화할 경우에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된 ‘금전배상’, ‘관계회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등 네 개 항목에 모두에 대하여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네 개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큰 차이는 없지만, ‘관계회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은 것은 응답자들이 현행 형사합의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반성과 사죄 더 나아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판사와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점수가 가장 높고, 검사와 경찰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다. 결국

네 집단 모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행 형사합의에서 ‘금전적 배상’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전배상 위주의 현행 형사합의에서 피해자의 안정과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합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안으로 첫째, 경찰단계부터 공식적으로 형사합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에 형사합의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형사합의에 관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직무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형사합의제도에 관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제도운용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근거에서 형사합의 절차에 대한 설명과 권유, 형사합의 회부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민사 불개입의 원칙과 경찰개입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형사합의제도를 독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시켜 확대 운용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이지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손해회복과 가해자의 양형에 대한 부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 등을 고려하면 기소 전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합의를 형사조정제도에 포함시키고 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부터 실시하는 방안으로써 각 경찰서마다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셋째, 독립된 공공기관 설치(가칭 형사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다. 경찰과 검찰은 민사개입과 수사의 중립성 위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또한 보다 중요한 수사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해자 양당사자가 조정이나 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조정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5장

---

#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안 성 훈



## 제5장

#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번 조사연구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형사사법실무에의 도입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 조사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금전적 피해배상’과 ‘신속한 피해회복’ 및 ‘신속한 사건해결’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형사합의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회복이나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받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이 형사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에 대한 견해도 있었지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금전적 배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었다.

셋째, 형사합의 적용대상 사건으로는 18개 사건 유형 중 살인, 강도, 약취·유인, 강간·강제추행, 체포·감금 이외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높았다.

넷째, 형사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문항에 따라서 응답자의 약 40% 정도가 문제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특히 형사합의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강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형사조정제도에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확대 방안과 형사조정제도를 경찰수사 단계나 법원재판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 또한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약 65% 이상이 찬성하였다.

여섯째, 확대된 형사조정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마다 해당기관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검찰에 설치’, ‘법원에 설치’,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17.8%) 등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형사합의를 제도화할 경우에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는 ‘금전배상’, ‘관계 회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등 네 개 항목 모두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해 보았다.

### 제1절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주지하다시피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범실무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하였을 때에는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인정되어 왔다. 특히,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합의가 사건처리 및 양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민사상의 화해가 현실적으로 피해자구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도 ‘비공식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실은 범죄피해자의 일반적 감정과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sup>134)</sup>

이와 같이 형사합의의 결과는 형사절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찰에 의한 형사조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전까지, 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규정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형사합의는 사인인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합

134) 김용세/박광섭/도중진(2001),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8쪽.

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①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이 개입되는 등의 사인 간 권력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받기 위해 형사사건의 정상참작의 한 자료로서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합의서를 피해자로부터 조속히 받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sup>135)</sup> ② 형사합의가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예컨대, ‘합의’를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재판실무에서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관이 합의된 손해배상의 이행을 확인 중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sup>136)</sup>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범죄의 해결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법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의 방식과 내용은 사건당사자들의 완전한 자유로운 의지에만 맡겨두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sup>137)</sup>

따라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형사합의를 법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서 제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sup>138)</sup> 실제 설문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1.7%가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확대하여 비공식적 형사합의를 공식적인 제도에 포함시킬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39)</sup>

135) 특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함으로써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윤동호(2006),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136쪽]

136) 김용세/박광섭/도중진, 위의 보고서, 88쪽.

137) 예컨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나 그 친족들로부터 합의에 협력하라는 압력 하에 놓일 수도 있고 가해자의 관점에서는 형량의 감경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비록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138) 이와 같이 법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된 형사합의를 형사조정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9) 제3장 <표 3-26>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한 의견 참조

##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활용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등, 수사기관 내지 형사사법기관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이버전(Diversion)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의 중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어도 법원의 양형결정시 중요한 참작사유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수사단계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sup>140)</sup> 따라서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의하에 실시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에서 시행중인 형사조정제도는 도입 초기에 UN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세계적 사법체계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의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분쟁해결과 피해자보호의 새로운 틀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중심적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41)</sup> 그러나 현행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수사기관의 고소사건 해결책을 위한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sup>142)</sup>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형사조정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균형사법을 추구하면서 갈등의 뿌리를 의사소통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지향하는 회복적 사법의 철학이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sup>143)</sup> 따라서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 들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과 특성 및 당사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형

140) 김충우(2008), “독일의 형사조정제도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3호, 13쪽.

141) 대검찰청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조(목적)는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2)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는 남고소 및 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이 도입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43) 김성돈(2009),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성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286쪽.

사조정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제도가 조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들을 다중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다면 이 제도가 운영상 수사기관의 고소사건 해결책을 위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정제도가 형사사법의 주변부에 붙어 있는 장식물로 전락하게 될 우려도 불식될 수 있을 것”<sup>144)</sup>이며, 또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형사합의를 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추구될 수 있는 목표는 비형벌화, 다이버전, 형벌대체, 피해자의 원상회복, 범죄자의 재사회화, 비공식적 절차의 활용 등 매우 다양할 것<sup>145)</sup>인데, 이와 같은 다양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기소 전 단계, ② 기소 후 판결선고 이전 단계, ③ 형선고 단계 등과 같이 각 형사절차의 단계에서 다양한 조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모든 형사절차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sup>146)</sup> 이와 같이 형사조정제도가 모든 형사절차단계에서 적용된다면 각 형사절차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는 제도 속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기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조정이 성립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여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 의사를 철회할 경우 일정한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도 형사조정이 성립하였을 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인정할 경우 형사사법 시스템의 작동방식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형벌청구권의 의미가 형해화된다고 하는 근본적 비판도 있지만, 오늘날 회복적 사

144) 위의 논문, 286쪽.

145) Abrecht, H. J., “Restorative Justice-Answers to Questions that Nobody has put forward”, *Victim Polices and Criminal Justice on the Road to Restorative Justice, A collection of essays in honour of Tony Peters, E. Fattah and Parmentier(eds.)*, 2001, Leuven University Press, p. 308.; 위의 논문, 287쪽, 주48 재인용.

146) 김성돈(2009), 위의 논문, 288쪽 참조.

법이념의 발전과 피해자 중심으로 재정립된 형사사법제도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조정을 의미 있는 법적 효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를 형사절차상의 다이버전적 비형벌화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sup>147)</sup>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 형사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형사조정제도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다만,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성립으로 인해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일종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때문에 법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을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소권 자체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법률상 인정된 권한이고 예컨대 조정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검찰에 의한 재판권 행사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소추권과 심판권의 분리하는 탄핵절차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동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48)</sup> 독일의 경우에도 “경죄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판개시를 관할하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잠정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형사소추에 대한 공적 이익을 배제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책임의 중대성에 반하지 않는 한 피의자에게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형사조정을 진행할 경우 검사는 공판개시를 관할하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독일형사소송법 제153조a).

실무에 있어서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은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은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기소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단, 설문조사에서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경찰수사단계와 재판단계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데 65.6%가 찬성하고 있고, 경찰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도 경찰단계에서의 형사합의 제도화 방안과 그를 통해 살릴 수 있는 장점 등이 다수 제

147) 김성돈(2009), 위의 논문, 292쪽.

148) 위의 논문, 293~294쪽.

시된 만큼<sup>149)</sup> 경찰단계에서도 형사조정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논의 보다는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경찰단계는 형사실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제로 가장 빈번히 충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은 형사절차의 초기단계일수록 목표달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일정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절차를 거쳐 화해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검찰 업무경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상과 같이 일정 범위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지침 또는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형사조정 의뢰와 효과를 인정하는 방안의 마련은 필요하다.<sup>150)</sup>

그러나 현재 기소 전 단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예컨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또는 조정적격성이 인정된 일정한 경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에 이르러 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의 처리 및 조정결과를 검찰에게 보고하고, 이로써 수사는 종결되며 검찰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그러나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사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절차는 통상의 형사절차를 밟는 등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sup>151)</sup> 물론 경찰단계에서 경찰이 자체적 판단으로 형사조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형사조정 의뢰 남발 등으로 인해 형사조정이 민사사건 해결창구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한 형사조정의 조정적격성 판단에 대한 검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형사조정 의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최소한의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형사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형사조정에 의뢰한

149) 제3장 <표 3-26> 형사조정제도의 확대에 대한 의견 참조; 제3장 제2절 5.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참조.

150) 김용세, 위의 책, 209쪽.

151) 김성돈(2001), 위의 논문, 182쪽 참조.

경우나 형사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 경미범죄 사건을 형사조정에 의뢰한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형사조정은 수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견해<sup>152)</sup>도 있지만, 형사조정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그 결과가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sup>153)</sup>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활동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상 형사조정의 회부는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1항)<sup>154)</sup>, 검찰 송치 전에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sup>155)</sup>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정에 의뢰한 사건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sup>156)</sup>을 볼 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경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152) 형사조정절차는 주체가 조정위원회이고 그 내용도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박성철(2010),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경찰수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4집 제3호, 141쪽]

153)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54)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5) 대검찰청 형사조정실무운용 지침(대검예규 제725호) 제25조 ① 경찰로부터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송치 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다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

② 형사조정 회부 여부는 송치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56) 박성철, 위의 논문, 142쪽.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2. 기소 후 판결 선고 이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이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을 거부하여 기소가 된 경우라도 법원단계에서 다시 형사조정을 실시하여 가해자의 조정 노력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조정이 형사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가능하고 공판절차의 중간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양형단계 이전에서도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는 방안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검찰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고려한 공소취소를, 법원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고려한 공소기각을 하는 등의 법적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sup>157)</sup>

우선 검찰의 공소취소제도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지만, 실무상 ① 공소제기 당시에는 소추의 필요가 있었으나 공소제기 후 소추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② 공소제기 후에 소추요건이 흠결된 경우, ③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무죄의 선고가 예상되는 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이에 따라 검사는 공판절차의 초기나 중간에 당사자 간의 형사조정이 성사된 경우에는 공소취소제도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158)</sup> 형사조정은 공소취소 사유중의 하나인 ‘공소제기 당시에는 소추의 필요가 있었으나 공소제기 후 소추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례가 형사조정을 이유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공소취소에 의한 법원의 공소기각의

157) 이진국/오영근, 위의 보고서, 222~224쪽 참조

158)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인·피해자의 고소취소나 처벌희망의사표시철회가 있으면 검사는 즉시 고소인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그 진의를 확인한 후 공소를 취소하고 있다. [위의 보고서, 223쪽. 재인용]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형사소송법 제329조)에 형사조정 결과의 참작한 공소취소는 법적 안정성의 효과도 가진다.<sup>159)</sup>

다음으로, 법원의 공소기각의 재판은 소송조건인 흠결이라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재판으로,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하는 경우와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판결하는 경우는 소송조건인 흠결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그 흠결의 발견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여 변론을 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조건인 성질상 그 존부의 인정에 있어 변론을 열 필요조차 없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한적 열거주의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재판의 사유<sup>160)</sup>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조정과 관련한 공소기각의 재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유죄확정이 되지 않은 재판단계에 있어서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형사조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속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적정절차의 요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친지원에서 시범 실시된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과 관련 형사조정에 있어서도 법원이 사건에 관해 형사조정과

159) 위의 보고서, 223쪽.

160)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이 필요하고 시범실시 케이스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공판검사에게 설명하고 공판검사로부터 대상 사건으로 삼는데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공판검사가 동의한 후에 형사조정을 진행하였다.<sup>161)</sup>

독일의 경우 공소가 이미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사실관계 확정이 최종적으로 심사될 수 있는 공판이 종료할 때까지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 열거된 준수사항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조정을 위해 공판절차를 연기할 경우에는 검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독일형사소송법 제153조a)

### 3. 형선고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상 재판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사된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를 양형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162)</sup> 현행법 하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손해배상금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형법 제51조 제4호(범행후의 정황)와 형법 제53조(정상참작에 따른 작량감경)에 의해 형벌감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감경되는 범위는 법정형의 1/2 까지 가능하다.<sup>163)</sup> 따라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사항인 작량감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형사조정제도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로서 법률상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sup>164)</sup>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독일 형법 제46조a는 가해자-피해자 조정과 원상회복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임의적 형벌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형법상 가해자가 형감면의 효과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동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자의 피해자와 조정에 도달하려는 노력’과 ‘범행의 완전한 원상회복’, ‘범행의 현저한 부분의 원상회복’, ‘원상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3가

1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3),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종합평가 합동포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7쪽.

162) 무엇보다도 형사조정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이익은 양형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위의 보고서, 36쪽]

163) 이진국/오영근, 앞의 논문, 207쪽.

164) 위의 논문, 207쪽.

지 유형의 객관적 기준의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범죄의 경중인데, 즉, 범죄가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또는 360일수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면 형을 감경하는 것만이 가능하지만,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의 면제도 가능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현저한 이행과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sup>165)</sup> 이러한 독일 사례는 우리나라에 형사조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166)</sup>

우리나라 형법은 형의 감경과 관련하여 재판상의 감경인 작량감경을 두고 있어 형선고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결과의 법적 효과로서 형의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의 감경시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현저한 이행과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시범 실시된 형사조정에 있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상당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경우에도 사회봉사 형태로 사회 내에서 형사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집행유예의 선처가 이루어졌다.<sup>167)</sup>

그러나 형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165) 독일에서 이와 같이 손해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형감면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까지도 형감면의 기준에 포함시킨 정책적 배경은, 일반적인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바대로 완전하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된 급부를 이행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조정절차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거나, 짧은 시간에 손해를 배상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거나, 은행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의 논문, 209쪽]

166) 덧붙여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형이 선고되어 형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형사조정제도가 추구하는 범죄자의 재사회화 또는 피해자의 치유라는 목표를 중시할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형집행시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기타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형사조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노력과 결과를 가석방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행형법 제73조는 수형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교도소장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충우, 앞의 논문, 16쪽]

16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의 보고서, 36쪽

현행 형법은 형의 면제를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로 구별하고 양자 모두 법률상의 면제로 제한하고 있고 형의 감경과 같이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sup>168)</sup> 형의 면제사유에는 형법총칙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 면제사유와 형법각칙이 정하고 있는 개별적 면제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형의 일반적 면제사유로는 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동법 제7조), ② 중지미수(동법 제26조), ③ 불능미수(동법 제27조 단서), ④ 과잉방위(동법 제21조 제2항), ⑤ 과잉피난(동법제22조 제3항), ⑥ 과잉자구행위(동법 제23조 제2항), ⑦ 자수·자복(동법 제52조)이 있다. 또한 형의 개별적 면제사유로는 권리행사방해죄(동법 제323조), 절도죄(동법 제329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동법 제331조의2), 상습절도죄(동법 제332조), 사기·공갈의 죄, 회령·배임의 죄, 장물의 죄가 직계 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동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에 관한 규정이 있다.<sup>169)</sup>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형선고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결과의 법적 효과로서 형의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sup>170)</sup>

#### 4. 형사조정전치주의의 도입 및 조정적격성의 판단 기준의 마련

이상과 같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일정한 조정목표를 가진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조정단계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형사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171)</sup>

독일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 형사조정 실행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모든 형사소송절차 진행 중에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피해자 간의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적합할 경우 검찰과 법원은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168) 김성돈(2009), 형법총론 제2판, 766쪽.

169) 김성돈, 위의 책, 766쪽.

170) 형선고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결과의 법적 효과로서 형의 감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조정사안에 대해서 형의 감경과 형의 면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1) 이진국/오영근, 위의 보고서, 225쪽.; 김성돈(2009), 위의 논문, 295쪽.

다. 다만, 피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명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절차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형사소송법 제155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은 형사조정이 명백하게 적합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sup>172)</sup> 물론 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 선고 전단계에서 유죄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조정절차 참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173)</sup>

또한 형사조정예의 적합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구체적 사건에 있어 형사조정을 실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형사조정제도의 활용에 있어 그 적격 기준이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형사조정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가해자의 자백 내지 부분 자백, 부분 부인 혹은 최소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가해자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셋째, 가해자 및 피해자가 형사조정 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한다. 넷째, 형사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검찰이 형사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단순 경미범죄가 아닐 것이다.<sup>174)</sup>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새로운 형사조정제도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새로운 법률과 지침 등의 마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독일판례상의 형사조정제도의 적격기준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2) 위의 보고서, 226쪽.

173) 김성돈(2009), 위의 논문, 293쪽.

174) 김충우, 위의 논문, 24~27쪽 참조.

## 5. 형사사법기관 실무가 교육의 강화

지금까지의 비공식적 형사합의는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실무가의 직간접적인 관여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추후 비공식적 형사합의가 형사조정제도에 편입되어 모든 형사절차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형사조정 의뢰사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곧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실무가들이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형사조정제도의 활용에 소극적이게 된다면 이는 곧 형사조정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형사조정절차의 진행으로 형사절차가 약 7주에서 8주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은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임을 알지만 ① 검사 및 구검사(Amtsanwalt)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② 형사소송절차의 신속하고 평이한 종결을 위해 형사조정 기관으로의 의뢰를 지양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일선 검사들은 검찰은 시민들 간의 사적인 분쟁을 규명할 의무는 없고,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범죄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어떠한 형사소추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의무가 있을 뿐으로 형사조정은 검사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강하게 있어 이러한 일선 검사들의 생각이 형사조정의 활용을 저해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sup>175)</sup>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각 형사사법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조정제도 관련한 전문 교육과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형사합의의 성격을 그대로 고착시킨 상태에서 안정화시키는 제도화는 단순히 형사사건의 민사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피해자-가해자 간의 관계회복, 가해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 등 회복적 사법이념이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률실무가들은 그 결과 및 효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나 형사합의가 도움이 되는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은 금전배상이나 사건해결 및 피해회복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평균이 3점(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 이상이지만,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175) 위의 논문, 50-51쪽.

당사자 간 관계회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가해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는 모두 2점대의 응답에 그치고 있다.<sup>176)</sup> 이와 같이 회복적 사범이 추구하는 이념은 형사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낫다는 판단의 주요한 이유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사합의의 효과로서 회복적 사범의 이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으며, 이후의 지향으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그 적극적인 동의 정도가 적은 것이다.<sup>177)</sup> 법률실무가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역시 현재까지 유용하고 효과적이었던 분야에만 역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기본 이념은 당사자 간의 합의·조정이 단지 금전 배상 및 사건의 신속한 종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조정과정을 통한 가해자의 변화와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 등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sup>178)</sup>

### 제3절 기존 형사조정제도의 확대·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

현행의 형사사법절차상에 있어서의 비공식적 형사합의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 보다는 이미 검찰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비록 수사단계인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제도로서 2006년 시범 실시된 이후 2010년 4월 21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진 제도로 자리매김하였고, 조정과 관련한 그 동안의 많은 운영실적과 노하우를 축적

176) 제3장 <표 3-4>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표 3-5>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하는 이유, <표 3-10>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표 3-12>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의 도움 정도 참조.

177) 제3장 <표 3-30> 형사합의의 제도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 참조.

178) 형사합의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회복적 사범이념을 중심적 지향으로 하는 것은 이 제도화가 형사사건을 민사화한다는 오해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조정 of 수행과 관련하여 조정기관의 자격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조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다.<sup>179)</sup> 따라서 가장 최선의 형사조정기관은 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형사조정의 역량을 구비한 민간조직은 소수에 불과하고,<sup>180)</sup> 또한 민간기관이 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인 형사사법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상호 협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81)</sup>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법률실무자들은 형사합의 제도화를 포함하는 확대된 형사조정제도를 민간조직·기관에서 담당하는 안에 대하여는 65.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나마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찰(찬성 50.5%)을 제외하고 나면 반대의견이 80%에 가깝다. 당사자 자신들이 포함된다 할 수 있는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제도화된 형사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겠으나,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법률실무자들과의 협력·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단기간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sup>182)</sup>

따라서 현행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형사사법기관과의 협조가 보다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며,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형사조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조정제도로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비공식적 형사합의를 제도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민간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형사조정을 오직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시민은 대부분 이들 기관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

179) 형사조정기관의 조건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들 수 있다. ①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조정실무는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② 형사조정은 국가사법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형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영리추구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김용세(2009), 위의 책, 178~179쪽]

180) 김용세, 위의 책, 179쪽.

181) 이진국/오영근, 앞으 보고서, 190쪽.; 형사사법의 실무에서도 형사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민간기관에게 어느 정도로 회부할 지 의문이다.

182) 제3장 <표 3-28>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시행시 민간기구 관할에 대한 의견

는 것이 사실이다.<sup>183)</sup>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 형사조정을 위탁할 경우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형사조정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184)</sup> 특히 형사조정의 경우 조정자의 역할이 기대되고, 또한 주로 취급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조정기관을 특성화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기관의 경우 혁신에 대한 잠재력이 공공기관에 비해 많고<sup>185)</sup>, 민간기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조정자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의 형사조정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186)</sup>

#### 제4절 형사조정센터 설립

현행법상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는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찰 내에 설치되어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2조 제1항). 현재 검찰에서 시행중인 형사조정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형사조정을 시행할 민간 전문기구나 인력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형사조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부 학계나 국회, 법조계 등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지원단체라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형사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였고, 내부적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형사조정 업무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러한 입장을 채택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형사조정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187)</sup>

183) 김용세, 위의 책, 183쪽.

184) 2002년 7월 31일 천안 아동학대방지센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사건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의한 조정의 패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동학대방지센터가 운영하는 여성쉼터에 신변을 보호받고 있었는데, 화해하겠다고면서 찾아온 남편이 동 센터 관계자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난자·살해한 사건이다. [김용세, 위의 책, 180쪽]

185) 이진국/오영근, 앞의 보고서, 189쪽.

186) 예컨대 형사조정은 사례별로 사안이 다양하고 특히 사기 등 재산 범죄뿐만 아니라 경계 침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도 있다. [박성철(2010), 위의 논문, 140쪽]

187) 김지선(2011), 형사조정사건의 성립을 제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6쪽 참조. 그러나 형

문제는 형사조정이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활용될 경우 조정기관과 조정자의 역할모델도 단계별로 달라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형사조정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조정자의 역할이나 자격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형사조정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형사조정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대된 형사조정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마다 해당기관에 설치’하는 방안이 41.7%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검찰에 설치(20.6%)’, ‘법원에 설치(17.8%)’, ‘독립적인 정부기관 설치’(16.6%)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sup>188)</sup>

그러나 현재의 형사조정제도의 운용현황과 실효성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형사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동일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각 형사사법기관별로 설치할 경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통일된 조정기준 마련과 조정자의 교육 및 훈련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을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목적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등 현 조직의 업무와 역할을 격상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형사조정국(가칭) 등을 설치하여 형사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게 하고 현재와 같이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로 형사조정센터(가칭)를 설치하여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은 조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권한확대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조정은 형사사법기관의 권한확대가 아니라 형사사법기관 외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형벌권을 독점하

사조정위원회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검사가 소속된 각 지방검찰청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형사조정에 관한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 내지 합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한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정부) 검토보고서, 7쪽.; 김숙희, 앞의 논문, 179쪽 재인용.]

188) 제3장 <표 3-27> 확대된 형사조정제도 시행시 관할 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 참조.

여은 국가로부터 범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기존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sup>189)</sup>

구체적으로 형사조정국의 역할은 형사조정제도를 진흥시키고, 정부,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형사조정 관련 교육, 관련 전문가 육성, 형사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형사조정절차에서의 조력제공 등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조정센터에서는 조정전문가가 조정절차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회부한 형사조정을 각 단계의 다양한 목적에 맞게 수행하고 이러한 형사조정의 노력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사법적 평가를 거쳐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조정자는 어느 경우이든 중립적인 제3자로서 조정전문가로서 훈련받은 자이어야 할 것이며, 조정자의 역할 및 능력은 각 형사절차의 단계별 또는 형사조정의 목적별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사조정센터와 같이 형사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형사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형사조정위원은 일정한 교육을 받아 전문성이 인정된 조정전문가가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역의 장이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2조 제3항)<sup>190)</sup>. 형사조정위원은 비상근직으로 인적 구성은 주로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up>191)</sup>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활동은 조정개시시 마다 위원을

189) 김성돈(2009), 위의 논문, 301쪽.

190)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촉하고 있다.<sup>192)</sup> 이러한 형사조정위원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형사조정위원은 검찰과 친분이 있는 자라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조정개시시마다 잦은 위원선정, 그리고 이들의 활동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기대하기가 어렵다.<sup>193)</sup> 따라서 형사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처리 능력을 가진 자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 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형사조정 상임위원에게 사건의 특성에 따른 조정사건 배당과 이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선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형사조정 상임위원에게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절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

이상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를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정절차의 개시

형사조정은 형사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법적 효과도 각각 다양하게 나타난다.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안이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와 판사는 공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형사조정절차의 진행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시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소제기 전까지라고 볼 수

191)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대검찰청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4조, 제5조 참조.

192) 형사조정위원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형사조정 사건당 각 조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위의 지침, 제4조 제13항]

193) 김숙희, 앞의 논문, 179-180쪽.

있다. 이 시점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면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기관의 형사절차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194)</sup>

## 2. 조정기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형사조정국(가칭) 등을 설치하여 형사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게 하고 현재와 같이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확대/발전시켜 형사조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조정 관련하여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춘 자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성에 따라서는 공인된 외부의 독립된 민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각 형사절차단계에서 조정적격성이 인정된 사안을 형사조정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재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법무부 정부예산에 의하고 독립된 민간기관의 경우 공공 및 사적 기금의 혼합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3.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 가. 형사조정 의뢰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완료한 후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및 검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형사조정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형사조정 결과는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 직접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등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 당해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을 권유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송부한다.

검사는 사건처리 절차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행할 양형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형사조정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194) 모든 형사절차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형사조정은 전체 형사절차 진행과정 중 기소전 단계에서 9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충우, 위의 논문, 37쪽 참조

검사나 판사는 조정적격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의 조정적격성 및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조정 성립의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나. 실질적 형사화해 절차 진행

형사조정의 과정 및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형사조정국에서 형사조정제도 활용과 조정위원의 선정 및 교육 등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형사조정센터는 자체적으로 형사조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다. 형사조정절차의 종결

조정기관의 조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에 의한 피해의 회복이나, 사과 등을 함으로써 화해(조정)가 성립될 수 있다. 성립된 조정 내용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면 수사단계의 경우 사건 의뢰 기관은 조정기관으로부터 형사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형사절차를 중지(불기소결정 등)하고, 공소제기 이후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공판개시 이전의 경우에는 검찰은 공소취소, 법원은 공소기각 등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중지하며, 공판이 개시된 이후에는 법원은 이를 형의 감면 또는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한다.



## 참고문헌

### 가. 국내문헌

- 강석구/박광민/김재희(2009),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지명(2012), “특집: 형사절차에서의 협상과 합의;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99~130.
- 고비환(2010),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상찬(2004), “ADR 의 이념 (理念) 과 개혁방향 (改革方向)”, 법과정책 10(단일호): 101~124.
- 김성돈(1997),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권 제1호: 121~154.
- \_\_\_\_\_ (2001),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 \_\_\_\_\_ (2005),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
- \_\_\_\_\_ (2005),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성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 \_\_\_\_\_ (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I): 형사사법체계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2009),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성진(2009), “회복적 사법에서 형사조정 의의”, 중앙법학 제11권 제3호: 213~39.
- 김숙희(2012),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세(2006),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75~305.
- \_\_\_\_\_ (2009),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진원사.
- \_\_\_\_\_ (2010), “한국의 회복적 사법”,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1~17.

- 김용세/도중진/남미애/김성환/유상관(2008), 한국의 사법현실에 적합한 형사화해 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원사.
- 김용세/류병관(2006),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용세/박광섭/도중진(2001),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용욱(2008), “한국의 형사조정 :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인가?”, 형사정책연구: 205~229.
- 김용효(2009),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137~165.
- 김은경(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2008),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Ⅱ)]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2008),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4권(단일호): 93-145.
- 김은경/김지선/이승현/김성연/원혜욱/이호중(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 제Ⅱ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이호중(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6), “논단: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와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5~38.
- \_\_\_\_\_ (2008),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2011), 형사조정사건의 성립을 제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이동원(2006),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창렬(2012),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51~78.
- 김충우(2008), “독일의 형사조정제도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3호.
- 김호성(201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 담진홍(2012), “한국의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 대검찰청(2014), 형사조정 이론과 실무, 박영사.
- 대검찰청(2014),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 대한형사법실무연구회(2012), 형사사건, 스스로 해결한다, 법문북스.
- 도중진/원혜옥(2006), 보호관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범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맹병렬(2010),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 민영성(2006),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저스티스: 164~79.
- 박광섭/김성돈(2006), 각국의 회복적 사범 실무운용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광섭/윤민석(2007), 형사화해제도, 충남대학교출판부.
- 박근영/대한형사법실무연구회(2010), 형사사건 쉽게 해결하는 방법, 법문북스.
- 박미숙/이정민/황지태/김광준/추형관/임유석(2008), 형사정책과 사범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Ⅱ)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민정(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상식(2005), “배상과 화해에 관한 실증적 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169~208.
- 박성철(2010), “현행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경찰수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4집 제3호.
- 박수선(2010),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범”, 법학논집 15(1): 107~28.
- 박일환(1993), “제2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 양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피해자학연구 제2권 제1호: 57~70.
- 박정훈(2012), “특집: 형사절차에서의 협상과 합의;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69~97.
- 박찬우(1998),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 연세법학연구 5(2): 253~75.
- 박호정(2004), “형사제재와 민사구제의 접근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 법무부(2008), “독일 형법·형사소송법 한글번역본”, 법무부.
- \_\_\_\_\_ (2011), “프랑스 형사소송법 한글 번역본”, 법무부.
- \_\_\_\_\_ (201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2”, 법무부 인권구조과 용역과제.

- 법원행정처(2008), (법원실무제요) 형사, 법원행정처.
- \_\_\_\_\_ (2011), 법원조정센터 자료집, 법원행정처.
- \_\_\_\_\_ (2013), 법원조정센터 자료집, 법원행정처.
- \_\_\_\_\_ (2013), 외국사법제도연구(13)-각국의 회복적 사법제도-, 법원행정처.
- 송성룡(1999),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손해전보 수단과 원상회복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제43권.
- 신동운 (2006),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호.
- 신양균(2009),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동아법학 제44호.
- 안성훈(2013),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성훈/김선혜/심재우/조균석(2014),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경규(2008),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7(4): 185~215.
- 양병희(1998),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 방안-독일의 변호사회화해제도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1(단일호): 411~23.
- 오대성(2007), “민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중재연구 17(2): 189~219.
- 유병현(2004), “ADR의 발전(發展) 과 법원의 (法院外) 조정(調停) 의 효력(效力)”, 법조 53(6): 27~72.
- \_\_\_\_\_ (2006), “우리나라 ADR 의 발전방향”, 안암법학 22(단일호): 293~314.
- \_\_\_\_\_ (2009),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 13(1): 490~524.
- 유시창(2012), “한국에서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방안”, 경희법학 47(4): 557~90.
- 윤동호(2004), “형사절차와 협상”, 형사정책연구소식 86(단일호): 35~39.
- \_\_\_\_\_ (2006),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 이동원(2009), “형사조정프로그램과 조정위원의 역할”, 형사정책연구 77(단일호): 1019-1044.
- \_\_\_\_\_ (2009), “형사조정프로그램의 이상적인 모델구성과 적용방안”, 한국공안행정

- 학회보 38: 141~169.
- \_\_\_\_\_(2012), “형사조정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위원의 평가-조정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155~177.
- 이동원/조용업(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I)-형사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평가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무선(2012),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려와 『피해자 공동책임론』 수용가능성.” 경희법학 47(4):623~48.
- 이보영(2013), “형사조정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경희법학 48(2): 243-69.
- 이상돈(2009), “2008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33~55.
- 이영란(1988), “양형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0): 5~31.
- (1996), 韓國量刑論, 나남출판사.
- 이영훈(2009), “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현재와 미래”, 법학논집 14(2): 69~86.
- 이원상(2009),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II)-형사화해조정 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원영(2005), 검찰수사관행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분석, 법제사법위원회.
- 이은모(2011), 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 이정원(2011),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시행 현황과 개선방향”, 법조 60(5): 5~32.
- 이진국(2000), “獨逸刑法上 加害者-被害者 調停”, 한국사법행정학회: 22~30.
- \_\_\_\_\_(2008),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73(단일호): 5~31.
- 이진국/도중진/오영근/김성돈/김용세/박광섭/원혜욱(2006),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해소 전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진국/오영근(2006),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한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정부) 검토보고서.

- 이현정(2010),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_\_\_\_\_(2011),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287~314.
- 이혜미(2012),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 제159호, 국회 입법조사처.
- 이호중(1997), “刑法上の 原狀回復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 \_\_\_\_\_(1999), “형법상의 원상회복”, 형사법연구 12: 307~329.
- \_\_\_\_\_(2001), “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1호: 27~51.
- \_\_\_\_\_(2002), “피해자-범죄자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13(-): 273~301.
- \_\_\_\_\_(2009),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법학논집 14(2): 1~27.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3),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종합평가 합동포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장규원/윤경희(2008),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31~50.
- 장규원/윤현석(2012), “회복적 사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57): 119~144.
- 장다혜(2012), “형사절차에서의 협상과 합의; 형사소송절차상 관행으로서 형사합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형사정책 24(3): 131~60.
- \_\_\_\_\_(2012),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장안식(2008), “재통합적 수치, 종교성, 그리고 회복적 사법”, 한국사회학회: 503~517.
- 전병서/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5),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도입방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조광훈(2008),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제57권 제5호.
- 조현지(2008), “형사상 화해, 조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12(2):273~284.
- \_\_\_\_\_(2008), “형사상 화해·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흥준(2013), “ADR의 社會統合的 機能”, 저스티스 134(3): 187~224.
- \_\_\_\_\_(2013), “民事調停 制度의 發展 方向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차훈진(2005), “경찰의 회복적 사법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9(단일호): 229~53.
- 최광선(2010), “법률구조와 ADR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대일(2011), “법원내 ADR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옥환(2010), “民間型 調停의 活性化 方案에 關한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응렬/정우일/차훈진(2006), “회복적 사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캐나다 경찰의 비사법 처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65(-): 5~46.
- 탁희성/강우예(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I) - 주요 외국의 형사화해조정 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김성돈/이동원/박민정/강우예(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I)]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이원상/이동원/최창욱(2009),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II)-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하인즈, 슈흐(2000), “독일 형법상의 원상회복제도”, 외법논집 9: 585~599.
- 허일태(2006), “제1회 동아시아 형사사법 국제학술회의-형사사법의 정비방안: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비교형사법연구 8(1S): 219-43.
- 황지태(2007),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I): [2] 사법개혁의 방향과 중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노성호(2006), 회복적 소년사법 조정실무가 실행지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나. 국외문헌

- Abrecht, H. J.(2001), “Restorative Justice-Answers to Questions that Nobod has put forward”, Victim Polices and Criminal Justice on the Road to Restorative Justice, A collection of essays in honour of Tony Peters, E. Fattah and Parmentier(eds.), Leuven University Press.
- Aertsen, Ivo and Tony Peters(1998), “Mediation for reparation: the victim's perspective.” Eur. J. Crime Crim. L. & Crim. Just. 6:106.

- Aertsen, Ivo, Tom Daems and Luc Robert(2013), "Institutionalizing restorative justice": Routledge.
- Archibald, Bruce P(2005), "Coordinating Canada's restorative and inclusionary models of criminal justice: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exercise of discretion under a reflexive rule of law." *Canadian Criminal Law Review* 9:215-71.
- Bazemore, Gordon and Walgrave, Lode.(1999),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In search of fundamentals and an outline for systemic reform." In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Repairing the harm of youth crime*, ed. Gordon Bazemore and Lode Walgrave, With an introduction by Gordon Bazemore and Lode Walgrav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Bell, Catherine(1998), "New directions in the law of Aboriginal rights." *Canadian Bar Review* 77:36-72.
- Bibas, Stephanos and Richard A Bierschbach(2004), "Integrating remorse and apology into criminal procedure." *Yale Law Journal*:85-148.
- Blad, John(2003), "Community mediation, crimi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Rearranging the institutions of law." *Repositioning restorative justice*:191-207.
- Brown, Jennifer Gerarda(1994), "Use of Mediation to Resolve Criminal Cases: A Procedural Critique, The." *Emory LJ* 43:1247.
- Chatterjee, Jharna and Liz Elliott(2003), "Restorative policing in Canada: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community justice forums, and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4(4):347-59.
- Crawford, Adam and Tim Newburn(2013), "Youth offending and restorative justice": Willan.
- Easterbrook, Frank H(1991), "Plea bargaining as compromise." *Yale Lj* 101:1969.
- Fletcher, Maria and William C Gilmore(2008), "EU criminal law and justice": Edward Elgar Publishing.
- Green, Ross Gordon(1997), "Aboriginal Community Sentencing and Mediation: within and without the Circle." *Man. LJ* 25:77.
- Hoyle, Carolyn(2010), "Restorative justice : critical concepts in criminology",

- London ; New York: Routledge.
- Jinghua, Ma(2003), "On Victim-Offender Mediation System." *Political Science and Law* 4:017.
- Johnstone, Gerry and Daniel Van Ness(2007),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Taylor & Francis.
- JON'A F, MEYER(1998), "History Repeats itself Restorative Justice in Native American Communitie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4(1):42-57.
- Joseph, Katherine L(1996), "Victim-Offender Mediation: What Social & Political Factors Will Affect Its Development." *Ohio St. J. on Disp. Resol.* 11:207.
- Katz, Joanne and Gene Bonham Jr(2006), "Restorative justic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analysis." *JIJIS* 6:187.
- Kerner, Hans-Jurgen, Arthur Hartmann and Sonke Lenz(2005), "Täter-Opfer-Ausgleich in der Entwicklung: Auswertung der bundesweiten Täter-Opfer-Ausgleichsstatistik für den Zehnjahreszeitraum 1993 bis 2002; Bericht für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Forum-Verlag Godesberg.
- Lafin, Maureen E(2003), "Remarks on Case-Management Criminal Mediation." *Idaho L. Rev.* 40:571.
- Marshall(1996), *Criminal Mediation in Great Britain 1980-1996*,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4(4).
- Marshall, Tony F(1998), "Restorative justice: An overview": Center for Restorative Justice & Mediation.
- Miers, David and Ivo Aertsen(2012), "Restorative Jus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ve provision": Verlag für Polizeiwissenschaft.
- Mirsky, L(2005), "The Nanaimo Community Justice Forum: A Restorative Justice Partnership in British Columbia, Canada." *Restorative Practices eForum*.
- Morsch, Anke(2003), "Mediation statt Strafe?: eine Untersuchung der" mediation penale" in Frankreich": Heymanns.
- Murphy, Michael(2001), "Culture and the courts: a new direction in Canadian jurisprudence on Aboriginal right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Revue*

- canadienne de science politique 34(01):109-29.
- Pelikan, Christa and Thomas Trenczek(2006), "Victim offender med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the European landscape."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A global perspective:63-86.
- Pratt, John(1986), "DIVERSION FROM THE JUVENILE COURT A History of Inflation and a Critique of Progres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6(3):212-33.
- Price, M.(1995), Comparing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Models, VOMA Quarterly 6(1), M. S. Umbreit, Humanistic Mediation.
- Severson, Margaret M and Tara V Bankston(1995), "Social work and the pursuit of justice through mediation." Social work 40(5):683-91.
- Tickell, Shari and Kate Akester(2004), Restorative Justice: The Way Ahead, p. 20.
- Tiftt, Larry, John Sullivan and Dennis Sullivan(2008), "Discipline as enthusiasm: an entry into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moral development of children." Contemporary Justice Review 11(4):363-85.
- Umbreit, Mark S and Jean Greenwood(1999), "National survey of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16(3):235-51.
- \_\_\_\_\_(1998), "Restorative Justice Through Victim-Offender Mediation: A Multi-Site Assessment." Western Criminology Review 1(1).
- \_\_\_\_\_(1999), "Victim-offender mediation in Canada The impact of an emerging social work interven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42(2):215-27.
- \_\_\_\_\_(2002), "The handbook of victim offender mediation: An essential guide to practice and research": John Wiley & Sons.
- \_\_\_\_\_(2002), "The handbook of victim offender mediation: An essential guide to practice and research": John Wiley & Sons.
- Umbreit, Mark S, Betty Vos, Robert B Coates and Elizabeth Lightfoot(2005), "Restorative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social movement full of opportunities and pitfalls." Marq. L. Rev. 89:251.
- Umbreit, Mark S, Jean Greenwood, Claudia Fercello and Jenni Umbreit(2000),

“National survey of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for Victims of Crime.

Umbreit, Mark S, Robert B Coates and Betty Vos(2004), “Victim-offender mediation: Three decades of practice and research.” 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22(12):279-303.

Umbreit, Mark S, Robert B Coates, B Kalanj, R Lipkin and G Petros(1995), “Mediation of criminal conflict: An assessment of programs in four Canadian provinces”: Center for Restorative Justice & Medi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Umbreit, Mark S, Robert B Coates and Betty Vos(2000), “Impact of Victim-Offender Mediation: Two Decades of Research, The.” Fed. Probation 65:29.

US. Dept of Justice(2000),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Survey of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in the US (NCJ 176350) 1.

Vanfraechem, Inge, Ivo Aertsen and Jolien Willemsens(2010), “Restorative justice realities: Empirical research in a European context”: Eleven International Pub.

Wright, Martin(1998), “VICTIMS, MEDIATION AND CRIMINAL JUSTICE1.” Support for Crime Victim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A Collection of Essays Dedicated to the Memory of Prof. Frederic McClintock 13:189.

Wright, Martin, Burt Galaway and Burt Galaway(1989), “Mediation and criminal justice: victims, offenders, and community”: Sage Newbury Park, CA.

高橋則夫(2003), 修復的司法の探求, 成文堂.

吉田敏雄(2005), 法的平和の恢復, 成文堂.

프랑스 법무부 지침(2004), “Fiche Techniques Relatives aux Contentieux Traités dans le Cadre d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Circulaire du 16 mars 2004 de la Ministère de la Justice.

다. 웹사이트

<http://www.voma.org/docs/ethics.pdf>, at 2-3.: accessed June 12, 2009.;

Guidelines for Victims-Sensitive Victim-Offender Mediation: Restorative Justice through Dialogu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대검찰청온라인 민원실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http://www.spo.go.kr/minwon/info/procedure/crimainal/minwon0515.jsp>

# Abstract



## A Stud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Possibility of Informal Criminal Agreement in Criminal Justice

An, Sung-Hoon

The recent surge of the interest in crime victim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has cast new attention on the informal criminal agreement. but Korea's criminal proceedings has already adopted criminal agreement in an informal way.

Criminal agreement refers to the situation when the victim agrees to terminate the criminal proceedings through the reconciliation with the offender under the premise for damages.

the discretion of the judge in sentencing for the favor of the offender has been already recognize in practic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in korea.

However, the criminal agreement does not have applicable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t is strictly an informal institution solely contingent on the will of concerning parties.

Prosecutors or judges can impose certain legal prescriptions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us, the criminal agreement system does not have the foundation to meet

the proper request for criminal policies, because there is no legal provision.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mandatory provisions regarding the criminal agreement, and that is relying solely on the concernings parties' agreement, the victim may not be able to obtain the proper prescriptions in a private dispute resolution precess.

Furthermore, due to the risk resulting from appeasement and other forms of intimidation or deception by the accused(defendant) in the agreement process, the criminal agreement system is likely to be distorted.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criminal agreement system which has been informally acknowledged needs to be established in a formal institutionalized wa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y incorporating the provisions into the current system of the criminal code and criminal procedure code.

# 부 록

## 형사합의 제도화 방안 설문조사

### 형사합의 제도화 방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의 본 조사연구에서는 형사합의의 현황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며, 귀하의 의견은 차후 형사합의 관련 정책 연구 및 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 상 옥

담당 연구원: 안 성 훈 박사

전화: 02)3460-5145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 세
SQ3. 귀하의 총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 년 ____ 개월

먼저 수사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의 양상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 아래의 모든 문항들에서 ‘형사합의’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보상이나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이고 비공식적인 합의를 뜻합니다.

1. 귀하께서는 형사합의를 권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6로 갈 것)

2. 귀하께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할 때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왼쪽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오른쪽에 표기하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1	금전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①	②	③	④
2-2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죄해서	①	②	③	④
2-3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①	②	③	④
2-4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①	②	③	④
2-5	형사소송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①	②	③	④

2-6. 기타 고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간단히 작성해 주십시오.

( )

## 3. 귀하께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할 때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왼쪽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오른쪽에 표기하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1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3-2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①	②	③	④
3-3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①	②	③	④

## 3-3. 기타 고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간단히 작성해 주십시오.

( )

4.a.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범죄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빈도로 형사합의를 권  
하십니까? 10건 중 몇 건 정도인지를 어렵잡아 해당하는 숫자에 체크(✓)해 주  
십시오.

번호	항목	건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	살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2	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3	강간 · 강제추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4	절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5	상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6	폭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7	체포 · 감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8	협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9	모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0	명예훼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1	약취 · 유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2	공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3	손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4	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5	횡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6	배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7	임금체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a-18	교통범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b.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형사절차단계에서 다음의 각 범죄사건들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0건 중 몇 건 정도인지를 어림잡아 해당하는 숫자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호	항목	건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	살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2	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3	강간·강제추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4	절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5	상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6	폭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7	체포·감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8	협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9	모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0	명예훼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1	약취·유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2	공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3	손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4	사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5	횡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6	배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7	임금체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18	교통범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당사자 간의 형사합의가 성사된 경우 합의의 조건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금전 배상
- ②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 ③ 기타 (\_\_\_\_\_)

다음은 형사합의에 대한 귀하의 평소 의견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하께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오른쪽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도움되지 못함	별로 도움되지 못함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	매우 크게 도움이 됨
6-1	신속한 사건해결	①	②	③	④
6-2	금전 등의 수단을 통한 실질적 피해배상	①	②	③	④
6-3	신속한 배상을 통한 빠른 피해회복	①	②	③	④
6-4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음	①	②	③	④
6-5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①	②	③	④
6-6	가해자와의 관계회복	①	②	③	④

7. 귀하께서는 형사합의가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오른쪽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도움되지 못함	별로 도움되지 못함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	매우 크게 도움이 됨
7-1	신속한 사건해결	①	②	③	④
7-2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①	②	③	④
7-3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획득	①	②	③	④
7-4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①	②	③	④



11.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범죄사건들을 형사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항목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11-1	살인	①	②	③	④
11-2	강도	①	②	③	④
11-3	강간·강제추행	①	②	③	④
11-4	절도	①	②	③	④
11-5	상해	①	②	③	④
11-6	폭행	①	②	③	④
11-7	체포·감금	①	②	③	④
11-8	협박	①	②	③	④
11-9	모욕	①	②	③	④
11-10	명예훼손	①	②	③	④
11-11	약취·유인	①	②	③	④
11-12	공갈	①	②	③	④
11-13	손괴	①	②	③	④
11-14	사기	①	②	③	④
11-15	횡령	①	②	③	④
11-16	배임	①	②	③	④
11-17	임금체불	①	②	③	④
11-18	교통범죄	①	②	③	④

다음은 형사사법과 사회 일반에서 형사합의가 갖는 효과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2. 왼쪽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께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귀하가 동의하시는 부분에 체크(✓)해주시시오.

번호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
12-1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가해자들의 준법정신을 향상시킨다	①	②	③	④
12-2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가해자의 재범억제·예방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12-3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가해자의 보복범죄 방지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12-4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12-5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12-6	형사합의는 중극적 사건해결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12-7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수사·재판 등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12-8	형사합의에 의한 사건해결은 형사사법기관에 지워진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형사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다음은 형사합의 과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왼쪽 각 항목을 읽고 오른쪽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숫자에 표기(✓)해 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
13-1	형사합의를 하려고 당사자 간 강요·협박·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13-2	형사합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형사절차 담당자 간에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13-3	형사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면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형사합의의 제도화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래의 문항들에서 언급되는 현행 형사조정제도는 2010년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에 규정된 바대로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변호사, 법학교수, 의료인, 회계사, 교사, 사업가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 귀하께서는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확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합의가 그 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5. 귀하께서는 검찰수사단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적용범위가 다른 형사절차의 단계들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찰수사단계, 재판단계 등)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6. 귀하께서는 현행 형사조정제도가 적용되는 대상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주요 대상범죄 :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개인 간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의료분쟁 등 사적 분쟁)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7. 문14 ~ 문16 문항의 내용대로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확대된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그 담당기관은 어느 관할 하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각 형사절차마다 해당 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각각 설치
- ② 검찰에 설치
- ③ 법원에 설치
- ④ 제3의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설치

18. 귀하께서는 문14 ~ 문16 문항의 내용대로 형사합의를 포함하는 확대된 형사조정제도를 시민단체 등 민간기구가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동의하는 편이다                              ④ 매우 동의한다

끝으로 형사합의가 제도화될 경우 지향하여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9. 다음 왼쪽에 제시된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오른쪽 숫자에 표기(✓) 해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
19-1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금전배상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9-2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단순한 피해회복을 넘어서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9-3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①	②	③	④
19-4	형사합의의 제도화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총서 14-AA-07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

발행 | 2014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박상옥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SBN | 978-89-7366-314-9 93360

---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